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제시 위원회 (다수자 보고서)

보고서의 개관

I. 도입

- A. 위원회가 받은 지시
- B. 위원회 절차와 보고서 작성
- C. 동성혼인과 동성애의 관계
- D.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의 상황
- E. 설명과 주의

II. 민법상 동성혼인의 문화적·법률적 맥락

- A. 캐나다
- B. 미국

III. 다원주의 사회 내의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

- A. 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
- B. 신념적 다원주의
- C. 다원주의와 종교적 자유

IV. 민법상 동성혼인과 연약 공동체

V.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 지침의 원리

- A. CRC 가 이해하는 종교적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연약적 결합이다
- B. 민법상 혼인은 국가의 영역에서 적절한 것이며, 종교적 혼인과 상당히 다르다
- C. 혼인은 —민법적이든 종교적이든— 사회적·개인적 가치에 연관되며, 교회가 중요시하는 사회적 효과를 미친다
- D. 친밀한 성관계는 종교적 혼인의 결합에 속한 것이다
- E. 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은 모두 친밀한 성적 관계를 예상 혹은 전제하지만, 교회의 환영, 소속 및 제자화는 전적으로 전제에만 근거하면 안 된다.
- F. 종교적 혼인을 주례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교권적 기능이다

VI.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 지침

- A. 동성간 결혼식과 기타 경우들
- B. 교회 공동체
- C. 문화와 미래를 대면하기

VII. 추천 부록들

- 부록 A: 조사 결과의 요약
- 부록 B: 자료
- 부록 C: 교회와 국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부록 D: 동성혼인에 관한 교무적~~안~~ 대화를 권장하기

I. 도입

북미주개혁신교회(CRC)는 설립 후 150 년 동안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적 관계라고 보는 신학적 이해에 동의하는 사회적 맥락과 법률적 환경 안에서 사역을 했다. 그 상황이 변했다. 시민 정부는 캐나다에선 입법부의 결정을 통하여 미국에선 대법원의 헌법 해석을 통하여 법률적인 혼인의 정의를 바꾸었고 성과 무관하게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허용하게 되었다. 민법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결혼은 동성 배우자들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CRC 에 도전을—우리가 현대의 문화적 상황에서 사역할 때 결혼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우리의 생각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도전을—제기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동성혼인의 실태는 대단히 개인적이다: 사랑스런 손자가 자신의 동성 결혼식에 자기 할아버지의 참석을 요청했다. 이웃에 사는 아이들 중 두 명은 동성부부를 부모로 모시고 있다. 동성 관계에 있는 상사나 동료가 웨딩사위를 계획했다. 가까운 친구가 (혹은 우리가 직접) 평생토록 동성지향성을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 내부의 이 새로운 법률적 가능성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 감정, 및 반응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한 개인적 실태를 넘어서, 동성혼인의 적법성은 시민 제도인 혼인과 교회의 축복을 받는 언약 관계인 혼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법적 상황은 십여 년 전에는 우리 대부분이 고민해본 적이 없는 실천적·목양적인 도전을 교회, 교인, 목사, 및 교회 지도자에게 던진다. 그래서 본 위원회는 교회, 지도자, 및 교인들에게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 지침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 위원회가 받은 지시(*mandate*)

2013 년 총회는, 미국의 두 클래시스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응답으로 한 연구 위원회를 임명하여

교인, 성직자, 교회들이 특정 관할구역 내에서 동성혼인의 적법성에 비추어 1973 년 총회의 결의안 42 번 보고서(2002 년 총회 보고서 참조)에 반영된 성경적 가르침을 적용하는 법에 대해 또한 북미 대륙에서 진실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이 가르침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지침을 제시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

(2013 년 총회 결의안, pp. 617, 640-41)

본 위원회는 논쟁점들을 연구하여 목회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자료를 확인하여 교회가 사용할만한 최선의 실천을 건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총회는 그 지시(*mandate*)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그 의도를 더 분명히 나타냈다. 총회는 1973 년 (동성애에 관한) 총회 보고서와 2002 년 (동성애 교인들을 돌보는 목양에 대한) 총회 보고서가 성경적인 원칙과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교단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본 위원회는 최근의 정치적·법률적·사회적 발전에 비추어 그 함축성에 작업을 집중시키기로 하였다. 그 발전은 여론의 의미심장한 변동뿐만 아니라 동성혼인이 교회 생활과 교단의 회원 자격, 특히 신세대에게 미칠 잠재적 충격까지 포함한다.

절차에 관하여 총회는 본 위원회에게 신앙 형성 위원회(Faith Formation Committee)가 정립한
목양적 모델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게다가 총회 참석자들이 제시한, 그리고 이후 개정된,
발의안(motion)은 본 위원회에게 다음 사역을 하도록 지시했다.

캐나다와 미국의 목사들과 소수민족 교인들, 및 다양한 범위의 (즉 성경적, 목양적, 민족적)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이들과 방대한 협의를 하여 위원회의 사역에 관한 피드백을 알리고 제공할 것

(2013 년 총회 결의서, pp. 643-44)

본 위원회가 2013 년 11 월에 소집되었을 때 다뤄야 할 첫 과제는 그 지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목양적 모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를 개관하는 것이었다. 그 지시에 관해 본 위원회는
민법상 동성혼인과 교회 사역에 대한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과제라고 해석했다. 혹자는 위원회가
더 거대한 쟁점들을 재고하지 않고서는 그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그 쟁점들
중에는 동성애에 대한 교단의 성경적·신학적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에 관해 총회에 그 지시의
확대를 요청하자고 위원회에 제안한 이들도 있었다. 상당한 숙고를 거친 후, 본 위원회는 총회의
지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동성혼인의 사회·문화·법률적 측면은 교회와 그 사역에 충분한—본 위원회의 주의를 끌만큼
충분히 가치있는—도전을 제기한다.

2. 2013 년 총회는 분명히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를 본 위원회의 사역을 위한
성경적·신학적 기준으로 확정했기에 성경적 근거를 재고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2013 년 총회는 연장된 토론 후 동성애, 인간의 성애, 및 혼인에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재평가를 포함하게 될 수정된 지시안을 허용하자는 발의안을 기각시켰다.¹

3. 동성애와 교회사역에 관한 폭넓은 질문들은 심화 연구와 토론을 보증한다.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많은 기독교 교단들 안에서 분열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CRC 교인들과 교단
지도자들은 그 질문들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성혼인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잘
처리하면 교회가 분열에 빠지지 않으면서 풍성한 사역 분야를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민법상
동성혼인에 관한 시민적 담론은 교회에게 고무적인 발판이 될 것이다.

4. 민법상 동성혼인은 사역 문제와 도전을 제기한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라는 힘겨운 과제를 민법상 동성혼인이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민법상 동성혼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지시에 대한 가장 생산적이며 적절한 이해라고 믿는다.

¹ 이 발의안과 그 투표는 2013 년 총회의 결의안에 기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수정안을
고찰하도록 허용하는 발의안이니, 그러한 수정안을 포함하는 발의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B. 위원회 절차와 보고서 작성

본 위원회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목양적 모델은 전통적인 위원회 사역에서 접하지 못했던 토론과 정보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전통적인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활동을 투자하도록 요구한다. 신앙 형성 위원회(Faith Formation Committee)의 목양적 모델이 성공한 요인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그 위원회가 활동한 기간과 관련이 있다—즉 전형적인 교단 위원회보다 거의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는 그 목양적 모델을 따르면서 3년이란 예정된 기한 안에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자원을 확충했다.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회의 - 본 위원회는 미시간 주 그랜래피즈에서 7 차에 걸쳐 이틀짜리 회의를 가졌고, 거의 3-4 개월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을 통하여 위원회는 최신의 법률적·사회적 동향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타민족 및 소수자 공동체 지도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개인들과 만날 기회를 가졌다. 또한 이 모임들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히 곤란한 질문들을 재고할 수 있었고, 적극적인 참여와 그에 뒤따르는 성찰의 기간을 가지는 유익도 누릴 수 있었다.
- 여론조사 - 본 위원회는 칼빈 대학교 사회 조사 센터(Calvin College Center for Social Research)에 교단에 대한 여론조사를 위탁했다. 4,000 명 이상이 응답한 이 여론조사는 700 명의 목사와 동성애 지향적이라고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혹은 동성애에 이끌린다고) 스스로 밝힌 226 명의 응답자가 보낸 피드백을 반영한다. 이 여론조사를 통해 동성혼인과 동성지향인 사역에 대한 CRC 교인들의 경험과 태도에 관한 배경정보가 수집되었다.
- 협의 - 본 위원회는 말은 작업에 긴밀하게 관련된 영역에서 식견과 경험을 갖춘 개인들과 협의했다. 이 개인들은 CRC 내 소수민족 공동체의 지도자, 교단 기관들의 대표들, 법률 전문가, 과거나 현재에 CRC 교인인 동성애 지향적인 사람들 및 기타를 포함했다.
- 경청모임 - 위원회 대표들은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 12 번의 클래스시스 모임에서 경청모임(listening session)을 가졌다. 교단 내 이사회 대표들뿐만 아니라 캠퍼스 사역 리더들과 CRC 채플린들과도 유사한 회의를 가졌다. 또한 위원회 위원들은 2015 년 총회에 참석한 대표들과 고문들과 함께 경청모임을 주최했다. 이 경청모임은 위원회의 사역에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이 회기는 교회 내에서 동성혼인의 상황에 적절한 사역에 관한 더 광범위한 대화를 시작하게 만들었다.
- 위원회간 조정 - 우리는 본 위원회의 사역과 종교적 억압과 자유를 연구하는 위원회(Committee to Study Religious Persecution and Liberty, RPL)의 사역이 중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했다. RPL 연구 위원회의 보고서도 2016 년 총회에서 고려될 것이다. 종교적 자유에 대한 질문들은 동성혼인의 상황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회는 RPL 위원회 대표들과 만나서 협의하였다. 또한 본 위원회는 CRC 교단의 문화적·구조적 변화에 대한 전략기획 및 적응변화 팀(Strategic Planning and Adaptive Change Team)의 건의사항을 긴밀하게 준수했다.

C. 동성혼인과 동성애의 관계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받은 도전은 총회의 지시가 동성애(homosexuality)에 관련된 문제라는 인식이었다. 이 인식의 논리적 전제는 다양하다. 혹자에겐 양자가— 즉 동성애와 동성혼인이— 동일한 한 가지 문제다. 다른 이들에겐 민법상 동성혼인 인식이 동성애에 관한 개인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것보다 부차적인—덜 중요한— 문제다. 다른 이들은 그리스인들이 동성간 이끌림·행위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신학에 일반적으로 동의하기만 하면 동성혼인을 둘러싼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다.

본 위원회는 경청모임과 개인·교회의 회신을 통해 동성애에 관해 더 일반적으로 진술하라는 일관된 주장을 접했다. 이 주장은 토론이 양극화되는데 상당히 기여했다. 위원회의 평가에 따르면, 이 양극화는 동성혼인에 관한 총회의 지시를 처리하는데 무익하고 불필요했다. 우리가 경청모임이나 다른 곳에서 이미 부탁했던 것처럼, 이 보고서도 *민법상 동성혼인*을 다루는 것으로 읽고 반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동성혼인과 제공된 목양 지침에 관한 이 토론으로부터 얻은 혜택이 무엇이든, 그 혜택은 그 대화가 실제로 동성애에 관한 것이라고 떠돌아대는 목소리들 사이에서 실종되고 말 것이다.

D.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의 상황

총회는 본 위원회에게 (앞의 I, A 단락 참조)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보고서들의 성경적·신학적 가르침을 동성혼인을 지지하는 사회의 변화된 문화적 지형에 적용하도록 지시했다. 본 위원회가 제공하는 목양지침의 근거인 1973 년 보고서의 기준선을 간략하게 진술한다면, 동성지향적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이며 교회생활에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동성지향 즉 성적 이끌림의 혼란은 선택이 아니며 그 자체 저절로 죄가 아니다. 하지만 (1973 년 보고서에서 “동성애주의(homosexualism)” 라고 명명한) 동성간의 성행위는 죄다.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는 교회의 윤리 문제에 관한 목양적 조언을 구성한다. 1975 년 총회가 총회적 결정의 유형들을 범주화할 때 밝힌 것처럼, 윤리 문제에 관한 목양적 조언은 교회 생활과 교인의 삶에 관한 것이므로—결의되고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975 년 총회는 윤리 문제에 관한 목양적 조언으로 기능하는 총회의 보고서가 고백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토론과 심지어 불일치에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교인들의 행위를 구속한다. (1975 년 총회 결의안 참조, pp. 44, 597-602.)

우리는 총회의 지시사항과 목양적 조언 이해에 부합되게, 이 동성혼인 토론이 광범위한 동성애 문제에 관한 교회의 대화로부터 가능한 한 분리되기를 요청한다. 이 두 문제를 분리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의 모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동의하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에서 제공된 가르침 내에서 작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보고서 후반부에서 우리는 1973 년 보고서와 교회헌법의 “논리”를 언급할 것이다. 이 논리는 (또한 실제로 우리가 받은 지시 자체가) 불가피하게 거의 동성간 성행위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 토론을 강요한다.

교단 내 동성지향적 신자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개성이 금단의 성행위로 환원된 것처럼 느꼈다. 심지어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독신주의(**celibacy**)를 실천하는 경우에도 말이다. 비록 교단이 혼인과 성적 관계에 관한 가르침을 계속 준수한다 하더라도, 동성지향적 개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전하고 복합적인 인간존재라는 것과 사랑과 동료와 친밀감에 대한 그들의 욕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E. 설명과 주의

보고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회는 보고서에 수반되는 주의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은 관찰과 쟁점을 밝혀 둔다:

1. 혼인—최근까지 혼인이란 용어는 제한형용사 없이 국가가 인정하는 법적 상태와 교회가 승인한 언약 관계를 단번에 동시에 묘사하는 언어로 사용될 수 있었다. 두 개념이 융합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하나의 예식이, 종종 사역자의 주례로, 두 관계를 출발시키고 장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이 개념상 점점 더 구분되어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의 보고서는 두 개념을 구분할 것이다. 혹자는 일부일처제적 언약적 동성 관계에 혼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시할 수도 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와 미국의 법적 용례는 물론이고 본 위원회에 대한 총회의 요구에서 나온 동성혼인이란 용어에 대해 2013 년 총회의 용례를 따를 것이다.
2. 언어—일반적인 언어 현상처럼, 용어의 의미와 용도는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한—긍정적·부정적—함축성을 전달한다. 많은 토론 후 본 위원회는 “동성지향적”(same-sex oriented)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대부분의 독자에게 수용되기 쉬우면서 가장 중립적이고 존중하는 선택이라는데 동의했다. “동성지향적”이란 어구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 혹은 동성애자에게 끌린다고 자각한 사람들과 동성에게 낭만적이고 성적인 매력을 경험하지만 그 감정을 표현하는 (심지어 인정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술어로 의도된 것이다. 동성애(homosexuality)란 단어는 여전히 동성적 성별(same-sex sexuality)를 묘사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명사형으로 응용된 동성애자(homosexual)란 단어는 한 때 그 단어가 묘사하려고 의도한 사람들 대부분에게서 더 이상 존중어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동성애자(homosexual)란 단어를 명사형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성지향적”(same-sex oriented)이란 말도 양성애자 정체성을 가진 이들은 원치 않는 서술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용어를 채택한 의도는 양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다. 교회에서 이 도전적인 논의에 참여할 때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를 본 보고서에서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호의를 베풀어 주길 부탁하는 바다.
3. 다루지 않은 문제들—동성혼에 관련된 문제들은 불가피하게, 생물학적 성의 성격과 정체성(gender identity)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들에 연결된다. 예를 들면, 여론조사의 응답자들은 성전환자, 정체성, 및 성역할 등에 관련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했다.

그 주제들도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문제이지만, 본 위원회가 구성된 목적과 지시에 충실하다 보니 거기까지 다룰 수 없었다. 교단이 가까운 미래에 그 문제들을 다뤄줌으로써 실제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을 품는 사역이 보장되기를 소망한다.

II. 민법상 동성혼인의 문화적·법률적 맥락

지난 50 년간 서구 사회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이 사실은 특히 동성지향적인 개인들과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수용되면서 분명해졌다. 그 기간 동안 사회 내에서 동성지향인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동성지향성을 공개하려는 사람들이 확실히 증가했고 오명과 차별은 줄어들었다. 오늘날 동성지향적 개인·커플의 부정할 수 없는 가시성은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저변에 그들의 윤곽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하지만 동성지향성의 가시성과 윤곽은 공동체·지역별로 다양하다. 이 사회적 변화에서 동성간 관계에 대한 평가와 이 관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여부에 대한 평가는 현저하게 변화했다. 1990 년대 말 여론 조사가 결정적으로 소수자 입장에서 동성혼인이나 민법적 결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 반면, 지금의 여론 조사는 북미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동성혼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민법적 결합은 더 이상 가능성으로만 간주되지 않는다.² 위원회가 받은 요구는 최근 법률적 변화에 대한 평가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캐나다와 미국의 법률적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A. 캐나다

캐나다에서 동성혼인은 불과 2 년이란 기간에 지방 법령에서 연방적(즉 전국적인) 수용으로 신속하게 옮겨갔다. 최초로 온타리오 주가 2003 년에 동성혼인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온타리오 주는 2001 년에 이미 이뤄진 동성혼인의 합법성을 소급하여 인정했다. 캐나다 의회가 2005 년 7 월에 민법상 혼인법을 수용할 때까지 10 개주와 한 특별구역이 법원판결이나 입법부의 결의를 통하여 동성혼인을 합법화시켰다.

캐나다의 민법적 결합은 연방적 수준에서 정의되지만, 혼인을 주례하는 절차적 법규는 지방 관할구역의 소관이다. 2005 년의 민법상 혼인법(Civil Marriage Act)³이 변경한 민법상 혼인의 정의는 “타인이 배제된 오직 두 사람만이 맺는 합법적 결합”을 포함한다. 2005 년 민법상 혼인법의 4 항은 캐나다에서 동성인 두 사람 간에 혼인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명시적으로 “혼인은 그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아니며 무효화될 수도 없다”라고 주석을 달고 있다.

2005 년 민법상 혼인법의 전문은 의회로 하여금 혼인에 관한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 동성혼인을 허용하도록 만든 고찰들을 정리해 놓았다. 평등보호권 논증(즉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일부 시민 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유효하다는 논증)에 기대어 전통적 혼인과 더불어 동성혼인도 인정하라고 요구하게 된 것이다.

² 2010 년에 미국복음주의 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부총재인 리차드 시직 목사(Richard Cizik)가 라디오 방송에서 민법적 결합을 지지한 후 복음주의자들의 비판 때문에 사임했다. 지금은 민법적 결합이 더 이상 정치적 토론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³ 법무부가 발표한 민법상 혼인 법령(Civil Marriage Act, S.C. 2005, c.33)이 있는 홈페이지. <http://laws-lois.justice.gc.ca>.

그 전문은, 동성혼인의 대안들도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증을 다루면서, 명시적으로 민법적 결합을 거부하고, 캐나다 법정이 이전에 민법적 결합을 혼인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에 주목한다.

2005년 법령을 수용할 때 캐나다 의회는 동성혼인을 권리로 확립하면 사람들과 기관들을—가장 명백히 목사들과 교회들을—양심에 반하여 동성혼인을 주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양심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의 헌장에서 분명히 인정된 자유다. 성직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모순되는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법령의 3항에 보장되어 있다: “종교단체의 직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과 불일치하는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할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다.” 민법상 혼인법(Civil Marriage Act)이 수용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하는 목사들에게 아무런 법적 결과도 일어나지 않았다.⁴

B. 미국

미국의 법률적 상황은 캐나다보다 더 복잡하며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2003년 이전 미국의 대부분의 주(州)들은 전통적인 노선에 따라 (즉,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을 정의하는 조치를 취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입법적 법규를 통하여 수립되었다. 하지만 그 법규들이 비헌법적이라고 판결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전통적 혼인 옹호론자들은 유권자투표나 헌법적 수정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州) 헌법 안에 전통적 혼인의 정의를 수호하게 되었다. 1996년 연방적 차원에서 법제화된 혼인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 DOMA)은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법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⁵

2003년에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가 있으며 “민법적 결합”이란 표현이 차별적이라고 판결함으로써 법률적 격변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이나, 덜 빈번하게, 법령에 의해서 동성 혼인을 허용하는 주(州)들이 완만한 행렬을 (2006년 뉴저지, 2008년 캘리포니아, 2009년 아이오와) 시작했다.

2013년 6월 미합중국 대법원은 *미합중국 대 윈저*의 소송 재판에서 DOMA의 일부가 동성혼인을 한 배우자들의 연방적 특혜를 비헌법적으로 만드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DOMA에 대한 이런 성공적인 도전 때문에 주정부의 동성혼인 금지에 도전하는 연방 법원 소송이 줄을 잇게 되었다. 하지만 *윈저* 판결은 DOMA의 일부를 무효화시킨 결정이 헌법적 논증(즉 평등보호권의 위반 혹은 절차 보증)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규정이 국가에게 맡겨져야 가장 잘 처리될 수 있는 주제라는 근거(연방주의 논증)에 있는지 여전히 불분명하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기초는 미국 내에서 동성혼인을 효과적으로 허가할 것이다. 연방주의 논증은 각 주의 혼인에 대한 민법적 정의를 결정하는 것을 그 주 의회와 법원에 맡길 것이다.

⁴ 본 위원회는, 종교적 핍박과 종교적 자유 연구 위원회와 더불어, 캐나다의 차별 문제는 다른 맥락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Trinity Western University in Langley, B.C., 신임장에 대하여; First CRC, Hamilton, Ont., 직원 채용에 관하여).

⁵ Defense of Marriage Act (“DOMA”), 1 U.S.C. § 7.

원저 판결에 뒤이어 대부분의 주(州) 법원과 연방법원은 동성혼인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기 위해 헌법의 평등보호권 논증에 의존했다. 2013년에 본 총회 위원회가 형성되었을 때, 20개 이하의 주가 동성혼인을 인정했다. 2015년 1월까지 동성혼인은 36개주와 컬럼비아 특별지구에서 합법화되었다. 오직 제 6 순회법원 (켄터키, 미시건, 오하이오, 테네시) 과 루이지애나 연방구역법원만이 주정부의 동성혼인 금지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미합중국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다.

2015년 6월 미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제 14 수정 헌법의 평등보호권과 그 합당한 절차에 대한 조항들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혼인을 이성 커플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소한 차이로 법원은 주정부의 동성혼인 금지를 철폐시켰다.⁶

이제 서구 사회와 특히 북미주의 단호한 추세는 동성혼인을 문화적·법률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CRC 교단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민법상 동성혼인이 미래에도 법적인 실재로 남아있고 또 전반적인 여론이, 특히 신세대 사이에서, 이 실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예상해아 한다.

III. 다원주의 사회 내의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

A. 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

혼인은 고대로부터 있었던 제도다. 또한 누가 성경적으로 말하더라도 그 형용사는 원시적(*primordial*)인 것이다. 초기 CRC 혼인증명서(*Form for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1912*)는 “거룩한 혼인의 결합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초에 직접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진술한다. —혼인을 성례로 인정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달리— CRC는 혼인을 성례로 인정하진 않아도 성스러운 결합이라고 본다. 혼인은 이 세상에서 인류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다. 1912년 혼인 서류가 설명하듯이 “혼인은 인류를 확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이 상태에 들어서는 이들의 삶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⁷

최근 CRC 교단에서 혼인에 관해 가장 방대하게 추진한 1980년의 연구 결과는 혼인의 기본 성격이 남편과 아내의 결합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혼인으로 한 몸이 되도록 지음 받았다. 그래서 혼인은 인간의 발명품도 아니고 멋대로 변경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실험적인 사회관계도 아니다.⁸

1980년 CRC 혼인선언문은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혼율이 증가하고 결혼을 원치 않으면서 동거하는 커플의 숫자가 늘어나는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CRC의 1980년 선언문은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언약적 관계로 보는 성경적·신학적 혼인 이해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이 주목해야 할 전부다 아니다. 특별히 혼인을 둘러싼 이 지나치게 논쟁적인 수사 분야에서 혼인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존중되지만 인간 관계나 사회의 전부요 궁극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는 게 좋다.

⁶ *Obergefell v. Hodges*, 576 U.S. ____ (2015).

⁷ *Psalter Hymnal*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8), p. 1007.

⁸ *Acts of Synod 1980*, p. 469.

예수님은 분명히 “가나 혼인잔치에 복된 참여를 해주심으로써 혼인을 영예롭게 하셨다.”⁹ 하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¹⁰는 설명도 해주셨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혼인은 차선—즉 결혼하는 이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한에서 선하지만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상황화한다.¹¹ 개혁주의 관점에서 본다면, 혼인은 창조론적 구조이지, 종말론적 구조가 아니다.

성경에는 국가가 혼인 제도에 차지하는 역할을 가리키는 내용이 분명히 나오진 않는다. 서구문화권에선 혼인이 시민정부 즉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회제도가 되었다. 이것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혼인의 기원은 종교적이다. 불과 몇 세기 전이 되어서야—근대 민족국가 발전하면서—국가가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혼인증명서를 발행하고 결혼 정보를 기록하는데 개입하기 시작했다. 사실 존 칼빈은 제네바 시민정부의 행정관에게 혼인기록을 하라고 요구했던 최초의 인물이다.

CRC 헌법 주석이 설명하듯이,

개척교회는 국가가 그 합법적인 역할을 감당한다고 강조해 왔다. 마침내 18 세기 후반에 근대 국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자, 개척교회는 국가가 혼인과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간섭하는 것을 계속 존중했다. 이를테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시민 정부에게 “법 아래서” 혼인하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법적 보호를 규정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 왔다(마태 22:15-22). 북미에서 혼인을 주례하는 안수받은 말씀 사역자는 교회와 국가의 대리인이다. 그것은 양자택일이 아니다.¹²

미국 상황에서는 국가와 교회가 결혼을 규정하는데, 특히 종교적 진영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현상이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을 융합시키는 추세를 낳았다. 그 혼동은 이해할 만하다. 종종 양자가 단일한 목회자 주례자에 의해서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CRC 혼인 서류(1979)의 예전은 커플이 서약한 직후 목사가 선포하는 표현 안에 그 이중적 권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역자로서 또한 정부가 본인에게 부여된 권위에 의해서, 나는 그대들 (이름)과 (이름)을 남편과 아내로 선포하노라” [강조 추가됨].¹³

수백 년 동안 종교적·정치적 변동을 통하여 교회와 국가의 역할은 변해왔다. 종교적으로 인정된 혼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혼인기록을 남기고 혼인서약을 지키게 하면서 시작된 역할이 이제는 사회적 권리, 특권, 및 책무를 중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고, 종교는 이 부분에서 사소한 역할만 맡게 되었다. 이제 서구세계 전체에서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의 관계가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선 종교적 결혼식과 민법상 결혼식이 다 존재한다.

⁹ Marriage form (1912), *Psalter Hymnal*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8), p. 1007.

¹⁰ Luke 20:35 (NRSV).

¹¹ 1 Corinthians 7:32-34 (NRSV).

¹² Henry De Moor,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2011), p. 372.

¹³ Marriage form (1979), *Psalter Hymnal* (Grand Rapids, Mich.: CRC Publications, 1988), p. 1011.

두 결혼식은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치러진다. 하지만 법의 시각에서 유효한 혼인을 위해선 민법상 결혼식이 필수적이다. 북미의 상황에서도 두 결혼식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주정부는 시장, 치안판사, 판사 등과 공직자들이 종교적 암시나 함축성이 배제된 민법상 결혼식을 주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크리스천 법학자로서 존 이나주는 이렇게 설명한다.

오래 전에는 민법상 혼인이 주로 기독교적 혼인의 유익을 위해 존재했었다. 그렇다고 기독교인들이 이 유익의 중요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동성혼인이 기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 사이의 거대한 간격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증상이라고 추측한다.¹⁴

이나주는 기독교적 혼인의 다른 측면을 민법상 혼인과 연관지어 지적한다.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1900년대 중반 이후 국가는 성적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점점 멀리했다. 간통에 대한 법률은 미국의 주들 중 절반 이하에서만 유효하며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간통 및 남색을 금하는 법률은 (전통적으로 동성끼리 만날 경우에만 집행된) 비헌법적이라고 판결되었다. 또 다른 법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성과 성도덕은 종교적 혼인의 핵심이지만 점점 민법상 혼인을 위한 법적 절차의 주변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 민법상 혼인의 법적 정의에 포함된 수백 가지 항목들 중에 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¹⁵

그러면 민법상 혼인의 법률적 측면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법률적 용어로, 혼인은 오직 혼인 관계에만 해당하는 다양한 권리와 특권과 의무를 포함한다. “짧게 말하자면, 혼인법은 개인적 동의를 중요한 공적 혜택과 보호의 원천으로 변화시킨다.”¹⁶ 2004년에 정부 회계사무소(Government Accounting Office)는 미국 법전을 검토하여 결혼한 부부에게 수여된 연방적 권리, 책임, 특권 등을 확정했다. 그 연구는 최소한 1,138 가지 법규가 결혼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 권리, 특권, 및 의무는 가족법, 조세, 의료법, 유언검증, 불법행위, 정부 혜택 및 프로그램, 사유 영역의 혜택, 노동법, 부동산, 파산, 이민, 형법 등을 포함하는 제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¹⁷

종교적·민법상 혼인을 다룬 이 간결한 토론에서 세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첫째, 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은 상당히 다른 실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양자의 기능이 다르다. 교회는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의 관계를 고찰할 때 신중해야 한다.

¹⁴ John Inazu, “What to Expect After the Supreme Court’s Marriage Decision,” *Christianity Today Online*, April 28, 2015. www.christianitytoday.com/ct/2015/april-web-only/what-to-expect-after-supreme-courts-coming-marriage-decisio.html.

¹⁵ Brief of Douglas Laycock, Thomas C. Berg, David Blankenhorn, Marie A. Failinger, and Edward McGlynn Gaffney, as Amici Curiae in Support of Petitioners, March 5, 2015. www.supremecourt.gov/ObergefellHodges/AmicusBriefs/14-556_Douglas_Laycock.pdf.

¹⁶ Vermont Supreme Court ruling in *Baker v. State*, 744 A.2d 864, 883 (Vt. 1999).

¹⁷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ection of Family Law Working Group on Same-sex Marriages and Non-marital Unions, A White Paper: An Analysis of the Law Regarding Same-sex Marriage, Civil Unions, and Domestic Partnerships. www.abanet.org/family/whitepaper, 16-17 (2004).

둘째, CRC의 성경적·신학적 혼인관은 종교적인 동성혼인과 양립할 수 없다. CRC 교단이 이해하는 종교적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연합시켜 신성한 혼인으로 결속시키는 것이다.

셋째, 민법상 동성혼인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관련해 실질적인 문제가 하나 남아 있다. 한번만 살펴봐도, 18 세기에 민법상 혼인법과 그 시행이 종교 의식에서 유래된 사실은 민법상 혼인에 필수적인 종교적 토대를 확립해 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역사적 사례가 하나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고찰한 대로,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 사이에 일종의 분리의 측면이 등장했다. 둘은 더 이상 일치하지 않으며,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했다. 문제는 그 단절이 얼마나 심한지 또 국가에게 민법상 혼인을 재정 의하여 동성 관계까지 포함시킬 수 있는 권위와 재량이 있느냐다. 후자의 문제를 다루려면 현대사회에서 다원주의가 갖는 성격과 한계, 사회질서 유지에서 시민 정부가 하는 역할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 한다.

B. 신념적 다원주의

미국에서 동성혼인의 법적 위치가 변했고 캐나다에서 동성혼인이 합법화된 사실은 교회의 가르침과 국가법의 관계에 대해 중대한 질문을 부각시킨다. 이런 유의 질문들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개혁신교 전통은 서구 기독교 전통에서 중간 입장을 취해왔었다.

그 연속체의 한 극단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연법—즉, 피조 질서에 배어있으면서 합리적인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분별되는 신적 합리성—개념을 사용한다. 이 개념은 교회가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한 것에 맞추어 국가가 사회를 조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용되었다. 자연법 논증에서는, 인간의 번영조건이 충분히 밝혀졌기 때문에, (국가가 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국가에게 사회를, 특히 혼인, 가정, 및 출산에 관하여, 자연법에 부합되게 조직하도록 요구한다.

그 연속체의 다른 극단에 있는 재세례파 전통은 국가의 강제력을 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재세례파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이 요구한다고 이해하는 대로 자신의 사회 생활을 영위하며, 국가가 이 공동체 규칙을 전체 사회에서 주장하거나 강요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초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독교 공동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일은 그 공동체의 권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회는 감히 국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다.

개혁주의 전통이 취하는 중간 입장은 카이퍼의 *신념적 다원주의(principled pluralism)*를 활용하여 공공 영역에서 확신있고 공손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사회·정치적 중요문제들에 대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이들과 나누는 교류를 조정한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다양·차별화된 창조 안에 특수한 권위·권력을 가진 상이한 구조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이한 권위구조들은 사회생활의 상이한 범위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 이 범위—가족, 학교, 교회, 국가 등—는 각각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과제, 권리, 및 권위를 가지고 있다. 각각 자기 영역 안에서 권위를 소유하면, 다른 영역들과 맺는 상호관계 안에서 각각 고유한 권위를 소유한다.

카이퍼리안(Kuyperian) 입장은 국가가 삶의 특정 영역 *안에서* 차지하는 적법한 권위를 지지한다. 국가의 영역과 더불어 우리는 다른 사회적 체제도 그 각각의 사회 생활의 영역 안에서 차지하는 적법한 권위를 지닌다고 인정한다. 국가는 이러한 상대적 권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구조다. 이 다원주의, 즉 구조적(structural) 다원주의는 실용적이며 근본적으로 선하다—즉 유용하고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삶의 다른 영역들이 서로 다른 권위를 가진다고 이해하는—구조적 다원주의는 신념적 다원주의의 한 측면이다. 두 번째 측면은 고백적(confessional) 다원주의다. 고백적 다원주의란 상이한 종교적 (또한 무종교적) 단체들이 사회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점을 홍보하고 자신들의 고유한 공적 생활에 대한 참여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고백적 다원주의는 특수영역이 상대적 권위를 발휘하는 것을 반영한다. 즉 국가가 그 피통치자들을 위해 궁극적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가 아니다. 그 최종 결과는 상대주의가 아니라 가치와 원리가 사회구조와 공공생활에 관련되어 교차하는 공적 광장이다.

혼인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면서, 국가는 교회와는 다른 목적을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한다. 정부의 과제는 기독교적 기준에서 옳고 도덕적인 모든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되고 비도덕적인 모든 것을 응징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의 역할은 시민법을 유지하고, 공적 정의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여 그들의—시민적, 사회적, 가족적, 종교적—의무를 수행하게 해주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서 부당하게 손해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교회의 자세는 우리 세계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이 정치적 영역의 고백적 다원주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 특유의 가치들을 공적 영역에서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도덕관을 법제화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민법상 동성 혼인은 어떠한가? 혼인에 관련된 도전은 다양한 영역들과 교차하고 있는 도전이다. 혼인은 근본적으로 가족사이며, 가족 자체가 하나의 권위 영역이다. 사회를 전체적으로 잘 조직화하는 것은 시민 정부의 주요 책임일 수 있지만, 다른 영역들도 그 조직화의 지혜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국가와 교회는 혼인에 관한 상대적 권위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다원주의 사회 안의 공적 정의를 근거로 민법상 동성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기준을 종교적 혼인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신교회가 있어왔다. CRC의 캐나다 정부 접촉 위원회(Committee for Contact with the Government within Canada)는 2003년에 이렇게 보고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그 신조, 피부색, 민족, 성적 지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적인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북미주개혁신교회 총회는 동성애자들의 민법적·사회적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정의를 위협한다고 밝혔다.¹⁸

¹⁸ 2002년 6월 한 연구 위원회가 CRC 총회에 동성애 교인들을 위한 목양적 돌봄(Pastoral Care for Homosexual Members)이란 주제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보고서의 마지막 단락은 교회에게 “동성애에 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성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Agenda for Synod 2002, p. 334). 이 성찰의 핵심은, 이 쟁점들을 에워싼 법률적 복잡성과 도덕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CRC 교인들이 “미래를 불드시고 또 우리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부르신 하나님께 그 미래를 의탁”해야 한다는 믿음을 의지하는 자비로운 태도이다 (Agenda, p. 337; Mic. 6:8).

그러므로 당연히 교인들은 동성끼리 장기적으로 헌신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긍정해야만 한다. 정의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심지어 심오하게 불일치하는 사람에게도 그렇다.¹⁹

민법상 혼인이 동성 커플들에게 허용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북미주 크리스천들 중에는 민법상 동성혼인의 수용을 자유주의적 반종교적 의제에 영향을 받은 행동파 법조인들의 작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교회는 민법상 동성혼인의 기초가 되는 논리로 제시된 논증들을 주의깊게 읽고 깊이 성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²⁰ 그 논증들은 시민의 정의와 평등한 보호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것은 국가의 영역에 속한다. 이 논증들을 수용하거나 동의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의무는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은 제 9 계명의 명령대로 당면한 문화적 담론에서 그 논증들이 차지하는 상당한 무게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이들에겐, 국가가 민법상 혼인을 재정의한 것이 실재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이 새로운 실재와 타협해야 한다. 민법상 동성혼인은 이 나라의 법이며, 그것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른 이들에겐, 국가가 혼인에 대해 교회와 다른 관점으로 운영하는 지금의 문화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크리스천이 민법상 동성혼인을 반대해야 하는지 지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자동으로 주지 않는다. 오히려 신념적 다원주의는 한 사회가 그 상호교류를 형성하는 방침을 결정하는데 틀을 제공한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당면한, 즉 교회의 혼인관과 국가의 혼인관이 다른, 상황을 충분히 성찰할 수 있는 방법을 형성해 준다. 이것은 더 이상 꼭 위협적일 필요는 없다, 또한 우리는 삶의 전 영역에서 확실적인 반응을 할 필요도 없다. 부록 C 에서 우리는 논쟁의 두 흐름을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한 쪽은 동성혼인을 허용한 국가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 교회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입장은 동성혼인을 허용한 국가의 결정을 지지한다.

C. 다원주의와 종교적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헌장과 미국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자유이다.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연관된 상당한 문제들을 인식한 입법자들은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보호하는 법률을 유효하게 만들었다. 캐나다에선, 민법상 혼인 법령 자체가 종교 단체들과 그 대표들이 자기 신앙의 교의와 상충하는 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에선, 1993 년 종교적 자유 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 RFRA)이 채택되어 외견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종교 실천을 부담스럽게 만든다는 법률로부터 종교적인 단체와 개인들이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법도 개인의 종교적 표현을 침범하지 못하게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강요했다: (1) 종교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법도 정부의 당면한 관심에 기여해야 하며, (2) 법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약만을 주면서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¹⁹ Same-sex Unions: A Case for a Just Pluralism. A Submission to the House of Commons Standing Committee on Justice and Human Rights, the Committee for Contact with the Government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pril 10, 2003.

²⁰ 원저 대 커네티컷 주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문과 드보어 대 스나이더(DeBoer v. Snyder) 소송에 대한 버나드 프리드만(Bernard Friedman) 판사의 판결문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록 B 참조).

기독교회는 종교적 자유의 보호를 지지해야 한다. 하지만 지혜롭고 적절하게 그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목양적 지침 항목에서 이것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종교적 자유란 개인, 교회, 및 사업체가 어떤 행동이든 종교적으로 정당화되기만 하면 그것에 마음껏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의 의미는 (1) 국가는 그 자유를 침해할 만큼 강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과 (2) 그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요구도 제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는 것은 강제적인 이해관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개인을 차별하는 공적인 행위는 금지해야 당연하다.

교회들과 교단들에게 동성혼인을 지지하거나 동성간 결혼식을 주례해야 할 법적인 요구를 할 수 없다. 교회는 회원자격을 정하고 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치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종교적 전통을 대표하는 목사나 같은 개인은 동성간 결혼식을 주례하거나 참석하는 것에서 면제된다. 목사들은 일반 대중 교인들을 위한 결혼식을 주례하겠다고 하지 않는 한 동성간 결혼식을 주례하도록 강요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삶과 생활 속에서 동성혼인이나 그 의식이나 예식과 얽히는 것에 반대하는 교인들에게 어떤 권면이나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목록이 점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결혼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제빵사, 사진사, 꽃장수 등—에 관련된다. 핵심문제는 그 종교적인 사람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예식을 위해 인격적으로 관련된 숙련 노동을 해야 한다는 느낌을 어디에서 느끼느냐로 보인다. 본 보고서의 뒷부분에서 이것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법 소송이 동성 예식에 편의를 제공할길 거부한 개인이나 사업체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IV. 민법상 동성혼인과 연약 공동체

동성지향인들은 북미 사회에서 점점 가시화되고 수용되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의 변두리로 내몰리는 차별대우를 받아왔던 동성지향인들은 지난 50 년에 걸쳐서 사회적 태도의 의미심장한 변화를 경험했다. CRC 교단은 동성지향인들을 무시하고 홀대했던 것을 종식시키도록 요청하고 대신에 교회의 연약공동체와 목양사역에 포함시키도록 권면함으로써 그 변화에 작은 기여를 했다. 우리가 항상 의도한 대로 살진 못했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도한 바였다.

민법상 동성혼은 계속해서 가시성과 사회적 수용을 지향한다. 이제 사회는 동성결혼 단위를—커플과 자녀를 가진 가족을—지역사회 삶의 일부로 포함시킨다.

이러한 역동성을 타협하는 것은 크리스천들과 교회에 도전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결혼식과 출산과 같은 일생의 대사건들과 기념일과 장례식과 같은 가족의 중대사들은 그 축하나 의식을 위한 사회적 규범을 수용한 것이다. 의식에 대한 사회적 규범들은 동성 커플들과 가족들에게도 적용되는가? 불확실성은 불안, 사회적 거부감, 및 잠재적 불쾌감으로 이어진다. 아무도 가족, 친구, 이웃, 또는 동료들에게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

동성 가족들과 나누는 다양한 경험이 그 도전을 무마해 줄 것이다. 가시성과 수용이 북미주 사회에 고르게 분포된 것은 아니다. 어쩌면 동성혼인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인, 어떤 지역사회들에서 동성지향적인 개인, 커플, 및 가족들이 일상생활에 참여할 것이다. 동성혼인자를 아는 것은 그 불안을 줄여 줄 수 있다. 동성혼인이 수년 동안 합법화된, 다른 지역들에서 동성지향적인 개인이나 커플들을 거의 접촉하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공동체나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이러한 질문들이 제기되는 개인적·사회적 관계들의 광범위한 다양성과 협상할 때 완고한 틀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개인적·사회적 관계들에 대해 건설적이고 유익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개인적인 결정도 교회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교인들이 회중에 소속된 혹은 과거 교인이었던 친구의 동성간 결혼식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서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참여하지 않는 것도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것들에 반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경청할 수 있는 자유를 각자에게 줘야 하는가?

동성혼인은 교인 자격과 성찬을 포함하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적·단체적 생활 부분에 대하여 교회에 가장 의미심장한 영향을 미친다. 제기된 질문 중에서 많은 것은 간단하게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다. 성례전과 교회 회원권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변형들을 고려하라:

- 교회의 오래된 회원인 한 젊은 여인이 동성인 배우자와 결혼하고, 자기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겠다고 선언한다. 그녀는 입양 절차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 어린 자녀를 가진 동성 커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 주된 이유는 그들의 아이가 교회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커플은 교회 등록과 자녀의 세례에 대하여 문의한다.
- 수년 동안 타주에서 살았던 교인이 가족과 가까이 살기 위해 돌아와서 다시 출석하기 시작했다. 현재 그녀는 동성혼인한 상태이며 자신의 두 영아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녀의 양부모는 그 교회의 평생 교인이었으며 세례요청을 지지하고 있다.
- 자신의 동성지향성을 인정하는 교인이 입양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그녀는 동성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미래에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양 절차가 완결되는 대로 자기 자녀가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 타주에서 동성혼인관계에 있던 교인이 고향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연로하신 모친을 돌보고, 그의 배우자는 타주의 집에서 머물러 있다. 그 교인은 자기 어머니를 교회에 데리고 나와, 성찬에 참여하고, 자기 어머니를 교인 총회에 참석시키고, 둘 다 투표에 참여한다.

v.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 지침의 원리

다음 원리들은 이전의 토론에서 도출된 것이며 뒤에 나오는 목양 지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원리들은, 각각의 경우든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든, 사역을 단 하나의 적절한 반응에만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변화하는 문화적 파도 안에서 교회의 사역도 이동하고 있다. 우리가 본연의 모습보다 더 큰 확실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은 너무 적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오류다. 위원회의 경청모임과 조사로부터 일차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CRC 안에 방대하게 다양한 경험과 사회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A. CRC 가 이해하는 종교적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언약적 결합 이다

CRC 는 혼인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1912 년 혼인증명서와 1979 년 혼인증명서와 다양한 총회 보고서들이, 가장 최근에는 1980 년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혼인을 이해했다. 캐나다의 민법상 혼인법도 미국 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하지스(Obergefell v. Hodges) 소송 판결도 혼인에 대한 재정의의 요구하지 않았다. 종교적 공동체 내부의 어떤 사람들이 교회가 동성혼인을 수용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으로써 동성혼인을 반대진영을 결집시키려고 시도해 왔지만, 강제적인 수용이 캐나다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도 예측되지 않는다.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의 헌장과 미국의 제 1 수정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다. 여기에는 교회가 신앙 전통에 따라 혼인을 정의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법적인 권리와 책임이 적용되는 민법적 영역에서 어떠한 평등보호권이나 해당절차에 대한 논증들이 작용하더라도, 이것들은 종교적 혼인에 적용될 수도 없고 본질적인 것도 아니다.

B. 민법상 혼인은 국가의 영역에서 적절한 것이며, 종교적 혼인과 상당히 다르다

앞에서 살펴 본대로, 민법상 혼인은 중요한 측면에서 종교적 혼인과 다르다. 만약 앞에서 진술한대로 그리스도 교회가 이해하는 종교적 혼인 개념이 국가에 매이지 않는다면, 교회는 국가도 민법상 혼인을 정당하게 간주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민법상 혼인은 공공의 정책의 문제다. 그리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국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

다음 테이블은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의 차이점을 요약한 것이다.

민법상 혼인	종교적 혼인 (CRC 교단의 이해에 따름)
미국과 캐나다에서 법적인 혼인 상태에 따라, 1,000 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 특권, 및 책임을 확증한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여자, 한 남자, 하나님 사이에 언약적 관계를 확증한다
유산의 자격, 의료적 결정, 및 친족/부모의 신분을 확증한다	적절하고 부적절한 성관계를 구별한다
민법상 혼인에 관하여 (1900 년대 중반 이후의 추세는) 더 이상 법적이고 불법적 (범죄적) 성관계와 실천이라고 확증하지 않는다	

민법상 동성혼인이 지혜로운 공공정책의 결정인지 아니면 헌법적 필수 조치인지에 대해선 크리스천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이 원리가 배제하는 것은 국가는 민법상 혼인을 정의할 권위가 없다거나 국가가 특정 종교의 혼인 정의를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C. 혼인은—민법적이든 종교적이든—사회적·개인적 가치에 관련되고 교회가 중요시하는 사회적 효과를 미친다

동성혼인에 관한 문화적 논쟁 기간에, 종교적 공동체들의 초점은 거의 전적으로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반대에 집중하고 있었다. 때로는 그 논쟁이 이 성관계를 그들의 성적 특징으로 환원시키는 위험에 빠지기도 했다.

혼인은, 민법적이든 종교적이든, 크리스천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헌신을—즉 헌신, 인내, 자기희생, 및 자애 등과 같은 것들을—요구한다. 동성커플들은, 전통적인 이성커플들처럼, 이 특성들을 중요시하고 보여준다, 사회적 틀 안에서 안정감과 지속성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들을 형성한다. 진리와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을 인식하는데 헌신한, 그리스도 교회는 동성혼인을 전적으로 성적 표출에 환원시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D. 친밀한 성관계는 종교적 혼인의 결합에 속한 것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종종 성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집착하는 것으로 풍자되었다, 전통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성적 친밀감은 위대한 약속과 능력의 선물이며, 고로 종교적 언약 관계의 안전장치 안에서 즐겨야 한다. 이것은 혼인과 성적 표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제 7 계명의 취지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이다. 동성애에 관한 1973년 총회보고서와 2002년 총회보고서는 계속해서 종교적 혼인의 범위 안에서 성적 표현을 이해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E. 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은 모두 친밀한 성적 관계를 예상 혹은 전제하지만, 교회의 환영, 소속 및 제자화는 전적으로 전제에만 근거하면 안 된다

민법상 동성혼인은, 본질적으로 자동적으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민법상 혼인은, 그 관계가 이성관계든 동성관계든, 그 관계가 성적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개인이 안정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한다. 혼인한 성인들 간의 성적 친밀함은, 대부분의 경우에, 안정적이고 친숙한 관계의 핵심 요소이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것들 중의 하나일 뿐이며 모든 사례마다 혹은 모든 경우마다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 결과는 민법상 동성혼인이 동성간 성행위에 관련되는 것이, 필연적이진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교단과 더 큰 기독교권에서, 동성지향적인 두 명의 독신주의자가 함께 동거했다거나 성적 친밀성을 멀리하면서도 합법적인 혼인 상태를 추구했던 상황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사려깊게 또한 개인적인 근거에서 고려해야만 한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대리자로서 또한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의 통로로서, 교회는 그 사역을 전제에만 근거해서 수행하면 안 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나오는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잠재적인 제자들에게 개방적으로 대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라고 권면하는 것은 성적인 부적절성에 대한 전제 때문에 잠잠해져선 안 된다. 이것은 성적 지향이나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과 커플에게 해당된다. 그리스도 교회는 이 점에 있어서 의미심장한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목회는 관계적인 사역이며, 이러한 질문들은 오직 관계 안에서만 심화된 대화를 통하여 모든 관련 대화를 고려함으로써 적절하게 탐구될 수 있다.

F. 종교적 혼인을 주례하는 것은 교회가 결정하는 교권적 기능이다

종교적인 결혼식에서 목사는 하나님과 교회의 대리자로서 그 결혼식을 주례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교회헌법(69 조)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종교적 혼인만을 주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VI.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본 위원회가 받은 요구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민법상 동성혼인으로 야기되는 목양적·개인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목양적 지침을 규정하는 것이다. 목양적 지침이란 용어는 적절한 것이다. 위원회로서 우리는 기독교적 혼인에 대한 CRC의 이해에 일치하며 또한 교회와 그 대표들과 교인들이 광범위한 문화 안에서 자애롭고, 신실하며, 기여하는 참여를 하도록 돕는 필요에 일치하는 원리들의 집합과 제안된 행동 절차를 제공한다.

우리가 경청모임과 협의 중에 확인한 쟁점의 한 측면은 사람들이 동성혼인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태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이 반응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자유주의/보수주의, 성경신봉자/문화수용자, 관계적/원칙적, 교리적/경험적 등과 같은 대립구조로 만들면 안 된다. 우리는 위원회 자체 안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대해서 의견들이 다른 것을 경험했다. 2년동안 경청하고 토론하면서 본 위원회는 그러한 차이점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경험 때문에 불일치가 제거된 것은 아니다. 본 위원회는 이 차이점들이 문제시되는 부분에서 교회가 취할 수 있는 선택사항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지금은 솔직해져야 할 시간이다. 어떤 지침도 어떤 식으로든 무수한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본 위원회가 교회의 신학과 교회론에서 도출된 확고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상황에선 우리는 교회와 목회자와 다른 이들을 새롭고 도전적인 상황에 대해 확일적으로 반응하게끔 고착시키는 일련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겼다.

A. 동성간 결혼식과 기타 경우들

1. 참석

동성간 헌신/혼인 예식과 그 연관 행사에 초청받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잠재적인 갈등과 불확실성의 긴장을 야기한다. 그 초청은 식구, 이웃, 동료, 혹은 친구에게서 올 수도 있다.

그런 초청장을 받은 교인들은 분명히 자신의 반응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도 그 반응에 대해서 상반되는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그 긴장을—우정이나 가족유대를 존중하여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것부터 자기가 동의하지 않는 관계를 관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내키지 않아서 거절하기로 결정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었다. CRC 내부의 어떤 이들은 그 관계를 축하하고 동성간의 헌신된 관계를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참석할 수도 있다. 참석할지 안 할지 결정은 종종 양심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리고 양심은 존중 받을 자격이 있다.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전달한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동성간 결혼식의 초청장에 대하여 우리가 추천할 만한 한 가지 확실적인 반응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폭을 인정하고 사려깊은 선택을 지지함으로써 교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참석하거나 불참하기로 결정을 내리는데 모호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CRC 교단이 1973년 보고서의 결론과 불일치한다고 간주한 관계를 용서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헌신된 관계를—무수한 측면을 가진 관계, 그 중 많은 것들이 칭찬받을 만하다—성행위로 환원시켜 평가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후자는 초청받은 친구나 식구를 (그리고 교회까지 확장해서) 혼인의 성적 측면이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라는 고소로 노출시킨다. 이러한 위험들은 은혜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완벽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준다.

어떤 이들은 동일한 결정의 자유가 목회자와 다른 교회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문할지도 모른다. 공개적인 행사에 목사나 교회 지도자가 참석하는 것은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전달한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그 결정은 복잡할 수 있다. 어떤 목회자는 미래의 목양적 돌봄이나 제자훈련을 위해서 결혼하는 한 쪽이나 양쪽 당사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석할 수도 있다. 비록 그 목사가 성경적 근거에서 그 혼인에 동의하진 않더라도 말이다. 그것이 목사의 친 자녀나 다른 친척의 혼인일 수도 있다. 가족간 유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또는 목사가 동성혼인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래도 식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표현으로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교인이나 이웃이나 친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함께 참석할 수도 있다.

여느 혼인 예식처럼, 그 자리에 참석한다고 해서 반드시 관계의 모든 측면을 다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목사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건에 관하여 교회 콘시스토리와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이것은 나중에, 특히 회중 안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투명성을 격려하고 뜻밖의 사태를 제거해 준다.

2. 주례

본 위원회가 실시한 교단 조사와 클래식스 경청모임을 통하여 CRC 목회자들이 동성간 헌신예식과 결혼식을 주례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이 캐나다를 따라 동성혼인을 허용함으로써, 분명히 CRC 목사들에게 동성간 결혼식을 주례해 달라고 부탁하는 요청도 더 빈번해질 것이다.

동성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과 관련하여 네 가지 기초적인 질문들이 제기된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특히 시, 주, 지방이 성적 지향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 지역에서, 목회자들에게 동성혼인의 주례를 해달라고 요구하게 될 것인가?

- 종교적 혼인의 표징은 무엇인가?
- 목회자들이 종교적 동성혼인을 주례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 목회자들이 민법상 동성혼인을 주례하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a. 목회자를 위한 법적 측면

동성혼인을 주례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잠재적인 법률적 취약성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목회자들, 특히 최근에는 동성혼인이 합법화된 미국에서, 드문 현상이 아니다. 어떤 목사가 본 위원회의 조사에 반응하여 질문했듯이, 동성 커플이 나에게 자기들의 결혼식을 주례해달라고 부탁하면/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한 부탁이 들어온다면/올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무슨 지침이나 정책을 세워야 하는가?

캐나다가 민법상 동성혼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이 분야에 유익하다. 캐나다에서 동성혼인이 합법화된 2005년 이후로, 어떤 목사도 자신의 확신에 반하여 혹은 자기 교단의 입장에 반하여 주례하도록 강요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것은 우려한 바와 달리 캐나다에서 안수받은 CRC 목사들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물론 캐나다의 경험이 미국의 목사들에게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캐나다의 상황은 민법상 혼인법이 구체적으로 목사들과 교회들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미국에선 대법원이 *오버게펠* 판결에서 종교적 자유의 쟁점을 주로 반대의견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전문가들은 미국 목사들이 동성혼인을 주례해달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제 1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거의 확실히 유지되어 동성간 결혼식을 주례하라는 어떤 의무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곤경에 빠질 수 있는 한 가지 상황을 주목하고 경고하고자 한다. 즉 목사가 예비 결혼자들의 교회·교단 소속 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식 주례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경우다. CRC 교단에는 모든 결혼식 신청자를 위해 다 주례하겠다고 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긴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 목사들은 교회헌법 69 조의 함축의미를 이 관점에서 고려하는 게 유익할 것이다) 일반 대중에게 결혼식을 주례해 줄 수 있다고 광고한 목사가 동성 결혼식을 주례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그 주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실제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직무에 태만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뒤에 나오는 C, 5 항목에서 기관목사(chaplain)의 기관사역의 상황을 다룰 것이다.

목사들은 교회의 웹사이트에 (예를 들면, 결혼식 혹은 건물 사용 페이지에) CRC의 혼인관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결혼식 주례에 관한 방침 선언문을 채택하는 게 지혜로울 것이다. 목사가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하여 차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적지만,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은 목사들은 적어도 한 사람이 교인이나 교단의 회원인 경우에만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b. 종교적 혼인의 징표

우리는 본 보고서 앞 부분에서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 사이의 구분이 더 선명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실질적으로 복미의 종교적 혼인은 모두 민법상 혼인이라는 점은 여전히 타당하다. 즉 한번의 예식으로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을 주례하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종교적 결혼식은 크리스천 신자들 사이의 혼인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다. 무엇이 결혼식을 종교적으로 만드는가? 분명히 그 환경이 한 몫을 한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과 표현으로 에워싸인 교회 성전에서 하는 결혼식은 그 혼인을 위해 하나님의 복과 크리스천 공동체의 축복을 추구하는 의도를 암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한 결혼식을 종교적 혼인으로 구분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지방이 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위에 의해서”란 어구를 사용한 혼인 선포 (서약 교환 뒤에 음)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전적 요소와 하나님의 복이 부부에게 임하도록 드리는 기도
-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부서약이 발표되고 혼인이 장엄하게 주례되고 있다는 시인

c. 종교적 동성혼인의 주례

교회헌법 69 조와 항과 조화되는 CRC의 혼인관은 CRC 목사가 종교적인 동성혼인을 주례하는 것을 배제한다. 본 보고서의 앞에서 주목한 대로, CRC는 혼인을 하나님 존전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적 결합으로 이해한다. 69 조는 항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혼인을 주례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19734년 보고서의 성경적·신학적 기초는 동성간의 성행위 (지향성이 아니라)가 죄라는 교단적 이해를 제시한다. 종교적인 동성혼인 주례하는 것은 그 이해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이다.

종교적인 동성혼을 주례해달라는 부탁은 목회적 도전을 잘 표현한다. 그 부탁이 교인이나 교인의 친구나 친척에게서 온 것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강력한 개인적 혹은 목양적 관계에서 근거한 부탁을 뿌리치려면 갈등에 빠질 것이다.

만약 어떤 목사가 종교적인 동성혼인을 주례해야 한다면, 그는 교회의 조사와, 잠재적으로 목회 자격증의 정지나 상실을 포함한, 치리를 받게 될 것이다. 미국연합감리교와 같은 어떤 교단들은 그런 경우에 거의 자동적으로 자격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시도를 했다. 한 감리교 목사가 동성결혼식을 주례했던 사례와 같은 경우, 제도적·인격적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한 국가적 평판이 수반된다.

어떤 이들은 CRC 교단이 유사한 정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회는 그 수단을 추천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CRC 교단 정치는 미국 연합감리회(United Methodist Church)의 정치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CRC 교단의 구조는 감독의 권위 하에 위계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며, 치리 교본(Book of Discipline)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언약적 생활은 교회의 심의 회의(deliberative assemblies)를 통해 중재된다. 심의회의는 지역 교회 카운실에서 출발하며 교회헌법이 제시한 절차를 따른다. 종교적인 동성혼인 주례만을 가지고 자동으로 정직시키거나 치리하는 것은 범죄의 종류를 만들어내고 교회 회의의 심의적 성격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목사가 교회헌법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기존의 교회 정책에 따르면,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재판소는 목사의 콘시스토리이며, 거기서부터 필요하면 사안이 클래시스와 총회로 넘겨진다.

d. 민법상 동성혼인을 주례하기

결혼식을 주례해달라는 부탁들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민법상 혼인 예식과 종교적 혼인예식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 부탁이 동성 커플에게 관한 것일 때 위에 언급한 목양지침이 적용된다.

목사가 민법적 예식을 주례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 것이 이상하긴 하지만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사역하는 동안 한번 이상은 그런 부탁을 받는다. 그런 부탁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목회자의 반응도 그렇다. 어떤 목사들은 그런 부탁은 모조리 거절한다. 다른 목사들은 결혼하는 커플과의 관계에서 의미심장한 목회적 측면을 분별한다면 주례할 것이다. 적어도 실천 면에서 CRC는 이 점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부여했다.

CRC 목사는 민법상 동성예식을 주례해도 좋은가? 우리가 주목한 바대로, 이것은 극단적으로 협소한 질문이다—즉 동성커플이 CRC의 1973년 입장의 범위 안에 살기로 헌신하면서도 종교적 혼인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에 제한되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민법상 혼인의 법적 구조와 혜택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일반적으로 목사들은 그런 희귀한 상황에선 사람들에게 민법상 혼인을 주례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목회자가 민법상 주례자가 되는 게 더 적절한 목회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음 사례들을 숙고해보라:

- 수년 동안 나이든 두 남성이 깊은 우정을 발전시켰다. 아무도 결혼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집, 친구, 사업 이해관계도 공유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법률적, 의료적 및 개인적 상황에서 취약하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들은 CRC 목사와 오랜 관계를 가졌기에 목사에게 다가가 민법적 예식으로 자신들을 결혼시켜 줄 수 있는지 문의한다.
- 특수아동을 입양하고 자녀로 양육하는데 관심있는 유능한 두 여성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두 부모 가정의 안정감을 추구한다. 교회는 그들의 은사를 인정하고 후원하기를 원한다. 그 여성들은 목사에게 자신들의 민법상 혼인 예식을 주례해달라고 부탁한다.

비록 이러한 상황들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회는 이 부분에 관하여 토론했다. 우리가 목양 지침에 관하여 똑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어떤 위원은 목사들이 종교적 혼인이 배제된 민법적 예식을 전혀 주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다른 위원들은 이와 같은 독특하고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선 그 상황에 비추어 재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례는 민법상 동성혼인이 동성적 지향과 행위에 대한 CRC의 이해와 내재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교회의 혼인에 대한 이해와도 충돌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접대하기

교회는 빈번하게 그 시설을—보통 성전과 친교실을—결혼식과 피로연을 포함한 행사와 예식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어떤 교회에선 교인들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반면 다른 교회에서는 더 큰 지역사회가 이용하도록 허용하는데, 어쩌면 교인과 비교인 간의 사용료는 다르게 받을 수도 있다. 어떤 교회에선 예약이 교인을 통해서 이뤄지지만 그 행사 자체는 현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결혼식일 수 있다.

비교인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연방, 주, 지방, 및 지역법률의 차별 조항들이 작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 교회가 자체 웹사이트나 홍보수단으로 그 시설을 일반 대중의 결혼식에 쓸 수 있다고 광고한다면, 그 시설을 이성간의 결혼식처럼 동성간 결혼식에도 쓰게 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0 년동안 캐나다의 교회가 조언을 받았던 것처럼, 교회가 그 건물에서 동성 결혼식이 주례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두 가지 일을 하라는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이다: (a) CRC 교단의 혼인관을 언급하는 결혼식 방침을 분명하게 밝히라, (b) 시설의 대여/사용을 교인들에게만 제한하라. 본 보고서의 부록 B 에는 이 사안에 관심이 있는 교회들을 위한 법률 자료가 있다.

만약 한 CRC 교회가 그 시설을 개방해서 동성결혼식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어떨까? 어떤 교단들은 자기 교회들이 예배당 안에 동성간 예식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왔다. 주로 지역교회 재산이 교단의 소유이거나 지역교회가 신탁으로 관리하는 교단들이 그렇게 한다. CRC 교단은 재산소유가 지역 회중에게 있으므로, 전통적으로 그 사용결정을 지역에서 내렸다.

어떤 교회들에겐, 그 시설을 비교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교회를 더 넓은 지역사회에 연결시키는 한 방법이다. 또한 시설에 접근하는 것은 다른 기독교 교단과 에큐메니칼 관계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으며,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일부 교단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어떤 CRC 교회는 다른 회중과 시설을 공유한다. 이 점에 관하여 CRC 교단이 포괄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적으로 교회 카운실의 재량에 따라 다뤄져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4. 동성 결혼식에서 역할 수행하기

동성간 결혼식에 이러 저러 연루될만한 생업이나 직위를 가진 사람들—즉 제빵사, 꽃장수, 사진사, 카운티 서기 등—에게 미디어의 관심이 많이 쏠렸다. 이 부분은 미국에서 종교적 자유가 동성혼인과 대결하여, 입법적으로 또 법원을 통하여, 녹초가 된 첫 대결장이다.

입법적으로, 종교인이 동의하지 않는 관계를 축하·허용·동참하지 않으려는 욕구와 사회 내의 반(反) 차별 이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발견하는 것이 도전이 되었다. 미국에서 주요 난제는 사업체가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주(州) 법령에 포함되어야 하느냐였다.²¹

종교적 자유문제는 중요하다. 또한 교회는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려는 입법적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²¹ 이것은 미국의 특수상황이며, 미국 대법원의 *버웰 대 하비 로비 스토어스*(*Burwell v. Hobby Lobby Stores, Inc.*, 573 U.S. ____ 2014) 소송 판결의 결과다. 이 소송은 제 1 수정헌법의 종교자유 보호권이 가족회사에만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그 쟁점들을 여기서 상세하게 다루기엔 너무 복잡하다. CRC 교단의 한 연구 위원회가 종교적 자유와 핍박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은 중요하다.²²

혼인 증명서 발행업무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즉 카운티 서기, 치안판사, 지역 판사, 등)은 종교적 자유를 근거로 공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직무서약에는 공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공문서를 발행해야 하는 공무원의 인격은 종교자유 보호권을 유발할 만큼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민법상 혼인을 주례하라는 법적인 요구를 받는 공적 관리들에게도 동일한 사항이 해당될 수 있다. 공직자들에게 종교적 성직자와 동일한 주례거부권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캐나다의 몇 지방에서 실패했다. 2015 년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그러한 정책을 채택했고, 현재 다른 미국의 주에서도 그것이 심리 중에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데서 면제 받을 가능성은 없다.

미국에서 결혼식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사업체들에 관한 초기 소송에서, 그 개인이나 사업체가 대중에게 봉사하는 서비스를 홍보한다면 종교적 자유 주장은 힘겨운 곤경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성적 지향을 보호받는 범주로 포함시키는 반차별 조항들을 법령화한 지역사회들에서는 법원이나 자치단체들이 개인의 종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

동성 커플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부 교회 사람들의 양심을 훼손할 수도 있다. 다른 이들은 부담없이 동성커플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결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잘 내려질 것이다. 마치 우리가 교인들에게 바르 미츠바(유대인의 성인식: 역주)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지 말라거나 무신론자 두 사람의 결혼식에 꽃을 예약해서 보내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그들의 행사 자체나 그 고객의 인생의 모든 측면과 계약을 맺는 것을 함축하진 않는다.

직업적·사업적 측면과 달리, 개인적 측면에서 교인들은 —결혼식에 서는 것부터 음악이나 예전에 동참하는 것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동성간 결혼축하에 참석하도록 초대를 받을 수 있다. 주례를 하지 않더라도 참여 자체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별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교회의 말씀 사역자, 위임목사, 및 다른 안수지도자는 그들이 동성간 예식에 관여하는 것이 면밀하게 자세히 조사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참여”란 성경봉독에서 시작하여, 기도, 딸을 데리고 복도를 걷기, 아들로부터 감사와 존중의 선물을 받는 것까지 십 수 가지 역할을 포함할 수 있다. 이처럼 참여의 가능성은 너무 복잡해서 금지나 허용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현재로선 교회의 안수받은 지도자와 위임받은 지도자들은 공적인 역할에서 신중하게 분별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²² 동성혼인에 관하여 종교적 자유 보호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탁월한 법률적 논증을 보려면, 더글라스의 레이콕의 글을 참조하라. Douglas Laycock, “Religious Freedom and the Culture Wars,” 2014 *Illinois Law Review* 839.

B. 교회 공동체

이제 우리는 그리스천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성혼인을 다룰 것이다. 우리는 교회생활의 세 측면, 즉 환영, 소속, 및 제자화를 통하여 이 목양지침을 다룬다. 환영은 한 개인과 한 교회가 서로 알아가고 관계를 세워가는 도입단계이다. 소속은 새로운 사람을 공동체의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단계이다. 제자화는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것은 동성혼인자들이 교회 밖에 있어서 새롭게 교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암시하는 모형을 하는 것이다. 즉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많은 동성지향인들이 이미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교인인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양한 질문을 던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순차적으로 다루는 것은 단지 개념상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임을 밝혀 두는 바다.

그래서 동성지향적 교인이 결혼하기로 결정할 때 교회가 처음 그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했다. 논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 상황을 소제목 3. 제자화 항목(아래)에서 다룰 것이다.

1. 환영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현대 신앙문서에서 CRC는 “새로운 공동체는 모든 이를 환영한다”고 확인한다 (단락 34). 환영하기는 초청, 소개, 관계 확립 등의 과정에 연관된다. 경청모임에서 목회자, 장로, 교회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모든 개인을 환영하여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고무되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데 선행조건은 없다. 신실한 교회는 세계를 향한 문을 열어둔다.

1973 년과 2002 년에 총회는 교회가 동성지향적인 개인들을 환영하고 목양 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단언했다. 2016 년에 총회는 동성혼인자들도 환영하고 예수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초청해야 한다고 확인해야 한다. 우리의 고백과 증거에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영하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의 구현체가 되어야 한다.

1973 년 총회와 2002 년 총회가 동성지향적 개인들을 위한 교회의 환영과 목양사역을 긍정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1973 년에 지지한 내용은 교단 내부에서 상당한 반대를 받으면서 채택되었다. 또한 2002 년 총회가 동성애 교인들을 위한 목양적 돌봄(Pastoral Care for Homosexual Members)에 관한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CRC 가 동성지향적이었던 개인들을, 교인이든 아니든, 지지하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이것은 여전히 CRC 교단에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있으며, 우리가 깊이 애통해 하는 부분이다. 우리의 여론조사에 응한 사역자의 78 퍼센트가 동성지향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고 보고한 반면, 12 퍼센트만이 교회가 동성지향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환대하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35 퍼센트는 자기 교회가 나름대로 이 일을 한다고 말했으며, 44 퍼센트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당신은 교인 중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들으면 불쾌할 것이라 믿어지는 말을 교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훨씬 더 걱정스럽다: 응답한 사역자 61 퍼센트가 교인들에게서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체 조사 응답자 중 비이성애자 (자신이 레즈비언, 게이, 퀴어²³, 혹은 동성에게 이끌린다고 밝힌 이들) 75 퍼센트는 교인들로부터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이것은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이다. 회개가 필요하다.

CRC는 동성 커플들과 가족을 환영할 의도를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길 기도한다. 그 도전들은 확연히 드러나지만, 어떤 경우엔 고도의 분별력을 요한다. 우리의 경청모임에서 환영하려는 의지 다음에 종종 “우리는 잘못된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요” 라든가 “우리는 교단의 동성애 관련 입장을 감추면 안됩니다” 라는 혼란하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다. 동성애와 동성 관계에 대한 CRC의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적절한 순간이나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반신반의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내재된 긴장을 이해한다.

핵심은 교회와 교인이 사람들을 환영할 때 —선결조건이 없이—그들과 기꺼이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는 제안한다. 환영이란 정직한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환대(hospitality)를 제공하고, 관계의 진전 과정에서 적절하고 필요한 대화와 진정한 만남을 분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환영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생명과 은혜가 성적 지향이나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관련된다.

이것은 특히 교회의 프로그램과 아웃리치에 해당되는 문제다.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한 목사는 최근 자신의 교회가 후원하고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자녀양육 시리즈에 최초로 등록한 이들이 동성커플이었다고 썼다. 교회가 환영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그것은 교회가 호의적(hospitable)이라는 뜻이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는 욕구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는 욕구가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목사와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그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으로 정해지는 관계다.

CRC 내에서 혼인개념에 관한 대화와 소통을 나눌만한 적절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동성 커플이 교회의 입장에 관해 문의한다면, 리더십은 1973년의 교단의 신학적 선언문을 감추거나 흐리게 하지 않는 대화시간에 그 커플을 초청해야 한다. 이 목양지침 단락의 뒷부분에서 우리는 1973년 보고서를 진실하고 은혜롭게 알리는 법을 다룰 것이다. 단 교회가 제공하는 환영을 취소하고 방해할 정도로 “CRC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밝히려는” 충동은 피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조사와 경청모임에서 다양한 교회 사역의 섬김과 리더십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빈번한 질문들은 일상적인 교회생활 참여에 관한 것이다. 민법상 동성혼인을 한 배우자가 안내위원으로 봉사해도 좋은가? 육아실 감독자로 봉사해도 좋은가? 교회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해도 좋은가? 주일학교 학급에서 가르쳐도 좋은가? 아니면 그 자녀가 출석하는 아동부 사역에 봉사해도 좋은가? 그들이 자기 음악적 혹은 창의적 은사를 가지고 봉사해도 좋은가?

²³ “퀴어”란 말은 LGBTQ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포괄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다양한 잠재적 상황들의 범위는 넓다. 게다가 각 상황의 교회 생활 맥락, 한 개인과 다른 교인들의 관계, 또한 그들의 제자도 여정도 연관된다. 이 위원회는 전 교단 전체에 성감과 리더십의 문제에 관한 생산적 조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 우리는 하나의 조언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보고서에서 복잡한 잠재상황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충고를 도출해내려는 시도는 지혜롭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성질의 결정들은 지역교회의 분별력 맡기는 게 타당하다. 관련된 사람들은 지역 교회 안에서 알려지고 사랑받기 때문이다.

2. 소속(교인자격)

환영은 반드시 소속으로 이어진다. 교회의 환영 사역은 당연히 사람들을 교인으로 교회생활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CRC의 1973년 동성애 관련 보고서는 교회의 결혼한 동성커플을, 경우에 따라 그 가족까지, 위한 사역과 가장 명백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받아들임은 교회생활의 두 측면, 즉 유기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의 상호작용이다. 유기적 측면은 공동 생활의—즐겁고, 너저분하고, 또한 놀라움과 기묘함으로 가득한—측면이다. 삶과 관계와 교류의 풍성한 조합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다. 유기적 측면은 공동체 안에서 살며, 인생을 나누며, 자신과 세상의 상처를 극복하려 애쓰며, 하나님과 서로와 세상을 섬기는 데 자기 자신을 기부하는 사람들이다. 유기적 차원은 교회가 부름받은 본래 소명을 이루는 것이다. 즉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왕국을 위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만져지는 것이다.

교회의 형식적 측면은 교인자격 조건을 통하여 소속에 관해 다룬다. 교회는 구조를 만들고 질서를 세움으로써 공동체의 유기적 삶이 번창하도록 한다. 교회는 교인자격의 원칙을 따라 교인의 권리와 임무를 정한다. 교회는 교인에 대한 기대사항을 확인하고 처리 절차를 따른다. 이런 형식적 규칙들은 성경적 원리, 문화적 실천, 및 실용적 지혜의 조합이다. 형식적 측면은 목적으로 가는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형식적 측면은 교회의 공동생활이 번창하는데 필요한 형식과 구조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대의 사역 상황은 소속의 두 측면이 잘 뒤섞이지 못하게 만든다. 많은 교회들에서—도심이나, 대도시에서 뿔어나간 교외나, 대학도시나, 혹은 이동률이 높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서—유기적 측면이 빠른 속도로 발생하지만 형식적 측면은 진행되기가 힘든 긴장감을 가진다. 관계는 재빨리 형성된다. 재빨리 환영 받은 사람은 교인자격의 공식적 조건을 다 준수하기 전에 교회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이 긴장의 한 요소다.

둘째 요소는 특히 동성 커플에 관한 것이다. 환영이 받아들이는, 특히 관계를 형성하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소속 과정을 계속하고 완성하는데 장애물이 발생하면 실망과 좌절감이 느껴진다. 이 실망감과 좌절감은 교인 지망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환영하려고 다가온 사람도 느낀다. 우정과 영적 관계의 개발은 교인등록부를 기다리지 않는다.

정식 절차 이전에 영적 은사가 제공되고 받아들여진다. 동성 커플들이 환영받고 교회 공동생활에 통합되기 시작할 때, 정식 교인이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도전일 것이다. 우리는 뒤에서 교인자격의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다룰 것이다.

a. 교인 이적

“소속하기”에 관해서 고려할 첫 상황은 동성 혼인 또는 관계에 있는 CRC 교인이 교적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대학과 직장이나 대학원 공부를 위해 떠나 수 년이 지난 후 새로운 지역사회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그 동안 그들의 교적은 원래 성장했던 교회가 유지한다. 그들은 5 년, 10 년 혹은 훨씬 더 오래 그 교회와 떨어져 지내게 된다. 교회헌법 59-d 조항은 CRC 교회들 사이의 교인 이적에 관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다른 CRC 교회에서 오는 고백 교인들은 교리와 삶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교인증서를 제시하는 즉시 교회의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59 조를 그대로 읽으면 교적의 이전은 보내는 교회가 그 사람이 건실한 교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런데 그 교적 이전 신청서에는 그 이적을 요청한 교인이 동성간 혼인 또는 관계에 있다는 정보가 포함될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은 고향교회(또는 “파송” 교회)가 이적 신청자와 관계가 별로 또는 전혀 없는데도, 원거리에서 의미 있는 관계도 없이, 그 신청을 거부하고 치리 과정을 개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우리가 보기엔 (“건실한 상태” 이건 아니건) 교인자격의 적절한 위치는 제자도와 잠재적 치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유기적 소속감이 가장 강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이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시간의 길이, 새 교회와의 연결점, 두 교회 사이의 거리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가 제자도를 추구하고 치리를 행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CRC 교회헌법 주석에서 제시된 한 상황은 아마 교리와 삶에서 오류를 범하면서 “파송교회”보다 “수용”교회에 더 큰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교인의 상황에 목양적으로 반응하는데 더 적절한 방식을 가리키는 것 같다. 주석은 이렇게 설명한다:

“파송” 카운실은 다른 선택도 할 수 있다. 적절한 치리 단계를 밝으면서 그 사람[개인]을 “오류 교인”으로 분류하고 계속 치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심지어 파송카운실은 “수용” 교회의 카운실에게 도움을, 특히 장거리가 개입된 경우, 요청할 수도 있다.

(CRC 헌법주석, pp. 359-60)

그런 시나리오에선 파송교회가 치리 과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되 실질적인 치리사역은 수용교회에 맡길 수 있다.

우리는 59 조의 의도에 부합되는 다른 적절한 선택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 선택에선 파송교회는 등록교인 서류에 그 개인의 교리와 삶에 관해 의문이 생겼다는 사실과 그 의문의 일반적 성격을 포함시켜서 보낸다. 그리고 나서 파송교회는 그 회원권을 받아들이는 결정, 제자화와 잠재적인 치리를 계속 수행하는 책임을 수용교회에게 위탁한다.

이 선택을 따르면, 몇 가지 논리적 단계를 취해야 한다. 첫째, 목사나 장로가 이적을 신청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야 한다. 동성 관계의 잠재적 의미까지 포함하는 정직한 대화를 나눌야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적이전 신청은 그 수반될 결과를 알고서 확정해야 한다.

둘째, 두 교회끼리 소통해야 한다. 현재 교적을 유지하는 교회가 동성 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또한 그것에 공식적으로 대처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즉, 이적을 요청한 그 사람은 현재 건실한 교인인가?).

셋째, 상황이 보증하는 제자화에 관여하는데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처지에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원 교회라면, 원 교회가 교적을 유지하고 목양적 돌봄도 책임지되, 새 교회의 도움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다. 만약 그것이 새 교회이고 그 카운실이 동의한다면, 교적 서류는 적절한 설명과 함께 새 교회로 보내져야 하며, 제자화/치리는 수용교회의 책임이 될 것이다.

교회들은 어려운 목양적 상황에 있는, 아마 제자화에서 치리로 금방 옮겨갈 만한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교인의 이적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식적인 이적에 잠재된 함축성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나면 아마 그 요청을 취소하기로 선택하거나 다른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 또는 유기적으로 소속되지만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긴장감을 유지하며 사는 쪽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결정이 무엇이든, 희망은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제자화의 여정을 계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영적 성장을 발견하는 공동체에서 제자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b. 교인등록 신청

정식 교인의 관점에서 보면, 비 CRC 동성혼인 부부나 동성혼인을 한 개인이 CRC 교회에 교인등록을 신청할 경우 일련의 사태를 만들어낸다. 그러한 사태는 어떤 사람에게는 명료해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보일 것이다. 그 등록요청은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CRC의 입장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초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을 대화의 끝으로 받아들이고 회원권을 절대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게 사실이라면 왜 대화를 계속하겠는가?

우리는 교인 등록 신청을 통해서 그 커플과 가까운 CRC 교인들이 동성관계에 관한 CRC 입장을 설명하고 또 경청하는 대화가 시작되거나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질문들에 답하려면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 인용은 적절하게 하되, 동성지향적 개인들을 정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경청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관계에 관련된 성경과 신학에 박식한 경우에 더 그렇다. 대화는 방어와 공격이란 극단을 피해야 한다.

교회 회원권에 대한 교회헌법과 동성애에 관한 1973 년 보고서의 논리는 동성 성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교회의 가르침과 권면과 훈련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해야만 한다. 죄에 연루된 사람은 회개하(고 죄에 저항하는데 헌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실한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우리는 다음 단락에서 기존 교인의 상황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이 논리를 따르면, 동성과 성적으로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커플은 교회의 건실한 교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대부분의 교인자격은 커플이나 개인이 그 공동체를 갑자기 떠나거나 혹은 서서히 소원해지는 것으로 결말이 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유기적 회원권과 형식적 회원권 사이의 불편한 단절을 감내하고 살면서, 교회 공동체 내의 림보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

한 개인이나 커플이 동성간 성관계에 대한 CRC 의 가르침을 수용하기로 동의하고 자신의 삶을 순응시킨다면, 그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히 명확하다. 그런데 “순응”이란 무엇을 수반하는가? 1973 년 CRC 입장은 동성간 성관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 현재 입장은 민법상 혼인의 취소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도 가정의 구실을 하고 있는 관계를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아선 안 된다.

이미 언급했듯이, 전술한 내용은 CRC 의 교회헌법 과 1973 년도 동성애 관련 입장의 논리를 따른다. 사역의 실재는 언제나 복잡하다. 어떤 교회와 목사들은 동성관계에 관한 현대 신학 담론과 성경에 박식한 헌신적인 그리스천 동성 개인들과 커플들을 (교회 안의 다른 교인들도)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애정과 헌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들은 신중하게 숙고한 후 CRC 의 교훈과 어긋나는 의견에 도달한 것이다. 1973 년도 교단의 입장은 목회 문제에 관한 목양적 조언을 제시하는 것이지 동성관계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요구하지 않는다.²⁴ 하지만 그것은 성행위를 구속한다.

우리의 목양지침은 본 위원회가 받은 총회의 지시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목양적 측면에서 전체 교회를 관찰한 바에 따르면, 복잡한 사역 상황 때문에 교인자격문제가 계속해서 긴장을 조성할 거라고 본다. 많은 CRC 교회들은 이미 동성 커플들을 교회생활에 통합시키는 도전들을 다루고 있다.

²⁴ 본 보고서의 I, D 항에서 주목했듯이, 1975 년 총회는 다양한 총회 보고서와 발표문의 실상을 보고했다. 동성애에 관한 1973 년 보고서는 윤리 문제에 대한 목양적 조언을 제시하고, 그리하여 교인들의 행위를 구속하는 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쟁점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키진 않는다. 드무어의 저서도 참고하라. DeMoor,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 pp. 165-71

교인등록 거부 논리는 그 동성커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보다 해치는 쪽으로 경험되고 있다.

c. 어린이와 세례

동성 커플이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진전된 질문이 일어난다. 가족이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은 어린이부서나 청소년부서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될 지도 모른다.

언약공동체인 교회는 자녀의 신앙을 양육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그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며 그들 안에 성령께서 살고 계시며 또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 동성부부 가족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그 부모의 관계 상태와 무관하게 신앙의 발전을 위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린이를 환영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막지 말라고 경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다.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CRC 교훈이 강권하는 바는 동성 커플의 자녀를 환영하고 교제와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상당한 분별력과 성숙도가 요구된다. 교회는 혼인과 적절한 성관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감추면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을 불필요하게 강조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공개적인 어색함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교회는 가족관계를 파괴하거나 경멸하지 않도록 혹은 부모의 권위나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자녀들이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그들의 교인등록 및 세례 신청은 부모의 신청과 구분해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은 자녀의 이해와 성숙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교회는 동성혼인 부부의 영아들과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좋은가? 교회헌법은 “하나님의 언약은 고백교인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세례를 통해 인쳐질 것이다”(교회헌법 56 조)라고 진술한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언약의 약속을 베푸신다. 그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양육하겠다는 언약을 서약하기 위해선 최소한 한 부모의 신앙 고백과 건전한 교인생활이 필수적이다.

CRC는 한 부모가 그 자녀를 대신하여 서약할 수 있는 적합한 언약의 교인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었다. CRC 헌법주석에 의거하면, 매우 드물게, 부모를 대신하고 있었던 확대가족이 자녀를 세례식에 데려온 적이 있었다.²⁵ 교회와 지도자들은 창의적이면서도 신중하게 사색해야만 한다.

d. 성찬

목사들과 다른 교회지도자들은 성찬 참여에 관한 지침을 요청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회중에 소속되는 주요 활동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받는 것은 은혜의 언약의 징표이자 봉인이다. 성찬은 보통 교회 안의 교인에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데, 많은 교회들은 공적 예배 때 갖는 성찬식(communion)이 공동체의 지체들을 더 큰 기독교 연합(communion)의 지체들인 환영받는 방문객들과 신입자들에게 연결시킨다고 본다.

²⁵ Henry DeMoor,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 pp. 311-13.

CRC 내부에서 성례전 참여의 문제는 성찬식의 실태가 다변화하면서 복잡해졌다. 어떤 회중들은 여전히 비교인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콘시스토리의 인가를 받도록 요구한다. 성찬상의 영예를 보호하고 고백교인만 참석시키자는데 강조점이 있다. 방문자들과 아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조사를 받은 후 인가를 받았다. 그런 CRC 교회들은 건실한 상태의 교인들을 환영하여 성찬에 참여시키는 그 실천을 계속해야 한다. 누구든 공식 치리를 받아 성례전 참여가 금지당하지 않았다면 그 때까지 성찬식은 개방해야만 한다.

많은 CRC 교회들에게 성찬식 참여권은 성찬식 예전 자체에 의해서, 즉 3 중적인 참가자격을 통하여 중재된다.²⁶ 처음엔 하나님께서 친히 성찬상의 영예를 보호하시며, 분별하지 못하고 참여하는 위험은 초청의 기대에 반응하는 개인이 짊어진다. 성찬상에 나오는 자들은 분별하고 참여할 책임을 진다.

이 성만찬 의식을 따르는 교회들은 일관되게 접근해야 한다. 그 의식에 맞게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해야 한다. 건전한 상태의 교인들은 성찬상으로 환영해야 한다. 동성혼인관계에 들어간 이들을 위한 교회의 성찬식 실천은 성경적 가르침에 반한다고 간주되는 행동을 하는 이들과 다르게 적용하면 안 된다.

성례전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성급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결정해선 안 된다. 성찬은 근본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빵도 하나요 잔도 하나요 몸도 하나라는—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절차상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한 경우에만 교회는 은혜의 수단인 성례전 참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님의 만찬과 그것의 의미는 죄, 은혜 감사의 생활에 대하여, 동성혼인을 한 사람들도 포함한, 교회에 새로 나온 이들과 대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자화

*제자화(discipling)*와 *치리(discipline)*란 말은 같은 어근에서 파생되었지만 다른 함축성을 전달한다. 일반적인 말투로 제자란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고, 치리란 위반자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가하는 형벌로 이해된다.

교회 안에서 *제자화*란 우리를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도록 붙들어 주는 상호적인 실천이다. 교회는 *치리*를 긍정적·회복적으로—즉 한 사람을 온전한 교인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조치들로—정의한다. 하지만 *치리*란 용어에서 일종의 형벌이 연상되는 것을 떨쳐내 버리기는 힘들다. 특히 성례전의 보류나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조치들이 가장 공개적인 형태의 치리이기 때문이다.

²⁶ (1)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를 자각하는 것, (2) 예수님을 구원의 원천으로 신뢰하는 것, 그리고 (3)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제자화(discipling)**란 용어를 선택했다. 제자화는 때와 상황에 따라 치리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와 자신의 지속적인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교회가 동성혼인을 한 교인들을 공식적으로 치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설부르게 뛰어드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자화**란 용어를 선택한 이유는 동성혼인 관계 안에서 결혼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교인이 그리스도의 제자—즉 동료 제자—로서 그렇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제자도의 측면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모두—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를 분별하며 성숙한 삶과 신앙으로 자라가면서 함께 제자화 과정을 밟고 있는—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동성지향인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이미 결혼한 경우 교회는 성급하게 그를 치리하고 최후수단을 취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많은 상황에서, 치리의 위협이나 가능성이 그 교회와 그 동성지향적인 개인이나 커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그와 함께 더 이상의 제자화의 가능성도 끝날 것이다. 우리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인내심을 보여주고 제자화 과정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라고 권면한다. 건강한 교회는 그들을 내보냄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

상호적인 제자화 과정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경청함으로써 시작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 개인이 동성혼인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결혼하려고 결정하는 것은 어쩌다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은 수년 동안 자문하고 자성하고 기도한 후에 내린 결정이다. 그 결정의 영적 측면을 심사숙고하여 다룬 것이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그 관련 사항들을 다루되 인내와 사려와 기도로 그 반응을 결정해야 한다. 교회는 핵심적인 영적 문제들에 대하여 성급하게 정죄해선 안된다. 교회와 교인들은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 한다.

사역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결혼한 동성 커플이나 동성혼인을 계획하는 개인들과 성과 혼인에 대한 **CRC**의 가르침에 관하여 대화를 나눌 목양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상이한 행동경로에 대하여 공개적·개인적으로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하여 정직하고 개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 사람이나 커플이 성관계를 지속한다면, 교회헌법 81 조는 (모든 동성간 성관계를 죄로 지정한 1973년 보고서와 관련하여) 공식적 치리의 논리를 펼친다. 공식적 치리의 개시는 오늘날 회중 가운데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 재량껏 다뤄야 할 문제이다. 언제나 그것은 소통과 상호 성찰이 실패한 후에 취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CRC**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헌법을 이해하는 방식에서 정해진 결론이다.

우리는 교회가 본 위원회를 괴롭히는 한 가지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청한다. 오늘날 본 교단 안에서는 성찬정지까지 간 공식 치리 절차가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마도 교회가 동성관계에 대해 가르치고 제자로 만들려고 한다면 동성인 개인/커플이 회개하든가 아니면 공식적 치리를 받지 않고 **CRC**를 떠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성찬을 금지할 지경까지 치리하려고 의도하는 죄의 범주가 동성간 성관계라는 점이 심각하게 혼란을 일으킨다.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고정관념에 스스로 빠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다.

또한 우리는 제자화가 공식적 치리로 변할 때 시간과 확실성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주목한다. 동성혼인의 경우 교단 내 불일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CRC 교회들은 신속하게 이동할 것이고, 다른 교회들은 느리게 이동할 것이다. 또 다른 교회들은 양심이나 개인이나 커플의 상황인식에 따라서 경우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그 개인이나 커플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역학이 변할 수 있다. 이것들은 교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기술한 것이다. 우리가 총회로부터 받은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는 앞에서 목양 지침을 제공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수행되듯이, 제자화 과정을 검토하고 질문하는데 자제력을 발휘하도록 권면한다.

c. 문화와 미래를 대면하기

1. 기독교적 혼인과 가족을 지지하기

앞에서 논증했듯이, 미국과 캐나다가 동성혼인을 법적으로 수용한 것은 CRC가 그 독자적 혼인관을 주장하고 그 견해에 맞추어 프로그램과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앞에 나온 실례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교회들과 클래스리스는 혼인에 관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그 자료를 모든 관심자들에게 공개했다. 기독교 전통의 지혜를 무료로 공유하는 것에 대하여 칭찬할 바가 많다. 교회는 의도적으로 권면과 개방의 메시지를 구현해야 한다. 동성 커플들이 참석한다면 은혜롭게 비대립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숙고해야만 한다. 컨퍼런스나 세미나 지도자들은 교단의 혼인관을 분명하게 밝히되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방식을 피해야 한다. 논쟁을 피하고 관용적인 대화를 권장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혼인에 대하여 다루는 교회에서 설교와 가르치는 사역도 혼인을 뒷받침하는 신적인 의도와 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동성혼인에 대한 과도하게 비방하거나 동성혼인 합법화를 이용하여 전통적인 기독교 혼인에 대한 위협의 경종을 울리는 소재로 삼는 것은 복음에 어울리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역효과를 낳는다.

또한 기독교 공동체 일부에서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의 절대적 우월성을 논증하고 동성 커플이 가장인 가정들에 따라오는 피해에 대하여 경고하고픈 유혹도 있다. 우리는 이것이 정직하지도 유익하지도 않다고 간주한다. 최근에 미국 법원들에서 이성 부모가 가장인 가정에서 양육 받은 아이들이 동성 커플들이 양육한 아이들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 방대한 논쟁이 벌어졌다.²⁷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통계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너무 예민한 부분이다. 교회가 그 결과의 차이점을 과장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²⁷ 예를 들어, 드보어 대 스나이더(DeBoer v. Snyder) 소송에 대한 버나드 프리드만 판사의 판결문을 참조하라. www.freedomtomarry.org/page/-/files/pdfs/MichiganRuling.pdf.

우리의 목양 지침은 교회가 혼인과 사랑이 넘치는 안정된 가정 생활을 지지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지혜를 제공할 때 복음 사역에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문화적 상황

본 위원회는 전 CRC에 소속된 다양한 범위의 민족들과 문화권과 대화를 나눴다. 여기에는 다수자 공동체와 소수자 공동체가 다 포함되었다. 대화의 초점은 특정 소수민족 공동체 안에서 동성혼인에 대해 기대하는 반응에 맞추었다. 본 위원회는 이 만남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

일반화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라도, 소수민족 공동체나 다민족 공동체들은 동성애에 관한 CRC의 1973년 입장을 지지한다. 전반적으로 사회가 민법상 동성혼인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조금 염려할 뿐, 동성혼인이 교회와 지도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반신반의했다. 반면 동성혼인과 교회에 관해선 염려했다. 동성애에 관한 CRC 입장의 변화는 다양한 수준의 긴장을 야기할 것이다. 이민자 소수민족의 경우 1세대 이민자와 북미에서 시간을 적게 보낸 이들은 동성애를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높다. 또한 소수민족에 속한 동성지향인들은 상당한 목양적 후원과 포용을 필요로 할 수 있다.

3. 청년과 차세대

이 보고서의 시작 단락에서, 우리는 북미주에서 동성관계에 관한 대중 여론이 변했고, 동성혼인 반대가 소수자 입장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 변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크리스천 청년들도 포함되며, 그들 중에는 CRC에서 자란 이들도 포함된다. 2015년 5월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의 73퍼센트가 동성혼인을 지지한다.²⁸ 우리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CRC 소속 학생의 52퍼센트는 민법상 동성혼인을 지지한다고 말했으며 41퍼센트는 동성혼인이 교회 안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통계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그 중의 제일은 동성지향적 개인들과 동성 커플들이 실존하고 있고 청년들의 사회 네트워크와 실제 생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년들이 성별의 문제들을 숙고할 때 보인 의도는 다양하다. 그들의 경험과 견해를 살펴보면, 종종 1973년 보고서의 결론과 그 성경적 해석으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동떨어져 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동성지향인과 이성지향인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많은 청년들은 그 구분이 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점에 관해 우리가 제공하는 목양 지침은 신중을 기하자는 쪽이다. 우리도 여러 면에서 심히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한다. 본 보고서 후반에서 우리는 1973년 보고서와 2002년 보고서의 결론부를 진실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이 점에 관한 한 역량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회가 CRC의 동성애 관련 입장과 청년들 사이에 있는 단절을 무시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만은 지적하고 싶다.

²⁸ 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6/26/same-sex-marriage. 2015년 8월 8일 접속.

CRC는 동성혼인과 동성애에 관한 논의를 회피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회는 그것을 주목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경과 성경대로 신실하게 사는 삶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신세대의 성찰과 경험을 반영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 동성지향적 개인들

동성지향적 그리스도인은 각기 개성적인 개별자로서 각자의 여정을 가는 중이다. 이 원리는 2002년 보고서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사역 특히 목양적 돌봄은 각자에게 맞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미리 판단하는 것은 편견이다. 사람을 만나서 그의 말을 듣기 전에 그에 대하여 목양적 전제를 세우는 것은 형편없는 목회적 돌봄일 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근거한 임직자 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다(주님의 날 43).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도 들어보지 않고 판단하지”²⁹ 말라고 상기시킨다.

2002년에 동성애에 대한 CRC의 보고서가 마지막으로 나온 이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지난 10년 동안 동성 관계에 관한 문화적 대화와 기독교 공동체 내의 대화가 진전되어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동성지향적 크리스천은 이 자료들을 탐구하는데 상당한 정력과 노력을 투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성별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하여 활발하게 분별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동성지향적인 개인들과 사역한 경험이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CRC 내에 있는 동성지향인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다. 본 위원회의 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 상당수(326명)가 비이성애자 혹은 불확실한 정체성을 가졌다고 밝혔다. 어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인이 가능해져서 이전 세대가 누리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더 큰 범위의 기독교회 내에서 헌신적 동성관계가 기독교인의 신앙여정에 포함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현상을 수반한다.

본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읽어본 한 CRC 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그녀가 주목한 내용을 보자.

[본 보고서가]..... 깊은 슬픔을 자아내는 이유는 1973년 보고서와 2002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도 LGBT 사람들을 대화의 방관자로 치부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보고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삶의 주인공들은 여기서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한다. LGBT 사람들에게 대하여 또 목사들과 교회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무척 많은데, 이 대화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는 없다. 보고서는 일관되게 LGBT 사람들을 “그 사람들”로 취급하는 간격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들이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다.

이러한 “타자화”와 “간격”에 대한 느낌은 본 보고서에서 동성혼인의 성(sex)에 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오지만 사랑에 관한 말은 아주 희박하다는 점에서 나에게 매우 명백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성애자들도 자신의 이성적 혼인에 관하여 말하려고 할까? 본 위원회가 동성혼인에 동의하든 안 하든, CRC의 동성지향적 교인들에게 좀더 존엄성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게 보인다.

²⁹ Agenda for Synod 2002, p. 317.

본 위원회는 총회의 지시를 다루면서 이런 안타까운 결과에 대해서 즉 인지하고 있었지만, 1973년 보고서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할 때 이런 결말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CRC 내에 있는 동성지향적 개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반복해서 들려온 주제는 동성지향적 크리스천들이 교회와 그 지도자들의 선입관에 민감하다는 것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성애에 관해서 또 동성혼인과 같은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식되고 실제적인, 교회의 바람에 대해서 그들이 민감하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한 동성지향적 응답자들은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또 성소수자 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한다고 가장 열렬하게 주장하는 인구층이었다.

5. 기관목사

CRC 사역자들 10명 중에서 대략 1명이 기관목사다. 기관목사는 비교회적 상황에서, 즉 군대, 병원, 호스피스, 유치장과 감옥, 상담실, 대학, 및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복음 사역을 대표한다. 기관목사들이 섬기는 제도적 환경은 그들에게 “교회 회중”과 비슷한 면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기관목사를 자기들의 목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 특히 종교적 소속이 없거나 신앙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기관목사는 그들의 인생에서 유일한 목사이자 세례, 혼인, 장례와 같은 중요한 인생사가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일 것이다. 안수받은 사역자들로서 기관목사는 신앙과 삶에 있어서 교회 카운실의 감독을 받는다.

군목은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연방정부와 교회의 감독을 받으면서 양쪽에 다 보고해야 하는 군목들은 연방정부의 반차별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 법은 성적 지향성과 성정체성(gender identity)을 보호받는 범주에 포함시킨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 기관목사를 승인하는 신앙단체가 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기관목사는 동성간 결혼식을 주례해달라는 부탁을 받아도 거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하지만, 승인하는 신앙단체가 동성혼인을 허용하면, 그 기관목사는 동성간 결혼식을 부탁하는 군인 커플의 결혼식을 자신의 양심에 배치되더라도 주례해야만 한다.

CRC는 종교적 동성혼인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군목들은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데서 배제될 것이다. 반면에 비군목 기관목사들은 지역 CRC 카운실과 직장의 정책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목양적 딜레마에 처할 것이다. 직장의 고용인이 기관목사에게 자신의 동성결혼식을 수행해야 달라고 부탁한다면, 그 기관목사는 직장의 직속 상관과 상의하고 또 그 기관목사의 사역의 자격증을 관리하는 교회의 카운실과 상의하는 게 중요하다.

기관목사의 반응이 종업원의 영적 돌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러한 부탁은 그 기관목사에게 목양적 도전을 제공할 수 있다. 그 기관목사는 그 종업원을 긍정하고, 그 관계의 그리스도적인 특성을 지지하면서, 그 결혼식 주례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기관목사는 이 부탁을 들어줘도 사역자격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다른 성직자에게 그 종업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그러한 대화의 목적은 돌보며 지지하는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성혼인 영역에 있어서 그 목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CRC는 기관목사의 사역이 CRC 카운실과 더불어 정부나 다른 고용주의 감독을 받는 데서 발생하는 잠재된 갈등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만약 고용의 조건상 동성간 예식을 주례하는 게 요구된다면, 그 기관목사의 유일한 선택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다면 말이다). 아니면 그 기관목사는 자신의 반대의견을 감추고 (판사나 치안판사가 하듯) 공인의 자격으로 주례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감독하는 교회 카운실이 그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교회헌법 69 조 내에서 약간의 재량을 부여할 것을 소망한다.

6. 1973 년 입장을 은혜와 진리로 전달하기

총회가 본 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현재 문화적 상황에서 동성적 지향과 행위에 관한 교단의 입장이 은혜롭게 또한 신실하게 소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당한 도전이다. 현재의 문화적 풍토에서는 동성 관계에 대한 주의와 주저의 목소리마저 완고하고 편협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기 때문이다. 교회의 증거를 침묵시키면 안 된다. 필요하면 조절된 어조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더 지혜로운 모습이다. 우리는 1973 년 총회보고서를 대변할 수 있다고 보는 세 가지 상황을 고려한다.

a. 개인들에게, 특히 동성지향적인 개인들에게

많은 목사들은 (동성지향적 혹은 이성지향적) 개인이나 커플이 CRC 입장에 대하여 문의하는 상황을 경험했거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대화는 처리하기 힘들 수도 있다. 한 사역자가 쓴 글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 교인 한 사람은 자기 딸과 딸의 17 세 이상인 배우자를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그들에게 교단의 공식 입장을 말하면 우리가 의도하든 하지 않았든 그들에 대한 판단이 내포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러니는 본 교회의 지도자로 섬기는 많은 교인들보다 그들의 관계가 더 안정되고, 사랑 넘치고, 돌봄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 여론조사 응답자)

은혜롭고 진실한 소통은 소통의 상황과 내용에 다 관련된다. 상황에 관하여 우리는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전통적으로 믿어온 혼인관에 헌신하는 동성지향적 크리스천들이 구할 수 있는 모든 최신 자료들을 섭렵하라.³⁰

-기도와 연구를 위해 모이자고 제안하라. 토론과 탐구의 목적으로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폭넓게 읽기로 함께 동의하라. -이 개인 혹은 커플이 비슷한 여정을 공유하는 다른 이들과 -온라인이나 맞대면해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모색하라.

³⁰ 부록 B 참조.

- 이 개인 혹은 커플에게 영적 실천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목사, 또는 교회나 더 큰 기독교 공동체의 누구든) 영적인 지도자나 멘토와 연결되도록 권면하라.

내용 면에선 다음 사항을 존중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1973 년 총회 보고서를 섭렵하는 것 이상으로 파악하라. 그 사상의 개혁주의 윤곽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적으로 보는 비전에 고정되어 있다는 점도 이해하라.

- 성경 본문을 적절하게 활용하라. 창조와 혼인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강조해야 한다.

- 금기에 관한 히브리어를 강조하지 않도록 피하라. 때때로 그것은 “가증한 것”이나 “혐오스러운 것”으로 번역된다. 이 용어들은 광범위한 구약신학의 맥락에서 또 구약의 다양한 율법 전체에 대한 개혁주의 해석과 일치되게 이해되어야 한다. 너무 자주 이 용어들은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보고서의 의도와 모순되게 또 영적·감정적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수치심과 자기혐오를 자극하는데 이용되었다.

- 지엽적으로만 적용되는 본문의 오용을 피하라. 1973 년 보고서는 자주 인용되는 본문 몇 개를 석의하면서, 각 본문의 맥락은 헌신적인 동성관계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본문이 성폭력, 우상숭배, 권력불균형, 탐욕 등의 상황에 관한 것이라면, 그런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 주셨다” 또는 “.....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등과 같은 구문들을 모든 동성지향인들에게 둔감하게 적용하면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인과관계는 복잡한 문제다. 성경 본문을 단순화시켜 적용한 것을 근거로 그런 문제들에 관하여 선포하면 안 된다.

- 그들이 자기 확신과 신념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임무를 존중하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도록 권면하고 역동적인 영적 삶을 양육하는데 집중하라.

- 이 사람을 성령님께 의탁하고, 수치심이나 공포를 이용하여 독신주의를 수용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 말라.

b. 교회 상황에서

많은 교회가 성적 지향이나 동성혼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싫어하고 침묵하게 되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총회가 1973 년과 2002 년에 실제로 추천했던 바에 대하여 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항상 명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 당시 조언과 현재 상황 사이의 간격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지도 않다. 1973 년 보고서는 동성지향과 동성간 성행위를 구분했다. 그에 따르면 동성지향은 혼란해진 창조의 증상이며 그 자체 저절로 죄가 아니지만, 동성간 성행위는 죄다.

여론 조사에서 우리는 투표에 참여한 CRC 사역자의 80 퍼센트, 투표에 참여한 CRC 학생 75 퍼센트, 그리고 조사에 응한 교인 표본의 응답자 57 퍼센트가 개인적으로 동성지향성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1973 년에 총회가 권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하지만 응답자들 중 상당한 소수가 단지 동성에게 이끌리기만 해도 죄라고 주장한다.

교단의 입장과 대조적으로, CRC 사역자의 14 퍼센트—700 명의 응답자 중 100 명—이 “동성 교인에게 이끌리는 것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죄다” 라고 주장한다. 교인 표본의 응답자 31 퍼센트와 CRC 학생의 17 퍼센트는 마찬가지로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믿는다.

게다가, 투표에 응한 사역자의 9 퍼센트는 게이 크리스천들이 “게이라는 사실을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인 표본의 12 퍼센트와 CRC 학생의 8 퍼센트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신념은 총회의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가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1973 년 보고서의 가르침을 교회 환경에서 전달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제안한다:

- 교인 전부가 이성애자라고 단정하지 말라. 동성지향적인 교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전혀 없더라도 말이다. 항상 동성지향인들과 그들의 연인들이 참석한 것처럼 말하라. 가족들이 게이 자녀들을 거부하지 않고 동성지향인들이 자기 개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정직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
- 존중감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기준을 따르게 하라.
- 지도자들이 논조를 정하되 다른 사람들이 극단적인 결론에 치달지 않고 관대하게 대화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 동성지향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동성지향성은 선택도 죄악도 아니라는 실재를 인정하라.
- 겸손하라: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종종 게이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기여했고 그들의 기본권을 배제하려고 했던 사실을 시인하라.
- 복음은 만인을 순결로 부른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
- 공동체적으로 독신 교인들을 일상적인 가정사, 예배, 사역, 및 리더십에 받아들이는 의도적인 단계를 취하라. 이것은 의도적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과 독신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 교회가 모든 유형의 독신들을 좀 더 후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평생독신주의가 동성지향인들에게 좀 더 실행 가능한 소명이 될 것이다.
- 지역 LGBT 공동체를 섬기라. 지역의 반차별 운동을 숭선하여 후원하라. 청소년 홀리스 피난처나 자살위기 대처 긴급상담에 자원 봉사하라. 무엇보다 경청하라. 이렇게 숭선수범하는 봉사는 LGBT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데 설교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c. 공공 영역에서

CRC 외부의 개인이나 단체와 대화할 때 CRC 의 입장을 정확하고 사려있게 대변하려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이 입장의 “내용”과 “동기” 양자를 다 설명하는 것과 연관된다. 리차드 마우는 자신의 저서 *무례한 기독교* (원제: *Uncommon Decency*)에서 이것에 주목한다:

성경적 관점의 전체 핵심은 친절하고 정중한 성별(sexuality)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와 성적인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적 관점을 친절하고 공손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메시지가 손상될 것이다.

성적인 예의범절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삶으로 실천하는 중요한 방식이다.³¹

동성지향인들에 대한 기대감이 실현가능한가에 대해 회의가 들 수 있다. 자기 인생을 이 입장과 연대하면서 그 연대의 실천에 관련된 도전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동성지향적인 크리스천들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CRC의 입장을 가능하면 가장 은혜롭고 진실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교단 사무소가, 미디어 대표를 통하여, 성명서와 해설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우리는 경청모임에서 특정 용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진실하지도 은혜롭지도 못하다. 이 용어들은 대부분의 경우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이 사용했던 것이다. 피해야 할 두 용어는 다음과 같다.

- 게이 생활방식—이 용어는 때때로 한 개인이 모든 동성관계를 반대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 “나는 게이 생활방식에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게이 바, 문란한 행동, 은밀한 모임, 그리고 게이 사회화란 악명높은 반문화를 환기시킨다—그리고 나면 이 전형적인 선입견을 모든 동성지향적 관계들에 적용한다. “게이 생활방식”과 같은 것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성애적 생활방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단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을 뿐이다. “게이 생활방식”에 대한 반대를 환기시키면 동성지향인들이 매우 불쾌해 한다.

- 동성애자/게이 비망록(*agenda*)—이 용어는 문제가 많으며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망록*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사회 내부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다른 단체보다 부당하게 진전시키려는 통합된 음모를 에둘러 말하는 부정적인 연상이 떠오른다. 대부분의 사회 변화는 복잡한 기원을 가지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교묘한 암시나 음모의 언어를 피해야 한다. 대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정의, 공평 및 번영의 언어를 반영하는 용어를 써야 한다.

7. 1973년 보고서와 2002년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CRC 교단

2013년 총회는 본 위원회에 지시 사항을 확정할 때 1973년의 동성애 관련 보고서가 4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겼다”고 평가했다. 그렇게 평가함으로써 총회는 본 위원회의 작업 범위를 1973년도의 성경적·신학적 결론을 적용하는 데 국한시켰다. 우리의 임무는 1973년 보고서의 성경적 기초나 그 신학적·윤리적 결론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총회의 지시를 존중하여 작업했다. 하지만 교회의 주의가 요구되는 1973년 보고서의 몇 가지 측면들에 대해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일 것이다. 이제는 그 측면들이 지속적으로 교회를 섬겨온 1973년 보고서의 역량을 손상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본 위원회의 토의에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본 위원회의 연구조사에서 또한 클래식스와 특수 사역자들과 가진 경청모임에서 규칙적으로 들려온 의견이다.

³¹ Richard J. Mouw,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Downers Grove, Ill.: IVP Press, rev. 2010), p. 94. 리처드 마우 저, 홍병룡 역. *무례한 기독교-확대개정판,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 (IVP, 2014).

a. 언어와 용어

40 년의 기간 동안 언어가 변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1973 년 보고서는 그 일부 언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위한 자료로 추천하기가 난처하다. 특히 목사들과 청년 대상 사역자들 사이에서 1973 년 보고서에 대한 정보나 목양적 돌봄이나 소개를 받으려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1973 년 보고서를 추천하기를 꺼리는 모습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세 가지 간단한 사례로 충분히 설명될 것이다. 첫째, 특별히 1973 년 보고서에는 동성애주의(homosexuality)란 용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성애주의란 사회나 교회에서 한 번도 통용된 적이 없었던 단어이다. 1973 년 보고서는 그것을 두드러지게 사용함으로써 혼동과 오해를 낳는다. -주의(-ism)의 용례는 일종의 확인가능한 운동이나 문화적 세력을 암시한다. 그 단어 자체가, 이미 본 대화에서 부적절하고 유해하다고 합당하게 밝힌 바 있는, 동성애자 비망록 혹은 게이 생활방식과 같은 용어들을 반향하고 있다. 동성애주의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이 논의에서 CRC 의 입장을 잘 대변하지 못한다.

둘째, 두 보고서는 동성애 문제나 동성애자 문제 등과 같은 문구를 40 회 이상 사용했다. 자신의 성적 정체성과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갖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문제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들이 그 명칭을 내면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 밖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문제아”가 되는 것이다.

셋째, 동성지향적인 개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해서 받아들여질 만한 용어들이 바뀌었다. 게이와 동성애자(homosexual) 같은 용어들은 오늘날 다른 함축성을 전달한다. 아니면 그 함축성에 대한 사유방식이 40 년 전과 달라졌다. CRC 는 이 언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 2013 년총회에서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가 “교회를 잘 섬겼다”고 평가한 것처럼 양 보고서를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려면 개정해야 한다.

b. 전환/회복 요법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노력)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는 모두 동성간 이끌림에 대처하는 첫 전략이 지향성을 바꾸는 시도라고 제안한다. 1973 년에는 개인의 성적 이끌림을 바꾸는 요법이나 전략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2002 년에는 동성간 이끌림의 원인이 다양하다는 것과 지향성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불확실한 리서치 프로토콜, 성공적인 “지향성 변화”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명증성 결여, 그리고 특정 형태의 요법은 내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영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어려워졌다는 점이 파악되었다.

2002 년 이후 소위 전환 요법(conversion therapy)이 리서치와 경험에 힘입어 의미심장하게 변화했다. 2013 년에 북미주의 탈게이 사역의 가장 현저한 포괄조직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Exodus International)에서 전환 노력의 무효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그 사역을 종료시켰다. 그 지도자들은 회복 조치들이 야기한 피해에 관하여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 이후 회복 혹은 전환 요법의 잠재적 피해가 부각되어 미성년자에게 시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미국 내 4 개 관할구역에서 미성년자 전환 요법을 불법화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오레곤, 컬럼비아 특별구역). 캐나다에선 마니토바와 온타리오가 미성년자 전환 요법을 금지시켰다.

우리는 논의의 이런 측면이 본 위원회가 지시 받은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교회는 동성적 지향을 가진 이들에게 책임 있고 실재적인 목양적 조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2002 년 보고서는 전환 요법의 효과에 관한 경고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때 이후로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이 암시하는 바는 이 경고내용을 널리 알리고 성적 지향을 전환하려는 요법이나 치료를, 특히 미성년자에게, 추천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수의 개인들이 지향성 전환이 자기 경험에 맞다고 여기지만, 많은 경우 그 변화는 개인의 성적 지향의 방향이 바뀌었다기 보다는 문란함에서 정숙함으로 혹은 동성간 관계에서 혼합지향적 혼인으로 바뀐 경우가 많았다.³² 물론 양성애(bisexuality)의 실재가 이런 증언들의 일부를 해명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의 개정본은 전환 요법의 최신 입장도 첨부할 필요가 있다.

VII. 건의안

- A. 총회가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제시 위원회의 다수자 보고서를 고려할 때 위원장 롤프 부마 목사(Rev. Dr. Rolf Bouma)와 보고자 줄리아 스미스 양(Ms. Julia Smith)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건의한다.
- B. 총회가 민법상 동성혼인에 관한 정보용으로 본 첨부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교회·목사·교회지도자·교인들이 그 배경이해를 위해 본 보고서를 숙고하도록 추천하고,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토론을 장려할 것을 건의한다.
- C. 총회가 본 보고서의 제 VI 항목에 담긴, 교회와 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목양지침을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한다.
- D. 총회가 본 보고서가 본 위원회가 받은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을 제시하는 요구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
- E. 총회가 본 위원회를 해산하도록 건의한다.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제시 위원회
 댄 볼스트 (Dan Borst)
 롤프 부마 (Rolf T. Bouma) 위원장
 제시카 드리센가 (Jessica Driesenga)*
 웬디 밴더왈 그리터 (Wendy VanderWal-Gritter)
 잔 로트만 (John M. Rottman)*
 줄리아 스미스 (Julia Smith, 보고자)
 라이언 스트루익 (Ryan Struyk)
 칼 밴 한 (Karl J. Van Harn)
 데이빗 브로지 (David A. Vroege)

* 본 위원회의 두 위원은 다수자 보고서의 일부 항목들에 관한 소수자 보고서를 제출했다.

³² 혼합지향적 혼인이라 남녀 커플의 한쪽 또는 양쪽이 동성에게 이끌리는 경험을 하는 혼인을 묘사하는 말이다.

부록 A

조사 결과 요약

A. 근거

본 위원회가 받은 요구가 설명하듯이, 동성관계에 대한 여론은 교회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다. 동성혼인이 야기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유용한 지침과 명쾌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는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의뢰하여 교단 내 회중들의 현재 상황을 측정했다.

이 조사를 수행한 우리의 의도는 교단 내의 여론을 좌지우지하거나 미래 토론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목양적 위원회로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현존하는 범위의 질문, 염려, 및 경험들을 수집하려고 했다. 강력한 확신, 공포, 고통 등을 다룬 한 주제에 대해선 온라인 여론조사의 익명성을 통하여 사람들이 반박을 받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자기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 요약이 본 여론조사 데이터를 총망라할 수 없지만 현재 교단의 자기이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개관하게 해 준다.

본 보고서에서 주목했듯이, 이 여론조사는 본 위원회가 교회들과 소통한 유일한 통로가 아니었다. 또한 본 위원회는 동성혼인의 주제를 둘러싼 더 심도있는 경청을 위해 클래스시와 다른 단체들과 경청모임(listening session)도 수 차례 가졌다.

B. 방법

본 여론조사는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칼빈 대학 사회 조사 센터(Calvin College Center for Social Research, CSR)가 수행한 것이다. 전체 여론조사 도구는 본 위원회에 요청하거나 온라인으로 www.calvin.edu/go/ssm-survey-preview 구할 수 있다. 아래에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초대 한 집단에 대해 설명하였다.³³

1. 사역자들 (n = 700). CSR은 북미주개혁신교단(CRC)에 속한 총 1,276 명의 안수받은 현직 사역자 전원에게 고유한 설문지를 링크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700 명의 사역자들이(55%) 여론조사에 반응했다.

2. CRC 학생들 (n = 587). 본 위원회는 교단의 젊은 교인들(대학생 연령층)의 희망과 염려에 대하여 또한 사역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이는 이들로부터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다. 이 목적에 부합되게 CSR은 CRC 관련 대학과 신학교에 다니거나 CRC 교인이나 CRC 교회 출석자라고 밝힌 총 1,931 명의 학생들에게 고유한 설문지를 링크한 전자우편을 보냈다. 학생들의 응답률은 30% 였다(학생 587 명).

3. 교인 표본 (n = 363). 모든 CRC 교회의 교인들을 조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CSR은 교인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 표본을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Eighty randomly selected 무작위로 추출한 CRC 회중들 80 곳이 연구에 참여해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80 교회 중 23 교회가 참여하기로 동의했다. 각 참여 회중은 교적부에서 무작위로 선택한 40 명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를 제공했다. 그리하여 총 920 명의 교인에게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는 초청을 했다. 이 그룹에서 363 명의 개인이 (39%) 조사를 마쳤다.

³³ 모든 진술의 통계적 의미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시험되었다. 하지만 우리 데이터의 대부분이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 인구기반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 시험은 대체적으로 무의미하다.

4. 대중 표본 (n = 2,547).

위에 나온 표본들 이외에도 교단에 가입된 2,547 명이 배너지(The Banner)와 CRC 웹사이트를 통하여 연결된 링크를 통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했다. 이 대중 표본의 응답은 교단을 대변하지 않고 이 보고서에서 드물게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 그룹의 높은 참여율과 제출한 설명의 길이는 주제의 중요도와 많은 이들이 가진 자기 생각과 염려를 나눌 여지가 있다는 욕구를 나타내준다. 총 226 명의 조사 응답자들이 이성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혔고— 이 중 179 명은 대중 표본에서 나온 숫자이며, 16 명은 CRC 사역자였다. 추가로 100 명의 응답자들은, 21 명의 사역자를 포함하여, 성적 정체성 질문에 대해 “기타” 혹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했다. 모든 조사 참가자들은 18 세 이상이었으며, 모두 현재 혹은 이전에 CRC 교회의 정기적인 출석자였다. 본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에 참여하여 자신의 소중한 의견을 제공한 모든 이들과 이 프로젝트에 전문적 협조를 제공한 사회조사 센터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C. 제약

본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볍게 또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독자에게 경고한다. 목사 표본과 학생 표본은 무작위 표본이라기 보다는 편의상 조합된 표본이며, 교인 표본은 무작위 절차로 선택되긴 했지만 모든 CRC 교인/출석자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 이 후자 그룹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과잉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인”이란 단어 대신 “본 조사의 교인 표본에 속한 응답자들”이란 문구를 사용한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는 이 데이터가 본 교단의 동성애와 동성혼인에 대한 현재(2014 년 봄) 태도를 폭넓게 조망하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제시한다.

D. 결과

주의: 아래 사용된 용어들—LGB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동성지향적, 게이, 레즈비언, 등—의 용도는 여론조사의 관련 질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따른다.

1. 논의의 시기적절성

동성애와 동성혼인에 대한 토론이 지금 교단에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동의가 있었다:

- 사역자 표본의 80%가 동의했다.
- 학생 표본의 90%가 동의했다.
- 본 조사의 교인 표본의 76%가 동의했다.

젊은 사역자들이 더 많이 동의했다: 45 세 미만의 85%가 이 논의가 현재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비하여, 45 세 이상은 77%가 동의했다.

이 조사에 참가한 이들 중 비이성애자라고 밝힌 교인표본과 학생표본의 응답자들은 100 퍼센트 본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이성애자 CRC 목회자 응답자 중에선 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다.

일반 표본에서는 비이성애자로 밝힌 응답자 179 명 중 압도적인 173 명이 본 논의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2. 동성지향적 사람들 알기

2.1 당신은 가족이나 친구 중에 게이, 레즈비언, 혹은 양성애자인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는가?

그렇다:

- CRC 사역자의 83%는 한 명의 LGB 친구나 식구를 가지고 있다. 더 세분화하면,
 - 남성 사역자의 82%, 여성 사역자의 97%.
 - 35 세 미만인 사역자의 89%, 35 세 이상인 사역자의 82%.
 - 백인 사역자의 86%.
 - 아시안/태평양 사역자의 41% (다른 인종들은 74 to 100%의 범위 안에 있다).
- CRC 학생 응답자의 71%는 한 명의 LGB 친구나 식구를 가지고 있다.
- 이 조사에 응한 교인 표본의 69%는 한 명의 LGB 친구나 식구를 가지고 있다,
 - 표본의 56%는 3 년 미만의 대학학위 소지자.
 - 표본의 76%는 3 년제 대학 및 그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대중 표본의 응답자의 84%는 한 명의 LGB 친구나 식구를 가지고 있다.

2.2. 당신의 회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성인 교인들에게 끌린다고 (당신이란 일반에게든) 밝혔는가?

- 사역자들의 49%가 커밍아웃한 교인을 최소한 한 명 알고 있다.
 - 캐나다 사역자 58%는 커밍아웃한 교인을 최소한 한 명 알고 있다.
 - 미국 사역자 46%는 커밍아웃한 교인을 최소한 한 명 알고 있다.
- 사역자들의 16%는 커밍아웃한 교인을 3 명 이상 알고 있다.
- CRC 학생 표본의 27%는 커밍아웃한 교인을 최소한 한 명 알고 있다.
- 조사에 응한 교인 표본의 24%는 커밍아웃한 교인을 최소한 한 명 알고 있다.
- 대중 표본의 41%는 커밍아웃한 교인을 최소한 한 명 알고 있다.

이 교인 관련 통계 결과 가족이나 친구에 관련된 통계 숫자를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교회 안에 LGB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 사이 더 적게 존재하든지 아니면 LGB 사람들이 교회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을 덜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동성간 결혼식

조사 당시 대부분의 응답자는 동성간 결혼식이나 헌신예식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 2014 년 3 월 26 일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캐나다와 미국의 15 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역에서 동성혼인은 불법이었다. 2014 년 6 월 30 일에 조사가 마감되었을 때, 추가로 미국의 다섯 개 주가 동성혼인법을 통과시켰다. 그 중 두 개 주는 아직 상고 중에 있었다.³⁴

³⁴ 참조 <http://graphics.latimes.com/usmap-gay-marriage-chronology/>.

3.1 당신은 동성간의 헌신예식이나 결혼식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

- 사역자 표본의 12%는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캐나다와 미국이 동일하게 나왔다. (5%가 참석했다).
- 학생 표본의 3%는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2%가 참석했다).
-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의 9%는 초대받은 적이 있었다 (7%가 참석했다).
 - 본 조사의 교인 표본 중 캐나다 거주자의 20% (15%가 참석했다).
 - 본 조사의 교인 표본 중 미국 거주자의 5% (3%가 참석했다).

3.2 당신은 동성간의 헌신예식 혹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면 참석하겠는가?

- 사역자: 15% 그렇다; 39% 그런 경우가 있다; 12% 잘 모르겠다; 33% 아니다.
- 학생: 34% 그렇다; 26% 그런 경우가 있다; 17% 잘 모르겠다; 24% 아니다.
 - 캐나다 학생 73%는 상황을 봐서 참석할 것이다; 6%는 불참할 것이다.
 - 미국 학생 58%는 상황을 봐서 참석할 것이다; 25%는 불참할 것이다.
- 본 조사의 교인 표본: 18% 그렇다; 27% 그런 경우가 있다; 15% 잘 모르겠다; 40% 아니다.
- 본 조사의 교인표본에서 캐나다인과 (캐나다와 미국 양국의 교인 표본 중) 대학 학위 소지자들은 동성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대답한 이가 더 많았다.

3.3 교인/교회출석자들은 동성간 예식이나 결혼식에 자유롭게 참여해야 하는가?

- 사역자: 46% 그렇다; 36%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3% 아니다.
- 학생: 59% 그렇다; 19%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1% 아니다.
-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47% 그렇다; 24%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7% 아니다.

3.4 목사들은 동성간 예식이나 결혼식에 자유롭게 참여해야 하는가?

- 사역자: 41% 그렇다; 32%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1% 아니다.
- 학생: 53% 그렇다; 19%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16% 아니다.
-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40% 그렇다; 22%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27% 아니다.

3.5 시민 사회에서 동성혼인

CRC 사역자들은 시민 사회가 동성혼인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었다 (본 여론조사는 2015년 6월에 있었던 미국 대법원의 오버게펠 대 핫지스(Obergefell v. Hodges) 소송 판결 이전에 시행되었다):

- 사역자의 45%는 시민 사회가 동성혼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40%는 크리스천이 그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사들 중에선, 여성보다 남성 쪽이, 캐나다인보다 미국인이, 그리고 아시아인 사역자들 사이에서 민법상 동성혼인에 대한 반대가 훨씬 더 강했다.
- CRC 학생의 52%는 시민 사회가 동성혼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33%는 크리스천이 그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중 39%는 시민 사회가 동성혼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49%는 크리스천이 그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3.6 동성혼인(즉 종교적 동성혼인)은 교회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사역자: 14%
- 학생: 31%
-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21%

이 세 집단의 응답자 중 12~15%는 세가지 선택사항 중³⁵ 어느 것도 자신들의 입장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종교적인 동성혼인에 관하여 분명한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는 점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

4. 참여와 교육

목회자 중에서 85%는 성경을 연구하여 동성적 성별(same-sex sexuality)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려고 했다. 75%는 책자나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동성애에 관하여 배운 적이 있다. 목회자 중에서 38%는 성소수자에 관한 클래스나 워크숍이나 다른 활동에 참석한 적이 있다. CRC 학생들 중에서 72%는 성경을 연구하여 동성간의 성적 관심에 대한 의문을 풀어보려고 했으며, 조사에 참여한 교인 표본의 61%가 동일한 노력을 한 적이 있다.

목회자들 중에선 교단의 입장에 관한 1973 년 보고서(85%)와 LGB 를 위한 목양적 돌봄에 관한 2002 년 보고서(71%)를 읽은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아시아계/태평양계 목회자의 백분율은 28%로 낮아진다. 캐나다 목사들과 45 세 이하인 이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서 성소수자에 관한 워크숍이나 행사에 더 많이 참석했다. 여성 목회자들은 남성 목회자들보다 더 클래스나 행사에 참석을 했고, 2002 년 보고서를 읽었으며, 다른 책자를 공부했고, 이 주제에 관하여 성경을 연구했다.

이 조사에서 교인들 중 16% 만이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를 다 읽어보았다. CRC 학생들 중 11%가 1973 년 보고서를, 16% 가 2002 년 보고서를 읽어보았다. 하지만 더 많은 학생들과 교인들이 다른 주제를 다룬 보고서들보다 동성애에 관한 CRC 보고서를 더 많이 읽었다.

5.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들을 위한 교회 풍토

5.1 교회가 동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환대하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애쓰는가?

목사의 78%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게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다고 말했지만, 단지 12%만이 자기 교회가 동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환대하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로 35%는 자기 교회가 나름대로 이 일을 한다고 대답했다. 44%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교인들 중에선 6%만이 자기 교회가 동성에 이끌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배하도록 환대하는 장소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19%는 “나름대로” 한다고 말했다; 32%는 “모르겠다”; 42%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5.2 당신은 교인 중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들으면 불쾌할 것이라 믿어지는 말을 교인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가?

³⁵ 그 세 가지 선택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동성혼인은 시민사회에선 허용해야 하지만 교회에선 안 된다; (2) 크리스천들은 시민사회에서 동성혼인에 반대해야 한다; (3) 동성혼인은 시민 사회와 교회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사역자: 61%가 불쾌한 말을 들었다.
- 학생: 52%가 불쾌한 말을 들었다.
- 본 여론조사에 참여한 교인 표본: 40%가 불쾌한 말을 들었다.
- 전체 조사에 참여한 비이성애적 응답자들 중 75%는 교인들에게서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5.3 회중은 게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인가?

안전에 관한 질문들은 교회의 문화와 권력 역학이 소수자 그룹 멤버들의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암시를 담고 있다. 본 조사는 아래 정의된 대로 안전의 세 측면들에 관해 질문했다:

- 영적으로 안전하다: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로서 자기의 영적 질문을 탐구하면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두려움 없이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
- 지적으로 안전하다: 사람들은 일정 범위의 주제들에 관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조사에서 다룬 세 주요 인구층은 동성지향인들보다 이성지향적인 사람들이—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성적으로—훨씬 더 안전하다고 인식했다.

사역자:

- 50%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32%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31%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지성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10에서 12%는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 미국 사역자들이 캐나다 사역자들보다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영적 안전과 정서적 안전 면에서 각각 8 퍼센트와 12 퍼센트씩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CRC 학생:

- 70%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28%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25%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지성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17~20%는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 45%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30%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27%는 자기 교회가 게이 사람들에게 지성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말했다.
- 14~17%는 이 세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이 결과와 대조적으로, 세 표본 집단의 응답자 중 71~89%는 자기 교회가 이성애적 사람들에게 영적·정서적·지성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응답들:

모든 그룹은 분명히 자기 교회가 동성지향적인 개인들을 위한 안전이 부족하다고 파악했다. 하지만, “나에게 개인적으로”란 답변 항목에 대해 이성애자로 밝힌 이들과 비이성애자로 밝힌 이들을 비교해보면 좀 더 미묘한 그림이 나타난다. 본 여론조사에서 세 표본 집단 1,650 명 중 42 명의 응답자(2.5%)가 자신이 레즈비언, 게이, 쿼어, 혹은 동성에게 이끌린다고 밝혔다(LGBQ/SSA).³⁶ 여론조사의 세 표본 집단 중에서 자신이 LGBQ/SSA 라고 밝힌 응답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5.4 우리 교회는 나에게 안전한 곳이다 (사역자, 학생, 교인 표본 종합)

	이성애자 (n = 1,500)	LGBQ/SSA (n = 42)
나에게 영적으로 안전하다	88%	67%
나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73%	54%
나에게 지성적으로 안전하다	70%	57%

공개적 링크를 통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한 비이성애자로 밝힌 이들 중 퍼센트는 모든 집계에서 낮게 나온다: 50% (나에게 영적으로 안전하다), 36% (나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그리고 41% (나에게 지성적으로 안전하다). 전체 여론조사에서 LGBQ/SSA 로 정체성을 밝힌 응답자 전원의 답변을 종합하면 (대중 표본을 포함하여) 교회의 안전도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

모든 LGBQ/SSA 조사 응답자들 (n = 226)	동의	반대
나에게 영적으로 안전하다	54%	30%
나에게 정서적으로 안전하다	40%	40%
나에게 지성적으로 안전하다	45%	36%

이 반응들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성 소수자 응답자의 30 퍼센트는 자신의 CRC 교회가 자신의 영적 질문을 탐구하고 신앙 안에서 크리스천 신자로 자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40%는 교회 환경에서 자기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36%는 CRC 교회 안에서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낀다.

앞에서 보고한 대로 반(反)게이주장의 높은 빈도는 이런 비수용적인 상황에 기여했을 것이다. LGB 청소년이 우울증, 자해, 안식처상실(homelessness) 및 자살 등의 위험이 높다는 것은 잘 증명된 바다.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체적 혹은 언어적 괴롭힘(harassment)이나 학대를 받을 때마다 자해행동을 할 가능성이 평균 2.5 배 증대된다고 한다.³⁷

5.5 당신은 동성지향적인 개인이나 그 식구들에게 목양적 돌봄을 제공한 적이 있는가?

- 사역자 81%는 최소한 한 번 있었다.
- 사역자 70%는 최소한 두 번 있었다..
- 사역자 21%는 최소한 열 번 있었다.
- 사역자 18%는 한 번도 없었다.

³⁶ “쿼어”란 말은 LGBTQ 공동체의 많은 이들에 의해서 긍정적인 포괄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학생, 사역자, 교인 표본에서 다른 38 명의 응답자는 성적 지향 질문에 대해서 “기타”나 “확실하지 않다”를 선택했다.

³⁷ IMPACT (2010), mental health disorders, psychological distress, and suicidality in a diverse sample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0(12), 2426-32. www.thetrevorproject.org/pages/facts-about-suicide 에서 인용함.

6. CRC 의 입장

6.1. 동성애에 관한 CRC 의 신학적 윤리적 입장은 무엇인가?

응답자들은, 옳고 그른, 선택의 범위에서 적용할 만한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역자들 (1973 년 보고서가 추천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 퍼센트):

- 89%는 CRC 가 동성지향성은 죄가 아니라고 보지만 동성간의 성행위는 죄로 본다고 말했다.
- 83%는 CRC 가 동성애를 타락의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 63%는 CRC 가 LGB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1973 년 보고서가 추천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 퍼센트):

- 57%는 CRC 가 동성지향성은 죄가 아니라고 보지만 동성간의 성행위는 죄로 본다고 말했다.
- 56%는 CRC 가 동성애를 타락의 결과로 본다고 말했다.
- 32%는 CRC 가 LGB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응답자의 27% 이상이 CRC 는 동성적 지향과 실천을 죄라고 말한다고 부정확하게 말했다; 사역자의 6%와 학생의 17%도 이 답안을 선택했다.

학생들 (1973 년 보고서가 추천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한 퍼센트):

- 74%가 지향성과 행동 사이를 구분하고 있었고, 동성애를 타락의 결과로 간주했다.
- 50%는 CRC 가 LGB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6.2. CRC 입장에 동의하기

대략 사역자의 3 분의 2 (65%), CRC 학생의 44%, 그리고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응답자의 41%는 게이 크리스천은 평생 독신주의에 소명을 받았다는 개인적인 주장을 펼친다.

CRC 사역자의 80 퍼센트, CRC 학생의 75%, 그리고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응답자의 57%는 동성간 이끌림은 죄가 아니라는 개인적인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응답자의 상당한 소수자는 단지 동성에게 이끌리기만 해도 죄라고 주장한다. 1973 년에 명문화된 교단의 입장과 대조되게, CRC 사역자의 14%—즉 700 명의 응답자 중 100 명—이 “동성인 교인에게 이끌리는 것은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더라도 죄다” 하고 주장한다. 조사에 참여한 교인표본 응답자의 31 퍼센트와 CRC 학생의 17%는 동성간의 이끌림 자체가 죄라고 말했다.

게다가, 사역자의 9%는 게이 크리스천들은 “게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 고 말했다.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의 12%와 CRC 학생의 8%도 같은 입장이다. 이러한 신념은 1973 년 총회보고서와 2002 년 총회보고서가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6.3. 지향성 변화

지향성 변화는 일부 사역자들과 교인 응답자들의 의견에서 그럴듯한 선택사항으로 남아 있다. 사역자의 10 명 2 명(21%)가 게이 크리스천들은 “이성애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16%는 회복 요법을 추천했다. 응답자들은 이 선택항목에서 동의하는 모든 선택사항들을 체크하도록 요청받았다:

게이 크리스천은 해야 한다 (다 표시하시오)	사역자	본 조사의	
		교인 표본	CRC
이성애자가 되도록 기도	21%	23%	14%
자신의 지향성을 바꾸는 요법을 시도	16%	20%	11%

6.4. 게이 크리스천들을 위한 다른 인생과 관계 선택들

여론조사에서 게이 크리스천을 위해 열거한 삶과 관계에 대한 다른 선택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들은 이 선택항목에서 동의하는 모든 선택사항들에 표시하도록 요청을 받았다:

게이 크리스천은 해야 한다 (다 표시하시오)	사역자	본 조사의	
		교인 표본	CRC
동성인 사람과 영원한 비성적인 관계를 추구	17%	8%	11%
가능하면 이성 배우자와 결혼	13%	8%	11%
그들이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봤다면 타락을 용인하고 일부일처 동성관계로 사는 것을 허용	20%	8%	9%
혼인/헌신된 동반(배우)자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자유롭게	24%	32%	41%
하나님이 주신 성적 정체성을 축하	16%	17%	34%

여론 조사에 참여한 사역자의 14%는 동성간 이끌림이 그 자체로 죄라고 주장했지만, 거의 4분의 1(24%)은 게이 크리스천이 동성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양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 응답자의 32%와 CRC 학생 표본의 41%가 이에 동의한다.

CRC 학생과 교인 표본 중 LGB 응답자들은 아무도 LGB 사람들이, 기도나 회복 요법으로, 지향성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 표본들과 사역자 표본에서 43 명의 LGB 응답자들은 아무도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이 죄라거나 LGB 사람들이 “게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모든 표본들 중에서 226 명의 LGB 응답자 중 6 명만이 동성에게 이끌리는 것 자체가 한번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더라도 죄라고 주장했다.

모든 표본들 중에서 캐나다인보다 미국인 응답자가 LGB 사람들이 금욕하고, 게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을 회개하고, 회복 요법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더 많았다. 또한 캐나다인보다 미국인이 동성간 이끌림은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어도 죄라고 말했다.

사역자 중에서 아시아인들은 백인 목사들보다 더 LGB 사람들이 이성애자가 되도록 기도하거나, 게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을 회개하거나, 이성 배우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반면 백인 사역자들은 크리스천들이 평생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

아시아인 사역자의 대다수(53%)는 동성간 이끌림은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어도 죄라고 믿는다. 백인 사역자 중에선 13%만이 그렇게 믿는다.

45 세 이하의 젊은 응답자들의 기도(12%)와 회복요법(10%)을 통한 지향성 변화에 대한 지지는 45 세 이상의 응답자들보다(각각 24%와 21%) 더 낮다. 또한 그들은 LGB 사람들이 게이가 되기로 선택한다고 믿지 경향이 더 낮다(각각 7%와 14%).

7. 다른 주목할만한 결과들

사역자의 36 퍼센트와 모든 LGBQ/SSA 응답자의 51%는 CRC 가 1973 년 보고서와 2002 년 보고서를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또는 동성에게 이끌린다고 밝힌 16 명의 사역자 중 9 명이 교단이 동성관계를 더 환영해야 하지만 축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19 명의 성소수자 학생 중 4 명만이 그렇게 말했다. 16 명의 성소수자 사역자 중 4 명, 19 명의 성소수자 학생 중 12 명, 그리고 대중 링크를 통하여 조사에 참여한 성소수자의 86%는 CRC 가 성소수자 개인들을 포용해야 하며 그들의 관계적 헌신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8. 의견들에 표현된 공통된 주제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문장으로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

- 당신은 동성애나 동성혼인에 관하여(예를 들면, 교회, 가정, 직장, 또는 학교 상황에서) 어떤 실질적인 딜레마에 부딪힌 적이 있는가?
- 당신의 교회에서 동성에게 이끌리는 사람들과 동성혼인에 관하여 가장 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 당신이 동성혼인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 당신이 동성혼인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본 위원회는 이 질문들에 대해 받은 풍부한 의견들은 사람들의 언어로 표현된 굉장히 다양한 상황, 바램, 두려움 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 응답에 담긴 모든 것을 어떤 요약하든 정당하게 다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사역자, 여론조사의 교인표본, 및 대중 표본에 속한 LGB 정체성 응답자 100 명이 보낸 의견들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16 가지로 분류했다. 이 요약 내용은 압도적인 의견으로 확인된 주제들만 보고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독자들은 언급된 주제가 확일적으로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

8.1. 실질적 딜레마

의외로, 동성애나 동성혼인에 관하여 사역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실질적 딜레마는 목양적 관심이었다. 사역자들이 쓴 의견의 19 퍼센트는 사역에 초점이 있었고, 교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해하고,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다. 사역자들의 의견에서 다음으로 가장 흔한 (11%) 주제는 교회생활이었다: 즉 교회 회원권, 성찬식 참여, 세례, 리더십에 대한 질문과 교회 치리 문제였다. 사역자 의견의 10 퍼센트는 교회의 신학적 입장을 바꾸지 않고도 사람들을 환영하려고 하는 바램이었다.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본문 답안의 10 퍼센트 혹은 그 이상을 넘은 주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중 링크를 통하여 여론조사에 참여한 게이, 레즈비언, 및 양성애자들이 작성한 100 개의 의견들에서 현재까지 가장 공통적으로 언급된 실질적 딜레마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이 집단에 속한 응답자들이 보낸 의견의 22 퍼센트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를 떠나는 문제에 관하여 말하거나 CRC의 입장이 세계 속의 선교를 해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다.

8.2. 회중들을 위한 가장 다급한 질문들

소속 교회의 가장 다급한 질문들에 관하여 물었을 때, 사역자의 15%는 어떻게 LGB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동성 관계는 지지하지 않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목양적 문제가 그 다음으로 가장 빈번한 주제였다—답변의 13%가 언급했다. 또한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의 10 퍼센트도 이 질문에 대하여 동일한 주제를 되풀이했다. 대중 표본의 LGB 참가자들에게 가장 압도적인 주제는 (의견의 9%에서 발견됨) 교인 회원권, 성찬 참여, 세례, 리더십 등과 같은 교회 생활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

8.3. 동성혼인에 관한 가장 큰 두려움

사역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공포는 분열이었다. 사역자의 의견의 12 퍼센트는—세대별로든, 회중 내의 분리/불화든 CRC 전체의 문제든—불화, 분열, 분리, 분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역자에게 그 다음으로 가장 빈번한 주제는 (8%) 법률적 우려에 관한 것으로서, 동성혼인에 대한 반응 때문에 법정소송, 고소, 직장이나 안수상태를 상실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의 응답자가 쓴 의견의 8%는 동성혼인의 수용이 사회적인 도덕적·윤리적 하락을 부추길까 두려워하는 바를 표현했다.

대중 표본에 속한 LGB 응답자들 중 11%는 교회가 동성혼인에 대한 그 입장 때문에 교인들을 잃을 까 두렵다고 표현했다. 이 집단의 두 번째로 가장 빈번한 응답은 이 주제가 세상에서 교회의 증거를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6%).

8.4. 동성혼인에 관한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소망이란 범주에서, 사역자의 9%와 본 여론조사의 교인 표본의 9%는 성소수자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과 동성관계를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다. LGB 응답자 그룹의 37%도 이 주제를 되풀이했다. 이 질문에 대한 의견들 중에서 6% 이상에 이른 다른 주제들만 언급한다면, 다음과 같다: 사역자들에게 “환영하면서 긍정하지 않는” 주제였고, LGB 응답자들에게 동성혼인의 추가적인 합법화와 법 아래 동등한 보호권에 대한 소망에 관한 법적 관심이었다.

9. 결론

본 연구조사는 동성혼인에 관하여 교단의 의견을 듣는 귀한 도구가 되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교단 전체나 교단의 부분집합을 대변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한 시점에서(2014년 봄) 다양한 견해와 질문들에 대한 유익하고 풍부한 기술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세가지 핵심 발견 결과를 강조하는 바다:

첫째, 많은 숫자의 사역자, 교인, 및 CRC 학생들은 동성지향적인 식구와 친구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중 일부는 스스로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러한 연관성은 개인, 지도자, 및 교회에게 동성지향인들의—특히 동료 신자들이거나 어떤 식으로든 교회에 연결된 이들의—다양한 여정, 표현, 및 간절한 필요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회를 표현한다.

둘째, 다뤄야 할 근본적인 영역은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 서로에게 또한 서로에 관해서 말하는 방식이다. 불쾌한 언어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 대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개인들의 감정·영적 행복이 우리에게 잘 경청하고 자애롭게 말하도록 자극하고, 또 동성지향인들이 자신의 관계적 선택을 성경적 가르침에 비추어 숙고할 수 있게 해주는 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셋째, 어쩌면 분명히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런 문제들에 관한 교단으로서의 다양성의 범위이다. 신학적·정치적 연속체의 한 끝에서, 반응자의 상당한 소수자 가 (사역자를 포함하여) 동성간 이끌림이 죄라고 여기며 심지어 지향성 변화를 지지하기 까지 한다. 연속체의 반대 끝에서 우리는 동성지향적인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관계에 관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자유를—이성애적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동일한 자유를—누려야 한다고 믿는 상당한 소수자를 발견한다. 교단으로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을 헤쳐나가는 것은 많은 기도, 지속적인 성경 묵상, 그리스도의 몸의 일치에 대한 강력한 헌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열매와 지혜의 풍성한 분량을 필요로 할 것이다.

부록 B

자료

본 위원회는 교회가 동성혼인에 관련된 질문을 다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서, 논문, 및 기타 자료의 목록을 제공한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들을 선택했다. 어떤 특정 자료도 이 목록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 표현된 관점이나 견해를 승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바이다.

종교적 자유와 동성혼인에 관련된 법적 질문들은 앞으로 수년 동안 북미 대륙에서 계속해서 활약할 것이다. 캐나다 교회들이 십 년 동안 민법상 동성혼인의 실재에 적응한 반면, 미국 상황에서 현재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의 대부분은 필연적으로 예측과 사변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법학자들이 미국 대법원의 2015 년 6 월의 판결에 더 충분히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교회들을 위한 유용한 자료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혼인의 역사

Abbott, Elizabeth. *A History of Marriage*. New York: Seven Stories Press, 2011.

Anderson, Ryan T., et al. "The Church and Civil Marriage: Eight Scholars and Writers Discuss Whether Religious Institutions Should Get Out of the Marriage Business." *First Things*, 242, April 2014:33-40.

Cott, Nancy F. *Public Vows: A History of Marriage and the N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0.

민법상 동성혼인과 종교적 자유

캐나다 민법상 혼인법(Canadian Civil Marriage Act, S.C. 2005, c.33). 법무부 발행 사이트 <http://laws-lois.justice.gc.ca>.

미국 대법원의 동성혼인에 대한 판결: 오버게펠 대 핫지스(Obergefell v. Hodges), www.supremecourt.gov/opinions/14pdf/14-556_3204.pdf.

미시간 주 드보어 대 스나이더(DeBoer v. Snyder) 소송 사건의 버나드 프리드만 판사(Judge Bernard Friedman)의 판결문, www.freedomtomarry.org/page/-/files/pdfs/MichiganRuling.pdf (concerning outcomes for children of same-sex couples 동성 커플의 자녀에 대한 결과).

Inazu, John. "What to Expect After the Supreme Court's Marriage Decision." Christianity Today Online, April 28, 2015. www.christianitytoday.com/ct/2015/april-web-only/what-to-expect-after-supreme-courts-comingmarriage-decisio.html.

How the Supreme Court's decision for gay marriage could affect religious institutions. June 26, 2015. www.pewresearch.org/fact-tank/2015/06/26/how-a-supreme-court-decision-for-gay-marriage-would-affect-religiousinstitutions/.

Laycock, Douglas, Anthony Picarello, and Robin Wilson, eds. *Same-Sex Marriage and Religious Liberty: Emerging Conflicts*.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08.

신념적 다원주의

Smidt, Corwin. Chapter 3, "The Principled Pluralist Perspective" in *Church, State, and Public Justice: Five Views*. Ed. P. C. Kemeny. Downers Grove, Ill.: IVP Academic, 2007.

Chaplain, Jonathan. "The Bible, the State, and Religious Diversity: Theological Foundations for 'Principled Pluralism'" <http://www.klice.co.uk/uploads/EST08JC.pdf> (2015 년 4 월 접속).

Monsma, Stephen. *Pluralism and Freedom: Faith-Based Organizations in a Democratic Society*.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2012.

대화

Mouw, Richard J. *Uncommon Decency: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rev. 2010.

Kraus, C. Norman, ed. *To Continue the Dialogue: Biblical Interpretation and Homosexuality*. Telford, Pa.: Pandora Press, 2001. (메노나이트 진영, 주제의 모든 측면을 다루며, 대화의 모델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wartley, Willard M. *Homosexuality: Biblical Interpretation and Moral Discernment*. Telford Pa.: Herald Press, 2003. (메노나이트 진영, 주제의 모든 측면과 회중적 분별의 한 모델을 다루고 있다.)

Respectful Conversation on Christian Faithfulness and Human Sexuality (2015 년 7 월부터 2016 년 2 월까지 동성 성(same-sex sexuality)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모범적인 기독교적 대화). www.respectfulconversation.net/cfahs.

The Colossian Forum (신앙, 문화, 과학, 성적 관심의 공통부분에서 난해한 쟁점들에 관한 기독교적 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화를 주최하고, 자료를 제작한다). www.colossianforum.org.

Oriented to Love Dialogues, Evangelicals for Social Action (크리스천들이 LGBT 에 관하여 심도있게 경청하고 대화할 수 있는 3 일간의 수양회). www.evangelicalsforsocialaction.org/oriented-to-love/oriented-to-love-event.

Bridging the Gap (소그룹을 위한 DVD 시리즈). www.newdirection.ca/shop/bridging-the-gap-conversations-on-befriending-our-gayneighbours.

동성적 성별 (Same-Sex Sexuality)

본 위원회의 보고서는 동성적 성별에 집중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본 위원회는 2002 년 총회 보고서 이후 동성간 관계에 관한 새로운 자료들과 학자들이 유입된 현상을 주시했다. 이 자료의 일부는 CRC 교단의 1973 년 보고서를 재확인해 줄 것이다. 다른 이들은 1973 년 보고서에 대한 대안적 결론들을 제공할 것이다. 본 위원회는 신앙과 성별에 관한 대화에 나오는 현재 의견들을 대변하는 사례로서 이 목록을 제공한다. 연구와 분별의 목적을 위해 또한 건설적 대화를 진작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Brownson, James V. Bible, *Gender, Sexuality: Reframing the Church's Debate on Same-Sex Relationship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13. (1973 년 보고서의 결론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적 결론을 제공한다.)

Champagne Butterfield, Rosaria. *The 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An English Professor's Journey into Christian Faith*. Pittsburgh, Pa.: Crown and Covenant Publications, 2012.

Champagne Butterfield, Rosaria. *Openness Unhindered: Further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on Sexual Identity and Union with Christ*. Pittsburgh, Pa.: Crown and Covenant Publications, 2015.

Citlau, Ron, and Adam T. Barr. *Compassion Without Compromise: How the Gospel Frees Us to Love Our Gay Friends Without Losing the Truth*. Bloomington, Minn.: Bethany House, 2014.

DeYoung, Kevin. *What Does the Bible Really Teach About Homosexuality?* Wheaton, Ill.: Crossway, 2015. (1973 년 보고서를 재확인하는 현재의 논증을 제시함.)

Fishburn, Janet F., ed. *People of a Compassionate God: Creating Welcoming Congregations*. Nashville, Tenn.: Abingdon Press, 2003.

Gagnon, Robert. *The Bible and Homosexual Practice: Texts and Hermeneutics*. Nashville, Tenn.: Abingdon Press, 2002.

Hill, Wesley. *Washed and Waiting: On Christian Faithfulness and Homosexuality*. Grand Rapids, Mich.: Zondervan, 2010. (힐은 독신생활을 살기로 헌신한 게이 크리스천으로서 글을 쓴다.)

Hill, Wesley. *Spiritual Friendship: Finding Love in the Church as a Celibate Gay Christian*. Grand Rapids, Mich.: Brazos, 2015. (힐은 독신에 헌신한 게이 크리스천들을 위해 영적 우정의 개념을 탐구한다.)

Lee, Justin. Torn: Rescuing the Gospel from the Gay vs. Christians Debate. New York: Jericho Books, 2013. (리는 게이 크리스천으로서 저술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더 풍성한 대화를 추구한다. 리는 한 장(章)에서 자신이 동성애 관계를 지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Otto, Tim. *Oriented to Faith: Transforming the Conflict over Gay Relationships*. Eugene, Ore.: Cascade Books, 2014. (독신주의에 헌신한 게이 크리스천인 오토는 동성혼인 논쟁에서 양 “측”의 여러 측면들을 비판한다.)

Stacy Johnson, William. *A Time to Embrace: Same-Gender Relationships in Religion, Law, and Politics*. Grand Rapids, Mich.: Eerdmans, 2006. (스테이스 잔슨은 목사, 신학자, 법률가로서 저술하고 있으며, 이 책은 동성혼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논한다.)

Tushnet, Eve. *Gay and Catholic: Accepting My Sexuality, Finding Community, Living My Faith*. Notre Dame, Ind.: Ave Maria Press, 2014. (터쉬넷은 독신주의에 헌신된 레즈비언 크리스천으로서 소명과 봉사의 개념을 탐구한다.)

VanderWal-Gritter, Wendy. *Generous Spaciousness: Responding to Gay Christians in the Church*. Grand Rapids, Mich.: Brazos Press, 2014. (밴더왈-그리터는 사역에 중요한 주제들의 범위를 토론하고 교회가 동성혼인에 관하여 다양성 속의 일치성을 포용하도록 초청한다.)

Vines, Matthew. *God and the Gay Christian: The Biblical Case in Support of Same-Sex Relationships*. New York: Convergent Books, 2014. (게이 크리스천인 바인스는 동성혼인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현재 논증들을 요약한다.)

Wilson, Ken. *A Letter to My Congregation*. Canton, Mich.: David Crumm Media, 2014. (윌슨은 자기 교인들과 동성혼인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려고 애썼던 여정을 나눈다. 그는 “제 3의 길” 접근법을 제안한다.)

블로그와 웹사이트

게이 크리스천 네트워크(The Gay Christian Network www.gaychristian.net)은 여러 신학적 견해들을 아우르는 동성지향적인 크리스천들을 지지한다. 사이드 비(Side B)는 성적 금욕에 헌신된 이들을 기술하는 용어다. 이들의 온라인 공동체는 특히 사이드 비 견해를 견지하는 이들을 위한 포럼을 운영한다 (2015년 4월 접속). 뉴 디렉션 미니스트리스(New Direction Ministries www.newdirection.ca)는 교회에 컨설팅과 자료를 제공하며, LGBTQ+ 크리스천들에게 연결과 공동체를 제공한다 (2015년 4월 접속).

어 퀴어 콜링(A Queer Calling <http://aqueercalling.com>)은 성적 금욕에 헌신한 자칭 퀴어 크리스천 커플을 위한 여정을 다루고 있다 (2015년 4월 접속). 영적 우정(Spiritual Friendship <http://spiritualfriendship.org>)은 금욕주의에 헌신한 몇몇 게이 크리스천의 저술과 전통적인 혼인관을 견지하는 이들의 저술을 다룬다 (2015년 4월 접속).

교회 시설 사용/목회자 주례 방침

여러 크리스천 법률 기관들이 교회와 목회자가 혼인과 동성애 및 기타에 관한 신념들에 관한 종교적 자유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안내해 주기 위하여 자료를 출판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들은 보수적 복음주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퍼시픽 법률 연구소(Pacific Legal Institute www.pacificjustice.org): “도움 청하기(Get Help)” 메뉴 아래에 정관이나 모범 혼인 정책 자료가 있다. 기독교 법률 협회(Christian Legal Society www.clsnet.org):

교회 지침 웨비나(Guidance Webinar) 자료

우리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열거한다. 우리는 유보조향을 붙여서 그렇게 한다. 이 자료를 서둘러 읽더라도 CRC 정책과 신학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들과 조언들이 드러날 것이다.

교회들과 지도자들은 이 웹사이트에 표현된 경고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한 교회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리적 위치에 부합하는 법적인 자문을 대체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특히 광범위하게 다양한 연방, 주, 및 지방 법령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문제와 특수한 쟁점들에 대해선 식견있는 비영리 법적 자문을 추구하라고 강력히 추천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북미주개척교단은 정관의 수용에 관한 자문을 교회에 제공하는 자료와 법인 교회 시설에 관한 모범 문서(**Model Church Facilities**)를 발송했다. 본 위원회는 이런 자료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발송된 자료가 유익하긴 하지만 우리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 불확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한다. 또한 우리는 그 자료들에 대해 몇 가지 유보사항을 둔다. 우리가 포함시킨 유보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미디어에서 교회에 대한 경고와 법률적 도전들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건물 사용이나 예식 주례에 관하여 법정 소송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소송은 불확실한 결과를 위한 값비싼 계획이다.

2. 몇 가지 단순한 조치를 취하면 교회와 지도자들은 대부분의 법률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 a. 교회의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최신형으로 갱신하라. 모범 정관을 템플릿으로 사용하기 원한다면, 총회 서비스 사무실(**Synodical Services Office**)에서 구할 수 있다. 정관은 혼인이나 동성에 대한 교회 방침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모범 정관이 그러듯이) 권위의 기초를 CRC 교단에 둔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 b. 교회 카운실에서 결혼식과 다른 행사를 위한 시설의 사용과 대여조건을 규정하는 시설사용 방침(**Facilities Use policy**)을 채택하라. 카운실은 가용성의 수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접근은 건전한 상태의 교인이나 교단 사람에게만 사용을 제한하되, 결혼식과 그 관련 활동이 CRC의 가르침과 이해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려면, 결혼식과 관련 활동이 CRC 교단의 기독교적 가르침과 이해에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이 시설 사용 방침은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게 해야 한다.
 - c. 시설사용방침은 눈에 띄도록 건물 사용이나 결혼식에 관해 인쇄물이나 웹사이트에 공고해야 한다. CRC의 혼인에 관한 진술들을 인용하거나 링크시켜야 한다.
 - d. 교회 목회자(들)과 카운실은 CRC의 혼인관에 부합되는 결혼식 주례를 위한 방침을 개발해야 한다. 이 방침에는 결혼식을 교인이나 CRC의 혼인관에 일치하는 기독교적 결혼식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

그것은 목사가 그 재량에 따라서 주례부탁을 거절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e. 목사가 결혼식을 주례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문이나 웹사이트에 포함시킨다면, 그 방침을 그 이 자료에 실어야 한다.

총회 사무실이 발송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우리는 조만간 다뤄야 할 관심사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사용된 용어들 중 일부는 혼동을 자아낼 수 있다. “최종 권위(Final Authority)를 가진 직분”은 이상한 언어다. CRC에는 상이한 쟁점들에 관한 최종 권위가 서로 다른 단체들에게 있다. 예를 들어, 재산 관리는 지역 카운실에 있고, 콘시스토리는 교회 문제에 관한 고유한 권위를 가지며, 클래시스와 총회는 위임된 권위를 가진다. 그 조언에 이것을 명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위원회가 주목한 좀 더 중요한 문제는 2015년 8월에 주어진 조언이 교회들에게 crcna.org 웹사이트에 올려진 교단 성명서들과 거기 인용된 총회 결정사항들을 인용하도록 장려한 점이다. 하지만 인용을 하려면 웹사이트 진술을 인용할 것이 아니라 총회의 결정사항 자체를 인용해야 한다. 웹사이트의 진술은 총회 결정의 요약본이며, 그 법적인 적절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채 쓰여졌다. 그것들은 총회 보고서와 달리 CRC 정책에서 입지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한 쪽이나 양쪽이 과거에 결혼이나 이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교회가 결혼식을 허용하는 것에 관해 혼인에 대한 요약문이 일관성의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

부록 C

교회와 국가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015년 총회에서 가진 본위원회의 경청모임에서 대의원들(delegates)은 혼인에 대해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는 네 가지 선택사항을 고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네 가지 선택사항들은 기독교회 내에서 발견된 견해들의 연속체를 제시한다. 논의된 선택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혼인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제도다. 국가는 혼인의 종교적 성격을 인정하고 종교적 권위가 이해하는 대로 혼인을 인가하면 된다.
2. 남자와 여자의 언약적 결합인 혼인은 종교적으로 또한 창조질서에 대한 적절한 인식에 의해서 기초하고 있다. 비록 국가가 종교적으로 중립을 취하려고 시도하지만 자연 자체가 가르치는 바를 무시하고 민법상 동성혼인을 허가할 때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3. 국가(시민 정부)와 교회는 가족 구조와 행복에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관심이 일치하진 않는다. 국가와 교회는 혼인을 재량껏 (한계 안에서) 정의하여 각자 합법적인 관심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관심사는 동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 국가와 교회는 혼인을 다르게 정의하게 될 것이다.

4. 교회는 시민적 권위에게 할 일을 지시하지 않는다.

교회는 단순히 성경이 강권한다고 여기는 대로 혼인을 정의하고 그 내적 생명을 성경과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정돈한다. 국가가 하는 일은 국가의 업무다.

선택사항 1은 대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견해에 상응한다. 이 견해는 교회의 사회질서론을 국가가 법제화된다. 로마 가톨릭의 혼인관은 성경과 자연법의 상호일치에서 분별된다. 책임있는 국가는 자연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번영을 인정하고 합법화한다.

선택사항 4는 재세례파적 접근법으로 표현된다. 여기선 기독교 공동체가 국가의 강제력 혹은 전통적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이라고 지칭한 것을 불편해 한다. 기독교 공동체는 국가에게 기독교적 도덕 규범을 집행하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의 누룩이 되어야 하지만, 고유한 삶의 양식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선택사항 2와 3은 개혁주의 틀에 들어 맞는다. 선택사항 2는 혼인이 남녀 사이의 성별화된 생물학적인 보완관계라는 전(全)사회적 인식을 논증하기 위해 개혁주의의 창조개념을 두드린다. 사회는 다원주의적이고 시민정부는 이 실재를 인정해야 하지만, 창조 자체를 정돈하는 데 있어서 다원주의의 한계점들은 명백하다. 반면에 선택사항 3은 혼인의 종교적 목적과 시민적 목적 사이의 구분이 더 커지는 것을 허용하며 영역 주권과 결부된 다원주의가 혼인을 교회의 혼인관과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국가의 재량을 인정한다고 제안한다. 2015년 총회 총대들의 대다수는 선택사항 2나 3이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이들에게 이것이 학구적(요점이 없는?) 연습으로 보였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선택사항 3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재로 만드는 법률적 입장을 채택했다. 하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 논의가 중요했다. 크리스천들은 동성혼인에 관하여 정부와 사회를 도전할 의무가 있는가? 교회는 국가에게 그 민법상 혼인에 대한 오류에 대하여 예언적으로 말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많은 크리스천들은 정부가 선한 사회질서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그 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의 일부로 동성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지지해도 좋은가?

보고서의 본론에서 우리는 현재 상황의 실재를 다뤘다. 국가는 CRC와 상당히 다른 혼인관을 채택했다. 캐나다에선 이것이 입법적으로—의회의 법령으로—이뤄졌다. 미국에선 주에서 전통적인 이성간 혼인을 (대개 변경하려면 과반수가 필요하고 입법부와 선거구 투표를 다 요구하는) 주 헌법에 안치함으로써 정치적 절차로부터 혼인을 보호하려고 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 법원이 혼인을 이성간 결합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동등한 보호와 마땅한 절차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분명히 미국에서 취해진 절차는 정치적으로 더 취약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사회나 그 대표들이 나쁜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경로를 변경하려는 개인이 나타날 수 있다. 동성혼인의 경우 적어도 한 방향에선 경로 변경이 어렵다.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것은 결혼하는 이성 커플들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별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다른 이들에게 동일한 권리와 의무의 혜택을 누리며 참여하게 허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로를 변경하는 것은 수많은 법률적 실천적 쟁점들을 제기한다. 개인이 법적으로 제정된 혼인들을 취소할 수 있을까? 이미 내려진 결정에서 물러나는 것이 얼마나 실행가능할까?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이미 주장했듯이, 미국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조차 정부가 입법적으로 동성혼인을 허용할 수 있다고 허가했다. 여섯 명의 판사들이 로마 가톨릭이었고 자연법 논증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동성혼인을 허용하는 것이 정부 권위의 경계를 벗어났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주요한 법적 논증은 헌법적인 혼인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런 변화를 주 차원의 입법작업의 절차로 보는 게 더 현명할 것인가였다. 총회로 하여금 본 위원회를 조직하게 만든 2013년 발의안들은 동성혼인이 채택된다면 입법적으로 혹은 헌법 해석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지에 관심이 없었다. 문제는 크리스천이 “시민 사회 안에서 동성혼인의 적법성에 반대할”³⁸ 의무가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제안하는 바는 논증의 두 흐름이 개혁주의적인 교회와 국가 이해와 어울린다는 점이다. 한 쪽은 크리스천이 동성혼인에 관하여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사회를 되돌려야 한다는 뜻을 암시할 것이다. 다른 쪽은 민법상 동성혼인을 우리의 동시대적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일어날 법한 특정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려깊게 인정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A. 혼인은 창조의 소여

논증의 첫 줄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의 권위이다. 존 칼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개혁주의 전통은 혼인을 성경의 가르침과 창조의 증거에 근거하여 세워졌다고 이해했다. 이것들은 분리된 권위들이 아니다; 오히려 혼인 관계에 관한 성경의 증거는 피조세계와 인간세계의 활동과 익숙한 사람들의 관찰과 성찰을 반영한다.

칼빈이 “자연법” 언어를 사용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 부분에서 그는 로마 가톨릭 신학을 이탈하지 않았다— 개혁주의를 계승한 신학자들은 창조질서 혹은 창조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특정한 구조와 제도를 세우셨고, 그것을 통하여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 혼인은 그런 제도다. 남녀 사이의 제도인 혼인은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사회적 근거를 가진다.

그 주장의 기초는 우선 성경이 아니라 창조 자체다. 크리스천은 사회에게 창조된 질서를 변경하지 말라고 상기시켜야 한다. 창조의 바탕에 심겨진 그 질서를 더럽히는 것은 사회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신적 지혜를 대적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가 창조 자체 안에 명백한 올바른 양식에서 이탈할 때 나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 접근법에선 크리스천들은 교의적 입장에서 사회에게 (즉 계시신앙의 입장에서 불신세계를 향해) 말하지 않는다. 크리스천들은 사회 안에 있는 인간의 공통된 경험에 호소하는 것이다.

³⁸ Overture 12, *Agenda for Synod 2013*, p. 419.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하여 조직된 세계와 만나는 공통 경험에 호소한다. 이러한 논증방식은 대개 1980 년 혼인, 이혼 및 재혼에 관한 총회보고서를 채우고 있다. 그것은 개혁주의 사상 안에서 오랜 취약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개혁주의 진영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은 계속해서 그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B. 민법상 혼인의 순응성

하지만 개혁주의 전통 내의 다른 이들은 창조질서 전통이 갖고 있는 확신과 구조적 특수성에 대해 불편해 한다. 오늘날 개혁주의 전통은 칼빈의 제네바 때나 혹은, 그 문제에 관한, 1800 년대 말 카이퍼리안 시기의 절정기와 다른 사회·정치·문화적 상황 안에 존재한다. 그 과정을 역사적 경험으로 점철되고 과실로 연단받는 기간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보다 덜 경직되게 하나님의 창조 구조를 이해한다, 비록 그것이 인간의 삶과 관계에 대해 심각하게 생물학적·사회적 특성을 취하긴 하지만 말이다.

창조질서신학은 20 세기에 형편없이 어색하다. 창조 구조의 윤리적 해석을 강조한 두 신학적 전통—루터교와 개혁교회—은 모두 무리수와 엄청난 사회정치적 오류에 휩쓸리는 고통을 겪었다. 루터교는 1930-40 년대의 나찌(민족사회주의)의 정책을 홍보하는데 이용당했고, 개혁주의 신학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apartheid*)을 정당화하는데 이용당했다. 양쪽 다 사회·정치적 프로그램을 창조 구조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교회를 불의와 압제에 깊이 연루시키는데 기여한 특정한 성경해석과 결탁했다.

이런 유산 때문에 창조질서에서 출발한 논증이 절름발이가 되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정 수준의 겸손을 권한다. 창조 영역은 단순히 질서의 특징만 있는 게 아니고 복잡성, 유동성, 실용성, 창조성도 있다. 인간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만이 아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성경이 최상의 위치에 있다.

하지만 정치적 영역에서 개혁주의의 혼인 논증은 성경에서 출발한 논증이 아니다. 그것은 창조에 대한 공유된 경험과 성찰에서 출발한 논증이다. 그것은 —사회학적·생물학적·정치적— 증거에서 나온 논증이다.

그저 그런 논증이 동성혼인에 관한 현 논쟁에서 시도된 것이다. 기독교 단체들은 이성애 커플들로 구성된 안정적인 가정에서 양육된 아이들이 불안정한 가정이나 동성애 커플들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사회학적 조사에 기금을 제공했다. 이 연구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미시간의 드보어 대 스나이더(*DeBoer v. Snyder*) 소송에서 자료로 제출되었다. 그것은 면밀한 조사도 교차검토도 거치지 못했고 노골적으로 배척당했다. 그것은 학계에서 불신을 당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제안한 결론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당시에 분석된 증거에 의해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유의 연구조사에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정직성이 위태로워진다. 또한 예정된 결론처럼 느껴지는 조사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있다. 가족 구조, 복지, 및 긍정적 성과에 관련된 조사작업을 하던 학자들이 있었다. 버지니아 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의 사회학자요 디렉터인 브래드 윌콕스(*Brad Wilcox*)가 지휘하는 국가 혼인 프로젝트(*National Marriage Project*)는 논란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 중의 하나였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동성혼인에 관련된 주장을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그래도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였다.

개혁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창조 구조 안에 스스로 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주장들을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크리스천이며, 시민 사회가 사회를 조직화하는데 더 많은 재량을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그들은 법적인 동성간 헌신 관계를 금지함으로써 유발되는 불공평과 사회적 폐해를 다뤄야 할 필요가 긴급한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C. 관찰의 결론

본 위원회는 이 두 흐름의 논증을, 목양적 지침 부분이 아니라, 전체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견해들 사이에서 (또한 개혁주의 전통의 다른 변형들과 비교하여) 풍부한 신학적 대화가 있을 수 있다. 두 견해는 모두 가까운 장래에 CRC 안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각 견해가 상대방을 동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부록 D

동성혼인에 관한 대화를 권장하기

지난 2 년에 걸쳐서 본 연구 위원회는 교회, 사역자, 및 교인들의 피드백을 받는데 상당한 정력을 쏟았다. 당연히, 2002 년도 보고서를 제출했던 위원회처럼, 우리의 경청을 통해 동성혼인에 관한 경험, 관점, 및 견해에 있어서 CRC 교회들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다양성은 교회에 함축적 의미를 전달한다. 북미주의 더 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동성혼인과 동성애에 관한 교회의 입장이 세대간 분열을 낳는다는 염려가 있다. 2007 년 바나 그룹은 16 세 - 29 세의 교인 80 퍼센트는 크리스천의 주요 서술어로 반동성애자를 골랐다고 밝혔다. 그들의 비교인 동료들에게는 이 숫자가 91%로 상승한다.³⁹ 성소수자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많은 십대 및 청년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다양한 경험, 관점, 및 확신의 실재는 교회의 미래—즉 성경적·신학적 진리에 대한 지속적 헌신, 교회의 일체를 유지하기, 복음을 차세대에게 적절하게 유지하기 등—에 관해 넓은 범위의 불안을 낳는다. 토론(dialogue)은 다른 형태의 소통과는 상당히 구별된다. 토론의 주목적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것이다. 토론에서는 다른 관점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다른 쪽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려고 서로 경청하는데 헌신한다. 동성혼인의 문제에 관하여 상이한 문제들과 해석들로 씨름하는 사람들은 타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왜 이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들을 기회가 있다. 대화를 이용하여 상대의 입장을 깎아내리는 논쟁을 발전시키는 대신 토론은 참여자들을 초청하여 잠정적으로 논증과 논쟁을 중단시키고 주의깊게 경청하게 만든다.

³⁹ 참조 Kinnaman and Lyons, *unChristian: What a New Generation Really Thinks about Christianity . . . and Why It Matters* (Grand Rapids, Mich.: Baker, 2012).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초청에 대해 경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 다른 관점들은 이미 고려되었고 재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성경과 1973 년 보고서는 분명하고 더 이상 탐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대화는 다른 사람의 확신을 뒤흔드는 시도이거나 상대주의에 대한 개방이거나 문화적 적응에 항복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심사는 들어야 하고 정직하게 다뤄야 한다. 사람들은 판단·평가 받지 않으면서 대화에 초청받는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본 위원회의 경청 과정으로부터 우리의 동성혼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복잡한 요인들을 탐구하는데 안전하고 관대한 장소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화 과정에 헌신하는 것은 더 큰 이해, 즉 성경 이해, 교단의 신학적 입장 이해, 지속되는 물리과학과 사회과학의 리서치 이해,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는 다른 교단들과 교회들의 여정 이해 등을 추구한다는 뜻이다.

대화의 필요는 2002 년 보고서를 제작한 위원회가 확증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인과 단체의 많은 발제와 논의로부터 또한 교회의 응답으로부터, 상당히 다양한 의견과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검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또한 우리는 동성적 이끌림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교회의 교제에 소속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2002 년 총회 안건, pp. 315-16)

A. 대화는 당신의 회중에게 적절했는가?

특정한 개인들의 집단이 대화의 기회를 원할 수도 있지만, 모든 회중이 이것을 공동체 활동의 기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당신의 회중이 건강한 수준의 대화 준비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다음 질문들을 고찰하라:

- 회중은 견해나 확신의 차이가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토론한 경험이 있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회중은 그 토론 중에 또 그 후에 하나됨을 느꼈는가?
- 회중은 아주 다른 인생을 체험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환영해 왔는가? 민족적 다양성이 있는가? 다른 기독교 전통을 가진 신자들을 어떻게 환영하는가? 예배 가운데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가? 리더십에 무슨 목소리가 표현되는가? 지역사회에서 출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 오늘날 회중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 회중이 의도적인 화해 과정을 밟은 적이 있는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은 회중에게 긍정적인 경험이었는가?

- 교회 안에서 사회 정의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가? 의도적인 가르침, 논의 혹은 프로젝트가 있었는가?
- 회중은 사람들이 심각한 개인적 노력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인가?
- 역사적으로, 그 회중은 동성적 성별(same-sex sexuality)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의도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과거에 미해결된 문제가 아직 있는가?
- 동성지향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체험이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준 적이 있었는가?
- 교인들은 CRC의 1973년 보고서와 2002년 보고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교인들이 이 보고서들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가—그렇다면 이 질문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

회중이 이 목록에 있는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는 질문이 많을수록, 그들이 동성혼인에 관한 건강한 대화에 참여할 준비도 더 잘 된 상태다.

대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효과의 잠재성을 제한하기 위한 소망으로 우리는 동성혼인에 관한 대화를 위한 지침이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도로 시작할 것을 고려하라. 표준적인, 주기도문처럼 잘 알려진 기도문이 기도 시간을 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함께 간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상적이다.
2. 모든 참가들이 그 관점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대화절차를 수립하라. 공평한 진행자가 대화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대화절차를 참가자들에게 알려주라.
3. 대화를 위협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직한 관점, 체험, 및 질문을 나누도록 장려하라. 참가자들은 궁극적 결론이나 형벌을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4. 공통의 기반과 공유된 가치를 확립하기 시작하라:
 - a. 모든 참석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내재된 존엄과 가치를 부여받았으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 b. 대화 참가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공통된 헌신을 나눈다.
 - c. 참가자들은 성경 권위에 대한 헌신과 성경 해석에 대해 주의깊게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나눈다.
 - d. 참가자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
 - e. 참가자들은 그러한 대화가 기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5. 대화 시간에 다뤄야 할 핵심 쟁점들을 밝히려고 시도하라.
 - a. 도덕적 문제와 공적인 정책을 구분하라.
 - b. 목양 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 c. 대화의 힘을 밝히라.
6. 교회는 동성지향인들을 포용하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라는 것을 긍정하라. 대부분의 회중 가운데는 이미 동성간 이끌림을 경험한 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아직 교회 안에서 이 실재를 밝히지 않았을 수 있다.

7. 모든 이들에게 그 경험이나 관점이나 대화의 숙련도나 스타일과 무관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요, 그들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그들이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확신시키라.
8. 표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
 - a. 부정적인 상투어나 경멸적인 언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 b. 신앙과 제자도 문제로 동성혼인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동성애혐오자(homophobic)로 범주화하거나 지칭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말한 사람이 아니라 말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도록 장려하라.
9. 모든 사람이 성별에 상관없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용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긍정하라.
10.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공통된 헌신을 지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롬을 체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기 위해 함께 일하라.
11.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힘들 때 또 상처받을 위험이 느껴졌을 때 서로에게 인내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것에 헌신하라.
12. 사람들이 이 대화들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잘못에 대해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여유를 허용하라. 그러면 은혜와 용서의 힘이 개인적 평안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13. 당신이 예리하게 또한 공정하게 불일치하는 입장을 표현하라. 억측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필요하면 해명을 요청하라. 야고보서 1:19의 충고에 유념하라: “각 사람은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 하고, 화내기도 더디 하라.”

B. 대화를 위해 가능한 질문들

다음 질문들은 유익한 대화를 불러일으킬만한 것들이다. 이 중 일부는 지난 2년에 걸쳐서 본 위원회가 경청모임에서 사용한 것들이다.

1. 당신의 관계 범위 안에 누구든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동성혼인을 했거나 고려하는 이가 있는가?
2. 당신이 동성결혼식에 참석하는 초청을 받았다면, 당신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3. 당신은 교회/교회지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목양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a. 자녀가 있는 동성 커플이 당신의 교회에 가입하여 자녀를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요청한다.
 - b. 목사가 자기 아들/딸의 동성혼인예식을 주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카운실의 허락을 요청한다.
4. 당신은 동성혼인에 관해 생각할 때 무슨 질문이 생기는가?
5. 성경이 동성혼인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제시 위원회(소수자 보고서)

본 위원회의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보고서는, 다수자 보고서의 I, B 항에서 주목한 것처럼, 방대한 경청과, 위원들간의 대화, 타인들과의 대화, 연구, 주의깊은 숙고 및 기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작업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또한 우리는 본 위원회가 응답으로 제시한 지침의 대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 우리가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들이나 우리가 다른 언어를 선택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본 위원회의 보고서의 많은 부분을 지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승인할 수 없는 세 항목이 있다. 이 세 항목들은—결혼식 주례와 결혼식에서 역할 맡기, 그리고 교회 생활과 회원권—명시적으로 언급해야만 하는 내용이 더 많다고 본다.

I. 동성혼인 논의의 신학적 틀

동성혼인논의는 성경이 혼인에 대해서 가르치는 넓은 틀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 본질과 목적과 의무. 최근 CRC는 *혼인 지침(Marriage Guidelines)*에 대한 1980년 선언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다수자 보고서 III, A 항에서 서술된 대로).¹ 결혼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이 포괄적인 연구는, 이혼과 동거에 관한 사회적 기준이 변화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에도 정당한 혼인 논의의 윤곽을 정했다. 우리의 동성혼인 논의에서, 교회는 단지 동성혼인 문제에 “안 돼”라는 말만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성경이 동성간 성관계를 배제한다는 것을 교회가 가르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관계를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특히 결혼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폭넓고 긍정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성경적 혼인개념과 신념적 다원주의를 다루면서 시작한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언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RC의 1980년 혼인성명서는 혼인의 목적과 의미 문제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해답을 강조한다. 첫째, 역사적 기독교 전통과 일치하여 1980년 성명서는 혼인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근본적인 창조적 구조라고 지지한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선언하시고 여자를 그 사람에게 맞는 도우미로 창조하셨다 (창 2:18).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자와 여자는 서로 혼인 가운데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처럼 혼인은 인간의 발명품도 아니며 맘대로 변경·포기할 수 있는 실험적인 사회관계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일처 구조이며 남편과 아내의 신실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²

둘째로, 1980년 성명서는 혼인의 목적을 재천명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유익과 부요를 위한 것이다. 비록 남자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창조되었지만, 창세기 2장에 의하면 남자는 동료 인간과 친교하고 후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도 그것을 확증하신다. 그래서 여자가 창조되었고 혼인이 제정되었으며, 남자와 여자는 공동체 안에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이 남편과 아내의 공동체는 자녀 출산을 통해서 확장될 것이다.

¹ 1980년도 총회 결의안을 보라. 참조 *Acts of Synod 1980*, pp. 467-85.

² *Acts of Synod 1980*, pp. 468-69.

이처럼 혼인과 가족은 창조 때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창 1:28).³

마지막으로, 1980 년 성명서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부여하신 혼인의 목적에 대한 신약성경의 재천명, 조명, 및 번영을 강조한다:

바울은 창조 때 제정된 혼인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며(엡 5:31) 신비를 담고 있다고 (엡 5:32) 선언한다. 이 신비는 이제 그리스도와 그 교회, 즉 신랑과 신부의 연합 안에서 드러났다 (엡. 5:23-32). 그러므로 혼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영적인 일치를 성찰할 때만 온전히 이해되고 그 가장 심오한 의미를 달성한다.⁴

1980 년 성명서에서,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근본적인 창조적 구조로 이해되었지만 분명히 혼인은 개인에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왕국의 마지막 도래를 기다리는 크리스천에게 성경은 혼인이 크리스천의 필수적인 의무가 아니며 개인적 완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도 아니라고 가르킨다. 제자도와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참여하는 것이다. 혼인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혼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소명으로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독신주의는 제자도의 한 형태다). 또는 우리는 혼인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소명으로 받을 수도 있다(혼인도 제자도의 한 형태다). 크리스천 독신은 모든 인류가 효과적 봉사과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교제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한다.⁵

다수자 보고서의 III, A 항에서 주목했듯이, 혼인은 종말의 구조가 아니라 창조의 구조이다. 혼인은 창조 때 제정되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선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교인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창조 때 확립된 가족 관계는 왕국의 마지막 도래를 기다리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과 세우신 관계보다는 부차적이다. 혼인은 (그리고 가정은) 가장 중요한 관계적 실재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적 실재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과 맺으시는 관계 안에서 나타난다. 이 교회 가족(ecclesial family)은 독신과 기혼자를 다 포함한다. 또한 그것은 그들은 심오하게 또한 종말론적으로 지속되게끔 묶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도래할 때 혼인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가족만이 남기 때문이다.

혼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창조적 목적은 이것들만이 아니다. 혼인은 사회의 토대이기도 하다. “혼인 안에는 가족이 암시되어 있다; 가족 안에는 사회가 암시되어 있다; 사회 안에는 인류의 일치, 공동체, 협력이 암시되어 있다.”⁶ 혼인과 가족 안에서 우리는 장차 사회 안에서 발전하게 될 모든 종류의 관계들을 발견한다. 그렇다면 혼인은 사회의 나머지와 분리된 것으로 보아선 안 된다. 오히려 혼인의 구조가 사회의 구조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³ Acts of Synod 1980, p. 469.

⁴ Acts of Synod 1980, p. 469.

⁵ Acts of Synod 1980, p. 471.

⁶ Herman Bavinck, “Christian Principles and Social Relationships,” in *Essays on Religion, Science, and Society*, ed. John Bolt, trans. Harry Boonstra and Gerrit Sheeres (Grand Rapids, Mich.: Baker Academic, 2008), p. 122.

1980년 혼인 성명서는 혼인을 성의 환경이라고 명시적으로 많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중요한 성경적 개념이다. 물론 성의 정당한 환경인 성은, 남편과 아내가 혼인 가운데 “한 몸”이 되었고 혼인이 가족과 자녀의 환경이라고 긍정한 1980년 성명서에 내포되어 있다. 루이스 스미디스(Lewis Smedes)는 *크리스천을 위한 성(Sex for Christians)*에서 그 핵심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바울이 성에 관하여 쓴 글을 논한다:

[바울은] “부도덕”이란 말로써 혼인 외 성교를 의미했다. 만약 미혼인 성교가 잘못이라면, 그것은 심하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음란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살전 4:5). 음란은 죄다. 미혼자들이 하는 성교는 음란이다. 그러므로 미혼자들의 성교는 죄다.⁷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의 환경이다. 이 주장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히 13:4). 또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1 Cor. 7:3-4). 이것들은 수많은 예들 중에서 두 가지만 인용한 것이다. 혼인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온전한 성적 표현의 합당한 환경이다.

마지막으로, 혼인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기독교적 혼인은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다. 기독교적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관계—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도록 백성을 빚어가시고, 용서와 화해를 체험하며, 연합 가운데 함께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닮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모범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혼인이 어떤 개인에게도 필수적인—또는 당연한—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야만 한다. 종종 우리는 교회로서 여전히, 말과 실천을 통해, 혼인이 삶의 완성에 필요한 것처럼 격상시키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 우리는 지혜롭게, 말과 행동으로, 혼인의 목적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가는 기본적인 자리다. 교회는 정당하게 혼인의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축하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혼인이 크리스천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구든 결혼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만하고 부요한 삶을 살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다. 혼인이 성숙해지고, 지도자의 자리를 유지하고, 명시·암시적 메시지를 통해 전해진 대로 온전한 삶과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누리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지나치게 격상시키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제거해야 할 생각이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한 것처럼 말과 행위로 어떤 사람들에게겐 독신이 적법하고 중요한 소명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는 독신인 이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권면하고 그들과 연합하는 장소인 교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품어야 한다. 독신은 고독한 사명이 아니다. 독신이 제자도의 적법한 형태이므로, 교회는 건강하고 살리는 연합으로 가득한 독신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게 주신 고상한 소명이자, 현재 동성혼인 논의에서 명시적인 의미를 가진 소명이다.

⁷ Lewis B. Smedes, *Sex for Christian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94), p. 108.

전통적인 성경적 성윤리에 부합되게 살아가라는 교회의 소명을 당연히 한다면, 우리 교회들은 독신주의가 실행 가능한 선택이 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⁸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연합과 관계로 부르신 삶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여지고 CRC의 1980년 혼인 성명서에서 채택된 성경적 혼인 교리는 다음 문장들로 요약할 수 있다:

1.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근본적인 창조적 구조이다.
2.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되며 또한 그렇게 함께 살겠다는 서로 서약함으로써 맺어진 언약 관계이다.
3.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혼인은 성적 표현을 충분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상황이다.
4.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유익과 부요를 위해 존재한다. 혼인은 인간의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창조된 관계다.
5. 또한 혼인은 그 형태와 가족과 조직의 함축성 때문에 사회를 조직화하는 수단으로 근본적인 역할도 맡고 있다.
6. 신약성경은 혼인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바로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7. 혼인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찰할 때 충분히 이해된다—즉 사랑, 불변, 존중, 성실, 용서, 화해 등과 같은 성품을 갖는다.
8. 일차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에게 세우신 관계 안에서 혼인의 관계적 목적과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이해하고 느꼈다. 하지만 혼인은 크리스천 개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9. 독신과 혼인은 둘 다 크리스천 개인이 소명으로 받을 수 있는 제자도의 합당한 형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독신이든 기혼자이든—만인을 위한 친교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시는 고차원의 소명이다. 그 친교 공동체 안에서 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성장하라는 법을 발견한다.
10. 혼인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영구한 관계이긴 하지만, 종말론적 실재는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선 혼인관계가 없어질 것이다. 대신 하나님의 가족만이 있을 것이다.

CRC의 1980년 혼인 성명서는 혼인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⁸ 웨슬리 힐(Wesley Hill)은 독신인 사람을 아름답게 포용하는 공동체의 유형에 대한 실천적인 바람과 필요를 다음 과 같이 서술한다: “독신으로서 나는 내 친구들의 친밀감과 충성심을 예리하게 필요로 한다. 나는 그들이 나를 위해 면책조항이 없이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넌 우리 친구니까’라고 말해주길 고대한다. 내가 그런 우정을 필요로 하는 이유의 일부는 내 미래에 결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게이이며, 또한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기독교적 견해에 헌신되어 있다. 내가 평생 금욕주의를 묵상할 때, 나는 내 곁에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갈 헌신된 친구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체 기사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라: <http://www.christianitytoday.com/ct/2014/september/why-cant-men-be-friends-wesley-hill-friendship.html?share=/Pceul5CuHwyT8rdo8t3t0Yfl1CVb8aU&paging=off>.

이 성명서는 이혼율이 교회 안팎에서 치솟는 시대에 혼인 서약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라는 승인을 했다 이혼 가운데서 교회는 혼인의 영구성을 지지하고, 배우자들을 고백, 용서, 화해 및 순종으로 부르는 소명을 받았다. 이 보고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혼 진행중인 커플들이 오면 경청하도록 훈련했다 그래서 교회가

각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태도와 행위, 어떻게 이것이 혼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도와 행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이해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회는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면서 또 약속을 제시하면서 말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죄악된 행동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⁹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은 혼인의 영구성에 대한 개념이 변하고 있는 문화와 연관을 맺는 중대한 부분으로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과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1980년 혼인 선언문은 교회가 치리의 목적을 숙고하라고 강권한다. 이 보고서가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이었던, 이혼 상황에서 공식적 치리는 커플들이 회개와 화해에 이르도록 강권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유익한 방식이었을 수 있다.¹⁰ 이혼으로 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형식적 치리를 취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도, 만약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이 성경적 가르침 경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성경적 치리는 사용되어야만 했다.¹¹ 치리를 사용하라는 이 요청은 보고서 전체에서 반복되는데, 명시적으로 혼인 지침을 다룬 1980년 연구 위원회 보고서의 “교회 사역 지침(Guidelines for the Ministry of the Church)” 항에 밝혀져 있다. 이것은 1980년 총회에서 채택된 것이다.

우리의 현재 사회적 상황은 다시 혼인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혼인의 영구성에 관하여 사회적 규범을 바꾸기보다, 우리 사회는 이제 누가 혼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 이해를 바꾸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즉 혼인의 상태를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서 혼인의 법적인 상태를 동성혼인도 인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참고 다수자 보고서의 II 항). 이 변화되는 법적인 혼인 정의에 비추어,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혼인에 대한 상이한 이해에 반응할까? 혼인 지침에 관한 1980년 연구 위원회 보고서는, 다른 질문에 초점을 맞춘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을까?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변하는 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우리가 다시 고민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엔 성경적 상담으로 반응하기—지속적인 마음의 완고함에 대한 반응으로 치리를 사용하기—이 유형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범례다.

무엇이 결혼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법적 이해가 변화하는 와중에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민법상 혼인과 기독교적 혼인은 매우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한다. 이것은 교회와 국가가 혼인을 다르게 정의하는 데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다수자 보고서에서 주목한 것처럼 (V, B 항 및 그 앞)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상황에서 혼인을 다르게 정의한 것은 새로운 게 아니다.

교회와 국가의 혼인 정의에서 유형과 내용이 다른 것을 관찰하는 와중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독신 관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한다.

⁹ Acts of Synod 1980, p. 482.

¹⁰ Acts of Synod 1980, p. 482.

¹¹ Acts of Synod 1980, pp. 482-83, 485.

죄의 훼손이 없다면, 참된 형태의 혼인은 교회와 국가에 의해서 보여질 것이다. 사회가 죄를 정의하는 것을 흐릿하게 만드는 것을 인식하듯이 우리는 세가지 추가 진리를 인정하는데 지혜롭게 인식해야 한다:

1.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죄의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권능을 본다. 크리스천들은 죄의 훼손하는 능력에 면역이 되지 않았다. 혼인과 성별을 이해할 때 우리도 오해와 악행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성경을 우리 인생의 법칙이자 지침으로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
2. 우리가 교회의 혼인관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타인을 악마화하거나 타인에 대한 포괄적인 전제를 하거나 자신과 다른 견해의 지지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한 행동은 복음의 직설법이 아니다.
3. 교회와 국가의 혼인 정의가 다르다고 국가에 참여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국가의 역할과 권력을 불법화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선택이 아니다.

현재 교회가 직면하는 동성혼인 문제에 법적 요소가 추가된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우리는 1980 년의 혼인 보고서가 우리에게 제시한 범례에 덧붙여 말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진정한 경청에 덧붙여 성경적인 상담으로 반응함으로써—치리를 지속적인 마음의 완악함에 대한 반응으로 사용하고—앞에서 살펴본 성경적 혼인관과 다르게 혼인을 정의하는 국가에 관여하고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만 한다. 다수자 보고서의 V, A 항에서 보았듯이, 국가의 혼인 정의는 교회가 그 혼인관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이런 상이한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교회가 어떻게 국가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신념적 다원주의 (다수자 보고서 III, B 항 참조)는 후자의 문제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경적 혼인관과 다르게 혼인을 정의하는 국가에 어떻게 참여하고 반응할 것인가? 이 틀은 누가 무엇에 대해서, 특히 타락 이후에,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한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부서진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연대를 가진다 혼인, 윤리 등과 같은 것의 의미와 실천에 관하여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져왔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교회와 국가가 각자의 영역에서 상대적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이해한다—즉 하나님께선 온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교회, 국가, 사회 등과 같은 상이한 영역에 제한된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다. 전 피조질서에 확대되는 하나님의 권위와 달리 상대적 권위들은 상이한 영역에 주어졌다. 그들만의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그 뿐이다. 국가는 공적 정의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속고와 열띤 논쟁의 토론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원주의적 견해들이 기존의 사회정치적 지혜를 유지하고 도전하고 개혁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도 이 신념적 다원주의 정치에 참여한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종종 부분적으로만 파악할 뿐 때로는 완전히 대립할 것을 알고 또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윤리를 규정할 수 있는 의로운 사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의 일에 계속 헌신할 것이다. 신념적 다원주의의 틀 안에서 크리스천들은 여전히 공공 영역에 깊이 참여할 것이다. 이 공공 영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으로 근거한 확신을 정치적 영역에 가져오게 된다.

동성혼인의 사례에서, 국가와 교회는 혼인에 관하여 상대적 권위를 갖는다.

하지만 이 상대적 권위에서 우리는 혼인을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인정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창조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실재적이고 신적인 구조물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죄의 더럽힘이 없었다면, 교회와 국가는 진정한 모습의 혼인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죄의 실재가 이러한 구조들을 관찰만으로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인류가 혼인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다중적 정의를 갖게 되는 것도 그리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 국가는 그 상대적 권위 내에서 혼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정의하려고 노력할 책임이 있다. 이것이 국가를 성경적 혼인관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가가 교회의 상대적 권위와 다른 합법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상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캐나다와 미국에서 일어난 동성혼인의 변화된 위치를 둘러싼 법적·시민적 질문들 가운데서,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기독교인의 국가 참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최고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들의 정당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둘째, 크리스천들은 국가와 교회의 상대적 권위를 긍정해야 한다. 셋째, 크리스천들은 사회 안에 만연한 죄의 본성에 대해 의식해야 한다. 죄는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온전히 알려지는 종말론적인 새 하늘과 새 땅 비전을 긍정함으로써, 크리스천들은 사회 안에 죄로 오염된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내는 중요한 목소리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긍정하면서 이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동참하려고 애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남겨둔다. 이것은 신념적 다원주의가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다. 다수자 보고서에서 주목했듯이, 부록 C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를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우리에게 국가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한 지시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국가와 교회 사이의 연관성과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크리스천에게 현재 그가 살아가는 세상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를 준다. 또한 그것에 비추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알려준다. 이 차별성이 묘사되면, 우리는 우리가 깃들여 사는 다양한 영역들 안에서 운영되는 상이한 규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신념적 다원주의는 교회가 국가를 대변하거나 국가가 교회를 대변하게 만들려는 중압감을 누그러지게 만든다. 게다가, 국가가 중력의 법칙을 “변경”하지 못하듯이 혼인의 정의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준다—근본적인 창조된 실재의 변경을 강요하는 것은 능력도 권위도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혼인의 정의에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니다. 혼인과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가 더 이상 오류를 범하고 창조의 구조로부터 더 벗어나면, 우리는 심각한 사회적·정치적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동성혼인 문제를 교회적 환경과 민법적 환경에서 상이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와 국가 안에는 부득이 서로 다른 상대적 권위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바로 이 틀을 따라서 우리는 각 영역 안에서 적당한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신념적 다원주의는 크리스천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주지 않지만, 우리가 교회와 국가의 혼인 정의가 상이한 상황에 대해 반성하는 길을 정해 준다. 상이한 정의가 반드시 위협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단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

II. 본 보고서와 불일치하는 영역

교단의 혼인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과 우리의 신념적 다원주의란 틀에 비추어, 우리는 다수자 보고서와 불일치하는 세 영역을 주목했다: (1) 동성결혼식 주례하기 (2) 결혼식과 교회 생활에서 역할 감당하기 (3) 교인 회원권 문제. 아래 단락들은 다수자 보고서의 관련 단락을 표시해 줄 것이다.

A. 동성 결혼식 주례하기

1. 목사의 법적 측면들 (cf. 다수자 보고서 VI, A, 2, a 항)

본 보고서는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목회자에게 법률적 측면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미국에는 매우 강력한 헌법적·법률적 보호조치들이 있다. 동성혼인 합법화 10년의 경험이 있는 캐나다에선 종교자유의 보호를 중시한다.¹² 본 보고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목회자에게 잠재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을 강조했다. 이 상황들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본 보고서가 웹사이트나 정관에 무엇을 주장해야 하느냐에 대해 교회들에게 충언하기엔 부적당하게 강하다고 본다. 혼인에 대한 CRC의 확신과 우리 사회의 통념 사이에 부조화가 점증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들이 정관과 행정문서와 웹사이트에서 주장하는 바를 명쾌하고 솔직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긴다. 종교자유의 보호권을 누리려면, 목회자와 교회가 CRC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을 법적·정치적으로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목사와 교회가 이 법의 보호를 받는데 기여할 가장 중대한 요소는 종교적 원칙을 적용할 때 명증성과 일관성이다. 이런 연유로 교회들은 명시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고 CRC의 신념과 주장들을, 이 경우엔 특히 CRC의 혼인 이해에 관해, 인용하고, 또 결혼식의 주례와 주관에 해당하는 관련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교회와 목사들은 자기 교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보호하는데 유념하여 외부세계와 정부가 시설과 의식을 종교와 신앙의 자유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재범주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교단에서 유용한 지침을 제시했다. 당신의 교회 웹사이트를 CRC의 신념, 정관, 및 다른 공식서류 양식 등과 같은 추가자료로 업데이트하기 원하면 CRCNA 실행 디렉터가 배포한 문서들을 보라..

¹² 종교적 자유에 대해, 특히 미국의 상황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면 다음을 참조하라. *Free to Serve: Protecting the Religious Freedom of Faith-Based Organizations* (by Steve Monsma and Stanley Carlson-Thies). 캐나다의 법적·정치적 선례에 대한 대단히 유용한 요약은 보려면 다음을 참조하라. Janet Epp Buckingham, *Fighting over God: A Legal and Political History of Religious Freedom in Canada*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2014).

이 문서들은 www.crcna.org/SynodResources 에서 under the headings “교회 시설 모범(Model Church Facilities)”과 “정관 첨부 자료(Attachment to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m).”란 제하에 찾을 수 있다.

2. 종교적 혼인의 징표들 (cf. 다수자 보고서, VI, A, 2, b 단락)

앞에서 주목했듯이, 교회와 국가가 혼인을 정의하는 방식은 그 종류와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북미주의 종교적 혼인은 동시에 민법상 혼인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 번의 예식으로 민법상 혼인과 종교적 혼인을 주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주례해야 하는 혼인의 유형에 관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 무엇이 결혼식을 종교적으로 만드느냐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고서에서 주목했듯이,

전형적으로, 종교적 결혼식은 크리스천 신자들 사이의 혼인 관계를 시작하게 만든다. 무엇이 결혼식을 종교적으로 만드는가? 분명히 그 환경이 한 몫을 한다. 기독교 신앙의 상징과 표현으로 에워싸인 교회 성전에서 하는 결혼식은 그 혼인을 위해 하나님의 복과 크리스천 공동체의 축복을 추구하는 의도를 암시한다. 더 구체적으로, 한 결혼식을 종교적 혼인으로 구분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 주/지방이 가 본인에게 부여한 권위에 의해서”란 어구를 사용한 혼인 선포 (서약 교환 뒤에 옴)
-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전적 요소와 하나님의 복이 부부에게 임하도록 드리는 기도
- “하나님의 존전에서” 부부서약이 발표되고 혼인이 장엄하게 주례되고 있다는 시인

이것이 명백한 징표들이 바로 종교적 혼인의 중요한 지시어들이다. 하지만 하나님, 특정한 기독교 교리, 또는 위에선 언급한 공식어구를 사용하는 혼인 선언문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에도 여전히 교회의 대리자가 인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가 혼인에서 중요한 기독교 요소를 배제하겠지만, 말씀 사역자가 주례하는 혼인식은 여전히 그 혼인을 종교적 혼인으로 특징지을 것이다. 순수 민법상 혼인에 있어선, 말씀 사역자가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에 대한 민법적인 대안이 있다; 치안판사나 공무원이 주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의 지침에서 사역자가 민법상 동성결혼예식을 주례할 수 있는 희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지만, 우리는 그 제안이 CRC의 신학과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이해한다.

북미주의 말씀 사역자는 교회의 대리자이면서 국가의 대리자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주목했지만, 북미주에서 일어나는 혼인 에서 순전히 “종교적”이거나 순전히 “민사상” 혼인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비록 사역자는 교회와 국가의 대리인으로 기능하지만, 사역자들이 “편의상 국가의 대리자로 기능하도록 허가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중요하다. 그들이 국가의 대리자라는 점이 좀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¹³ 국가는 사역자들이 말씀 사역의 직위에 안수를 받은 교회적 위치에 기초하여 결혼식을 주례하는 권위를 그들에게 부여한다.

¹³ Henry DeMoore,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 (Grand Rapids, Mich.: Faith Alive Christian Resources, 2010), p. 372.

그러므로 사역자 직분에는 시민적 권위가 수반된다. 하지만 그의 시민적 권위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 사역자의 직책에서 나오는 것이다. 교회의 대리자로서 사역자의 역할이 항상 일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가 인도하는 예식이라면 분명한 종교적 결혼식의 징표들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순전히 민법적인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목사가 결혼예식을 주례하는 경우는 모두 그의 교회적 직분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다수자 보고서는 위에서 나열한 종교적 징표들이 결혼예식을 종교적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그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혼인을 주례하는 목사의 역할이 종교적 혼인의 핵심 요소라고 주목한다.

3. 민법상 동성혼인을 주례하기 (다수자 보고서 VI, A, 2, d 항 참조)

다수자 보고서는 이렇게 진술한다.

결혼식을 주례해달라는 부탁들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민법상 혼인 예식과 종교적 혼인예식을 부탁하는 것이다. 그런 부탁이 동성 커플에게 관한 것일 때 위에 언급한 목양지침이 적용된다.

위에서 주목한 종교적 혼인과 민법상 혼인에 대한 논의를 인정한다면, 교회의 대리자가 (즉, 말씀의 사역자나 교회공동체 소속에 기초하여 혼인을 주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혼인은 부득이 단순한 민법상 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식의 명시적인 징표가 그렇게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래서 목사들은 민법상 동성결혼예식을 주례할 수 없다. 설령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예식은 어떤 식으로든 종교적 예식의 징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목사가 교회 직책에 기초하여 주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사가 민법상 동성결혼식을 주례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경우, 성경적 혼인교리와 교회의 대리자인 목사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경우에 목사가 민법상 동성결혼식을 주례할 재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제안하는 지침은 CRC의 신학과 정책과 충돌한다. 첫째, 목사가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권위는 교회 직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순수한 민사상의 예식을 인도할 수 없다. 둘째,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은 혼인에 대한 CRC의 가르침과 상충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혼인 예식은 다수자 보고서 VI, A, 2, b 항에서 나열한 분명한 종교예식의 징표들을 배제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그 예식을 주례한다면 전적으로 민법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명시적인 종교적 징표가 배제된 동성결혼식을 주례하는 목사도 다시 CRC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동성혼인을 주례하는데 주어진 동일한 목양 지침도 이 상황에 해당될 수 밖에 없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결혼식을 주례하는 경우에 교회헌법을 위반하고 행동했다면, 그 문제는 우선 교회 콘시스토리에서 다뤄야 하며, 다음으로 교회의 인정받는 정치 대표들이 그 상황을 다뤄야 한다.

그러나 민법상 동성혼인을 주례하는 것이 CRC의 혼인 이해, (혼인 주례에 관한) 교회헌법 69 조, 및 1973년 총회보고서와 2002년 총회보고서에 진술된 CRC의 동성애에 관한 가르침과 맞지 않아도, 민법상 동성혼인으로 이미 결혼한 두 개인이 CRC의 가르침에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

다수자 보고서에서 주목했듯이, 1973년 동성애 관련 보고서의 범위 안에서 사는 삶에 헌신한 동성 커플이 있을 수 있다—즉 두 명의 동성지향적인 개인들이 독신주의에 헌신하면서도 종교적 혼인을 원치 않고 민법상으로 혼인을 하려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그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이미 혼인한 커플이 이제 교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에, 자녀가 있는 동성 커플이 많은 대화과정, 성경읽기, 및 목양지침을 통해 동성간에 성적으로 활발한 관계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커플은 민법상 혼인을 통해서 자신들과 자녀에게 제공된 법적·의료적·개인적 보호권이 자신들의 행복에 중요하다고 결정하고 법적인 혼인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커플이 자기 관계 안에서 독신주의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그들의 민법상 혼인은 동성관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부합될 수 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동성간 독신주의 관계 안에 남아 있는 것이 성별과 혼인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결정은 교회 콘시스토리와 협의하여 또한 깊은 성찰과 기도를 통해서 해야만 한다. 그 커플이 독신주의 관계 안에서 혼인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커플과 콘시스토리는 함께 상의하여 교회공동체에 무엇을 전달할지 어떻게 하는게 최선의 소통방법인지를 교회에 알려서 동성혼인에 관한 교회의 공적 증거를 혼돈에 빠뜨리지 않는 게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한 크리스천 개인이—혹은 현재 교인인 사람이—그러한 관계에 맺는다면 혼인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충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선 다시 신념적 다원주의가 유용한 틀이 된다. 국가는 민법상 혼인을 확립하고 유지하는 상대적 권위를 가진다. 이 영역 안에선 교회의 정의와 다른 혼인의 정의가 유지되고 보호받는다. 혼인과 동성간 성행위에 관한 교회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국가의 상대적 권위가 제공하는 법적 보호권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된 것은 아니다. 이 틀은 민법상 동성예식에서 결혼한 사람의 경우와 교회의 대리자가 동성혼인을 주례한 경우 사이의 차이점을 협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보고서에서 (VI, A, 2, d 항의 마지막에) 설명한 내용을 긍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례는 민법상 동성혼인이 동성적 지향과 행위에 대한 CRC의 이해와 내재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며 교회의 혼인에 대한 이해와도 충돌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앞서 주목했듯이, 우리는 이것을 목사가 동성혼인을 주례해도 좋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동성 결혼식에서 역할 맡기 (다수자 보고서 VI, A, 4 항)

크리스천 개인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동성결혼식에 연루될 수 있다. 어떤 보고도 그것을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동성결혼식에 지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하느라 애쓰는 꽃장수, 제빵사, 및 사진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소수자 보고서의 저자인 우리는 단수자 보고서에서 말한 다음 내용을 긍정한다:

동성 커플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의 어떤 이들의 양심을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은 동성인 커플들에게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을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결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잘 내릴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교인들에게 바르 미츠바를 위해 음식을 주문하지 말라거나 무신론자 두 사람의 결혼식에 꽃을 예약해서 보내라거나 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내재적으로 그들의 행사 자체나 그 고객의 인생의 모든 측면과 계약을 맺는 것을 함축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논의할 내용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결혼식 사업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다뤄야 한다고 본다. 본 위원회가 CRC의 다양한 클래식들을 경청하는 와중에 종종 크리스천이 동성혼인예식 자체에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우리는 예식에 참여해달라는—일어서기, 성경읽기, 음악연주 (기타) 등으로—부탁을 받은 평신도들에게서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한다. 즉 어떤 이들은 참가 거부를 하는 데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만, 다른 이들은 참석하기로 결정하고 어느 종교 예식에서 하듯이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형식의) 참여는 반드시 승인을 내포하진 않는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동성혼인이 혼인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과 모순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동성혼인에 참여하는 것은 그 교인을 성경과 배치되는 관계를 지지하는 입장에 빠지게 만드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말씀 사역자, 장로, 집사, 및 위임목사(즉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다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 직분을 맡은 이들은 그들이 안수받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결혼예식에서 역할을 맡는 것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락하고 참여하면 죄악된 유형의 성별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직분자들을 위한 충고가 다른 이유는 그들이 자기 직위와 독립된 행동을 하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임은 교회와 교단의 고백적·교리적 입장의 기초 위에서 권위를 가진다. 직분자들은 동성결혼식에 참석할 수는 있다. (신앙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듯이 말이다.) 하지만 역할을 맡는 것은 삼가야 한다. 임직자가 동성간 결혼예식에 참석한다면 동성관계를 승인한다는 더 큰 위험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직책의 권위가 성경에서 배제한 관계를 승인한다는 연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B. 소속

1. 교인 자격 (다수자보고서 VI, B, 2 단락 참조)

본 위원회의 다수자 보고서는 교인자격의 중요한 측면, 즉 동성 커플에 관련된 측면을 제기한다. 그 커플들은 공식 회원권이 없더라도 이미 교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전체적이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통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권 문제를 둘러싼 관계 역학은 숙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강조해야 한다고 여기는 회원권의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것은 특별히 회원권과 치리의 연관성과 교회 생활에 참여하는 문제다.

부득이하게 오늘날 교회의 교인자격은 복잡해졌다. 부분적인 원인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게 교회 치리와 실천적 제자도가 주요한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치리가 종종 나쁜 단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제자화와 치리의 분명한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교회헌법 78 조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권면과 치리의 목적은 오류를 범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며 회종과 온전히 교제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¹⁴

제자만들기와 치리 사이에는 밀접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교회 치리를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라고 언급한다.¹⁵ 또한 벨직 고백문은 치리를 참된 교회의 세 징표 중 하나로 열거한다.¹⁶ 간단히 말해서, 치리란 모든 크리스천이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일부로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교회의 장로들은 진실로 참된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천국의 열쇠들”을 맡은 자들이다. 혼인 자체는 치리와 제자도의 구조요 일부 사람들만 혼인의 소명을 받는다는 점을 망각하면 안 된다.

치리를 제자도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은 콘시스토리가 동성 커플을 위한 교인자격을 살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태도이다. 치리의 목적은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다. 하지만 그 방향은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단순히 회원권을 막거나 종종 이미 소외당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선 교인 자격의 모든 형태는 (리더십을 포함하여) 분명히 동성에게 이끌리는 독신주의 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독신주의 동성 커플들의 교인자격 문제는 교회헌법에서 제시된 치리의 경로를 밟아야 한다. 앞에서 언급된 교회에게 주는 이혼에 관한 충고가 여기서도 유용할 것이다:

교회는 경청만 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면서 또 약속을 제시하면서 말해야 한다. 노골적으로 죄악된 행동이 있는 곳에서 교회는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¹⁷

앞에서 주목했듯이, 동성혼인은, 독신주의 혼인이 아니라면, 교리와 삶의 건전성 기준과 모순된다. 삶과 교리에서 오류를 범하는 교인을 위한 제자도는, 교회헌법에서 명시한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귀결된다. 즉 그 교인이 회개하고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도록 강권하는 치리가 뒤따른다(교회헌법 78 조 참조). 교회헌법은 교회들이 정확한 “치리 단계들”을 밟도록 요구했지만¹⁸ 더 이상 치리를 규정하기 위해 밟을 만한 구체적인 단계들이 없다. 이제는 교회 치리를 운영하는 정확한 방식에 대해서 콘시스토리에 더 큰 자유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콘시스토리는 더 이상 치리의 징표와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성찬상과 출석요건을 광범위한 참여자들에게 공개했기 때문에 치리가 더욱 복잡해졌다. 또한 많은 교회들은 “정기적 출석자”란 범주나 다른 명칭들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 헌신하지만 정식 교인이 되지 않는 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정식 교인에겐 치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¹⁴ DeMoore,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 p. 400.

¹⁵ Heidelberg Catechism, Q&A 83, 85.

¹⁶ *Belgic Confession*, Article 29: The Marks of the True Church.

¹⁷ *Acts of Synod 1980*, p. 482.

¹⁸ 참조 DeMoore, *Christian Reformed Church Order Commentary*, pp. 411-12. 이 단계들은 (1) 성례전에 참여하지 말라는 개인적 조언, (2) 실명을 언급하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광고하고 기도하기, (3) 실명을 언급하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기, 그리고 (4) 거명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특정한 때에 그의 성찬정지가 실효될 것이라고 예배 중에 공개적으로 광고하기.

이와 더불어, 많은 교회들은 교인과 비교인을 교회 내 비안수직(장로나 집사가 아닌) 리더십 역할에 받아들인다. 그래서 교인이 아닌 이들도 이미 교회 안에서 많은 역할을 맡아 섬기고 있다. 그들은 주일학교 교사, 예배인도, 여름성경학교봉사자, 혹은 안내위원일 수도 있다.

한 교인이 동성혼인을 하게 되면, 그는 교회의 정규 권면과 치리를 받게 된다. As stated by 교회헌법 81-a 조항에 써어 있듯이,

삶과 교리에 죄를 범한 교인들은 콘시스토리로부터 신실하게 치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계속 죄를 범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회원권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콘시스토리는 처음에 그러한 교인을 간단히 “치리 받도록” 처리하길 원할 수 있다. 만약 그 교인이 치리를 받는 중이라면, 이것은 또한 그 교인이 권면과 치리를 따를 때까지는 건실한 상태의 교인이 아니며 그 동안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포함할 수 있다(다수자 보고서 VI, B, 2, d 도 참조하라. 동성혼인 관계에 들어간 이들을 위한 교회의 성찬 실시는 성경이 죄라고 밝힌 다른 종류의 관계들에 대한 실천과 달라선 안 된다). 어쩌면 이 제자도는 회개를 낳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시점에서 교회 치리는 교회의 가르침에 명백하게 반대하는 교인을 계속 참아주던 교회의 구실을 제거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이 목적은 아니다. 치리의 행사할 때 우리는 항상 그 목적, 즉 회개와 친교 회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콘시스토리는 “예방적 치리” 즉 성별과 혼인에 대한 전교회적 가르침과 공식적 치리 범위 밖에서 사랑으로 따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치리 수단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기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가 수행한 여론조사와 경청모임에서, 참여에 관한 더 넓은 질문들이 제기되었다. 가장 빈번하게 나온 질문들은 일상적인 교회생활 참여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논의된 것처럼, 동성혼인을 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광범위하게 참여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들을 다 언급할 수 있는 보고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넓게 말해서, 교회생활 참여와 리더십 참여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나 교회생활의 다른 측면에 참여하기 원하는 여느 사람처럼, 동성혼인을 한 사람들도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권장해야 한다. 참여의 수준은 교회 공동체 삶을 누리길 원하는 다른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과 다를 바 없어야 한다. 만인이 예배 참석과 교회 생활의 다른 측면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부족하다. 삶과 교리의 건전성은 참여의 선결조건이 아니다. 하지만 교회생활에 참여하길 원하는 사람을 포용하는 것이 만인을 지도자의 역할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장로, 집사와 같은 리더십 역할과 다른 사역 리더십은 건전한 상태의 교인들에게 제한되어야 한다.

2. 교인 자격 신청 (다수자 보고서 VI, B, 2, b 항 참조)

교회에서 초기 회원자격은 항상 세례의 성례전과 새로운 회원이 이 성례전을 신청하기 전에 하는 서약으로 시작된다. 유아세례의 경우, 서약은 나중에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 온다. 신앙 고백에서, 유아 대신에 그 부모나 후견인이 세례서약을 하면 비유아 교인이 그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서약에서 그 교인은 “세상을 버리며 자신의 옛 본성을 죽이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약속한다. 게다가, 그렇게 공적으로 고백하는 교인은 “교회의 치리(government)에 복종할 것”과 만약 그가 “교리나 생활에 있어서 과실을 범하게 되면, 교회의 권면과 치리에 복종할 것을” 약속한다.

동성혼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세례 서약을 위반하게 된다. 동성혼인이 성경적인 혼인관을 훼손하기 때문에, 교리의 과실 문제가 발생한다. 동성혼인이 성행위에 연관된 관계를 출발시킨다면, 생활의 과실 문제도 떠오른다,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간 성행위를 불허하기 때문이다. 동성애에 관한 CRC 보고서들은 이 성경적 가르침을 지지했고 또 재확인해 왔다 (다수자 보고서 I, D 항을 참조하라).

만약 건실한 교인이 동성혼인을 하게 되면, 그는 교회의 정기적 권면과 치리를 받게 된다. 만약 동성혼인을 한 사람이 교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는 세상을 포기하고 옛 본성을 죽이고 경건한 삶을 시작하는 것의 일부로서 그 성적 관계를 포기해야 한다. 이 헌신은 세례서약의 한 부분이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동성 커플의 경우, 자녀를 지키고 양육하는 데 연관된 사회적 책임을 깨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교인이 되기 위해 동성관계를 버리는 것이 교인으로서 대개 독신주의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목사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교회에서 세례나 회원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적 사랑과 긍휼로 일어서기 때문이다. 동성혼인을 하는 교인들의 경우에, 교회는 그 교인들을 대할 때 긍휼과 신중을 다 필요로 한다. 다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치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II. 건의

총회가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제시 위원회의 소수자 보고서를 숙고할 때 제시카 드리센가 양(Ms. Jessica Driesenga)과 존 로트만 박사(Dr. Rev. John Rottman)에게 발언권을 주도록 건의한다.

동성혼인에 관한 목양지침 제시 위원회

제시카 드리센가

존 로트만